7

독일통일 총서

과거청산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7 독일통일 총서

과거청산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총서 7

과거청산분야 관련 정책문서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처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7

디자인·제작 레드클립(전화 02-324-7881)

CONTENTS

I 동독 사회주의 독재청산의 현황과 과제

들어가며 10

제1장 동독 사회주의 독재의 사법적 청산 14

제1절 사법청산의 기준 14

제2절 사법청산의 전개–국경 탈주자 살상 사건을 중심으로 19

1. 정권 범죄 특별수사부의 설립 19
2. 국경수비대 재판 20
3. 국방위원회 위원 재판 23
4. 정치국 위원 재판 26

제3절 잘츠기터 중앙기록보관소의 증거 기록 30

제4절 사법청산의 의미와 한계 33

제2장 국가안전부 문서 공개와 과거청산 36

제1절 문서 확보와 공개 36

제2절 문서를 토대로 한 새로운 과거청산 시도 43

1. 개인적 차원의 청산 43
2. 사회적 차원의 청산 46
3. 문서 공개에 대한 반대와 저항 49

제3절 동독만의 문제에서 전 독일적 문제로 61
제4절 브란덴부르크주의 뒤늦은 슈타지 청산 64

제3장 독일 연방 의회 조사위원회의 과거청산 활동 72

제4장 피해자들의 복권과 보상 79

제5장 사회문화적 청산 88
제1절 학술적 청산 88
제2절 공공 기관 및 민간단체의 교육 · 계몽 활동 90
제3절 박물관과 추모지를 통한 기억화 94
제4절 시대적 증인과의 대화를 통한 생생 역사 교육 97
제5절 청소년 대상 교육의 강화 98

제6장 맺음말 101

Ⅱ 정책문서를 중심으로 본 통일과 과거청산

들어가며 114

제1장 과거청산과 비밀경찰 슈타지 115
제1절 동독 국가안전부 슈타지(Stasi) 문서 115
제2절 슈타지 문서법과 슈타지 문서관리국 118
제3절 슈타지 문서의 활용 121

제2장 과거청산의 이중성 문제 123
제1절 브란덴부르크 전 총리 만프레드 슈톨페를 둘러싼 논쟁 124
제2절 악셀 힐퍼트 케이스 127

CONTENTS

제3장 화해 중심의 과거청산-브란덴부르크주의 사례 130
제1절 “브란덴부르크의 특별한 노선”(Sonderweg von Branndenburg) 130
제2절 지속되는 “과거” 논쟁과 앙케이트 위원회 132
제3절 주정부의 대응 135
제4절 브란덴부르크주가 독일의 지속적인 과거청산에 미친 영향 136

제4장 기타 기관들 138
제1절 연방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독재청산재단) 138
제2절 잘츠기터 “국경 폭력행위 기록 및 해명을 위한 주(州)법무관리 중앙등록처” 139

*부록-2013년 연방정부 과거청산 보고서 140

III

과거청산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154

문서 요약 174
문서요약(문서번호 1~116) 174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독일통일 총서 7

과거청산분야 관련 정책문서

동독 사회주의 독재청산의 현황과 과제

최 승 완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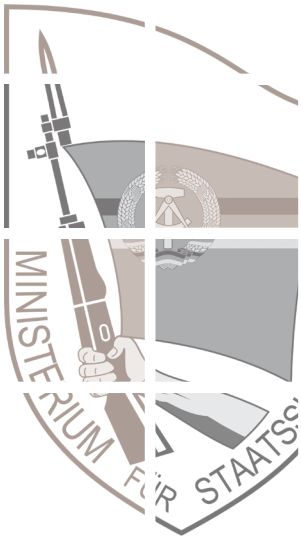

들어가며

1990년 독일은 40년 간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했다. 그러나 통일의 기쁨과 감격도 잠시 독일은 정치적 대변혁이 야기한 많은 과제들에 직면했다. 우선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이 된 만큼 동독지역의 정치, 경제, 행정체제를 신속히 서독식으로 전환해 신연방주로 정착시키고, 40년 간 상이한 사회체제 속에서 살아온 동서독지역 주민의 사회 심리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여 내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 문제 외에도 독일은 40년 간 동독에서 시행된 사회주의통일당(SED, 이후 사통당으로 약칭)의 독재청산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었다. 통일 후 학계와 언론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사통당은 모든 권력을 장악해 억압적 정치제제를 구축했고, 사회 전반에 대한 감시로부터 체제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 베를린 장벽과 동서독 국경을 넘어 서독으로 탈출을 시도한 동독인의 살상 등 수많은 정권 범죄를 자행했다. 사통당 정권도 붕괴하고 통일과 함께 구 동독지역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했지만 40년 간 축적된 이러한 독재의 유산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통일 후 독일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나치 과거청산과 더불어 사회주의 독재의 과거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그것이 남긴 어두운 유산을 청산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거청산 작업은 크게 다섯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독일에서는 사통당 정권이 자행한 범죄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주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청산이 시행되었다. 둘째, 동독 비밀정보 기

관 국가안전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1]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안전부는 국가안보를 담당한 기관으로, 동독의 전 사회 영역을 감시하고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동독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탄압함으로써 독재 체제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사통당 독재의 과거를 청산하는 데 있어 국가안전부는 집중적으로 조명해야 할 대상이다. 이를 위해 독일은 통일 직후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부가 남긴 방대한 문서를 공개해 국가안전부가 자행한 불법 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사통당 정권 범죄의 형사 소추, 피해자들의 복권과 보상, 공직자의 인력 검증 등 체제 불법 청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2]

셋째, 독일 의회 역시 과거청산에 적극 참여했다. 독일 연방 의회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의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동독 사회주의 독재의 원인, 역사 및 결과를 조사했다. 이처럼 의회가 과거청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나선 것은 독일 역사상 처음이었고, 의원 외의 독일인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연방 의회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과거청산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었다.

넷째, 비민주적인 사통당 정권 하에서 40여 년에 걸쳐 시행된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차별로 인해 많은 동독인이 고통을 겪었다. 많은 이들이 부당한 구금, 납치, 고문, 살인의 희생자가 되었고, 대학진학이 좌절되었으며, 직장에서 해고 혹은 좌천되었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달리 강제로 서독으로 추방되기도 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과 복권 역시 과거청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통일 후 독일 정부는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보상하고, 정치적 재판에 의해 억울하게 범죄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사법적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법적, 제

1 국가안전부는 슈타지(Stasi)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2 공문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문서는 30년 간 열람할 수 없다. 이 점에서 국가안전부 문서 공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 결정이었다.

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통일 후 독일에서는 학계, 언론, 공공·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사통당 독재에 대한 연구 및 계몽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과거청산의 궁극적 목적은 과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독일에서는 공공 기관 뿐 아니라 많은 민간단체들이 사통당 독재의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육, 문화 활동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독일인의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동독 민주화혁명 25주년인 데, 그동안 독일에서 사통당 독재의 청산 작업은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까? 전 세계를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나치 과거사 청산이 나치 파국 이후 20년 가까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과 달리 사통당 독재에 대한 과거청산은 동독인들에 의해 이미 통일 전에 시작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후 본격화되었다. 이 점에서는 모범적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통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거청산 작업은 다양한 정치, 사회 세력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끊임없이 논쟁을 거듭했고, 신연방주의 체제 전환 및 내적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과 중복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 점에 주목해 필자는 통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거청산을 둘러싼 독일 사회의 논의는 어떠했는지, 과거청산은 실천적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난 25년 간의 과거청산 작업이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독일 과거청산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우선 1장에서 동독 시절 수많은 동독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통당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 기준과 구체적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청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동독 독재 체제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한 국가안전부가 남긴 방대한 문서를 토대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과거청산 시도의 배경,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독일 연방 의회의 발의로 의회 의원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회 조사위원회가 과거청산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만들려는 목표 하에 전개한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고 그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과거청산의 또 다른 차원인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통일 후 독일에서는 어떠한 법적, 제도적 토대 위에서 전개되고 있고, 그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통일 후 지금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통당 독재에 대한 학술 연구, 정권 범죄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지 및 기념관 건립,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교육과 계몽 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독재의 과거를 성찰적으로 기억하려는 독일 사회의 노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독일의 과거청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논의가 주로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한 나치 역사에 집중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의 규명은, 20세기 독일에 수립된 또 다른 독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는 친일 세력 및 군사 독재의 청산과 같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물론 앞으로 언젠가 직면하게 될 북한 공산주의 독재의 청산을 대비하는 데도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동독 사회주의 독재의 사법적 청산

제1절 사법청산의 기준

통일 후 과거청산과 관련해 일차적으로 지목된 것은 우선 사통당 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자행한 불법 행위이다. 사통당은 동독 헌법 1조에 규정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이라는 명제 하에 동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대한 지배를 행사했다. 따라서 사통당은 통일 후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모든 불법 행위의 주도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사통당 정권 하에서 발생한 범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주요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사법적 청산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이미 통일 전에 동독인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1989년 가을 동독 시민의 민주화 혁명으로 정치적 대변혁이 시작되면서 40년 간 지속된 사통당의 억압 체제는 시험대에 올랐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가 민주화를 외쳤고, 40년 간 군림해온 비민주적 정권의 비리에 대한 조사와 개혁을 요구했다. 그 결과 1989년 11월 22일 동독 인민 의회 내에 권력 남용, 개인적 치부 및 기타 법률 위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임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

었고, 11월 30일부터 12월 5월 사이 사통당 지도부의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 절차가 개시되었다. 당시 조사의 초점은 당 간부의 부정 축재와 공금 횡령, 1989년 5월에 치러진 지방 선거 때 사통당이 자행한 선거 결과 조작[3]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맞추어졌다. 1989년 12월 6일에는 체제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중앙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2월 초부터 1990년 초까지 호네커를 비롯한 사통당 주요 간부들에 대한 체포도 이루어졌다. 통일 전까지 총 124명이 기소되어 조사를 받았고, 41개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4] 설상가상으로 그 과정에서 당 정치국 위원들을 비롯한 동독 고위 지도자들이 포츠담 북부 반틀리츠(Wandtlitz)의 초호화판 주택 지구에서 사치스럽게 살아온 것이 폭로됨에 따라 당 지도부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동독 시민들의 질타와 항의가 이어졌다.[5]

그러나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됨에 따라 형사소추 권한은 독일 연방 공화국으로 이관되었다. 진행 중인 소송을 넘겨받은 독일 연방 사법부는 대대적인 조사활동을 벌였고, 공소시효도 재조정했다. 동독인의 인권을 침해한 동독 정권의 중대 범죄는 주로 물리적 폭력을 수반한 강경 노선이 지배적이었던 1950년대에 자행되었기 때문에 모두 시효가 지났다. 이에 대응해 독일 연방 의회는 1993년 "사통당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법(Gesetz über das Ruhen der Verjährung bei SED-Unrechtstaaten)"을 제정했다. 동독 체

---

3 당시 동독 체제 비판 세력은 여러 선거구에서 개표 작업을 감시한 결과 정부가 선거 결과를 조작했음을 밝혀냈다. 이 사건으로 동독 시민들은 사통당 정권의 정당성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B. Lindner, Die demokratische Revolution in der DDR 1989/90(Bonn, 2001), pp. 25-32.

4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Bundesunmittelbare Stiftung des öffentlichen Rechts, 『통일독일에서의 과거 공산주의자 청산문제』(Berlin, 2011), p. 34. 사통당 독재청산 재단은 한국어로 번역된 이 자료를 홈페이지(http://www.bundesstiftung-aufarbeitung.de)에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5 반틀리츠에는 이들 만을 위한 수영장이 있었고, 서방 세계의 값비싼 물건들로 가득 채워진 백화점과 편의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외부와는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1989년 말이 되어서야 이러한 실상이 공개되었다. Die Waldsiedlung Wandlitz. http://www.zeitzeugen-tv.com/dossier/movie/5725/_ die_waldsiedlung_wandlitz..html.

제 하에서는 사통당이 자행한 범죄에 대한 형사 소추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1949년 10월 11일부터 1990년 10월 2일까지 이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는 내용이었다.[6] 이 법을 토대로 1년 이하의 처벌에 해당하는 정권 범죄는 1995년까지,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1997년까지로 공소시효가 연장되었다.[7]

이와 함께 동독 말기에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통당 정권 범죄의 엄중한 사법 처리에 대한 독일 사회의 기대감도 컸다. 그러나 2005년을 기해 거의 일단락된 사법 처리 결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단적인 예로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호네커와 여타 정권 범죄의 핵심 인물들은 대부분 실형을 면하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또한 비무장 상태로 국경을 넘어 서독으로 탈출을 시도했던 동독인을 살상한 동독 국경수비대원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처해졌다.[8]

그렇다면 사법청산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동독 시민이 동독 말기에 이미 사통당 체제를 불법으로 결의하고 청산을 시작했지만, 통일과 함께 본격적인 작업은 통일 정부의 손으로 넘어왔다. 이후 독일 사법부는 철저하게 법치주의 원리를 토대로 사법청산을 시행했다. 통일로 인해 동독지역이 독일 연방의 일원이 되었으니 사통당정권 범죄에 대한 사법 처리도 법치국가를 핵심 원리로 하는 기본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했다. 또한 분단 40년간 상이한 체제에서 살아온 동독지역 주민을 통일독일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로 통합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도 법치주의 원리에 의한 사법청산이 불가피했다. 요컨대 사통당 독재 타파와 민주적 법치국가 건설을 목표로한 민주화 혁명의 주체가 동독 시민이었고, 통일이 어디까지나 동서독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비법치주의적 원리에 의한 사법청산은 동독 주

6 (문서번호 22).

7 (문서번호 23).

8 이러한 사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히 논의한다.

민을 과거청산의 객체로 만들고, 자칫 승자의 보복으로 비추어져 내적 통합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사법청산을 시행한 독일 사법부는 형사 소추를 위한 일련의 기준을 수립했다. 첫째, 행위 당시 유효했던 동독법에 따라 형사소추가 가능한 경우에만 사법 처리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는 이미 1990년 동서독이 통일 조약을 맺을 때 합의된 '형벌 불소급 원칙'으로, 동독 시절에 자행된 범죄 행위가 당시 효력을 지닌 동독법에 따라 자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 형을 배제한다고 규정한 형법 시행법 315조와 형법 제2조를 토대로 했다.[9] 이는 곧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은 범죄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고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을 소급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10] 따라서 통일 후 사법 처리 대상에 오른 행위가 과거 동독 법규에 의거해 합법적이었다면 독일 연방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었다.

둘째, 통일 조약에 의해 전 독일에 확대 적용되는 독일 연방 헌법이 행위시법인 동독법보다 가벼운 처벌을 보장하는 경우 경한 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연방 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셋째,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법질서에 대한 침해를 범죄 구성 여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통당 정권 범죄의 사법 처리에 있어서도 개인이 저지른 죄의 몫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들은 법적 안전성과 법치 국가의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지극히 타당한 원칙이지만 사통당 독재의 사법청산에는 제약이 되었다. 동독 형법 전서에는 반체제 세력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법규가 있었고,

9 (문서번호 20).

10 일명 '소급 입법 금지', 또는 '사후 입법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가 아예 없거나 많은 예외 규정이 존재했다. 따라서 동독 법규를 우선으로 적용하다 보니 일련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했고, 기소된 정권 범죄의 주요 책임자들도 하나 같이 재판 과정에서 형벌 불소급 원칙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개인이 저지른 죄의 몫을 측정한다는 것도 사법 처리를 어렵게 했다. 사통당 정권이 자행한 불법 행위는 대부분 한 개인의 잘못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나의 억압 구조를 이룬 동독 체제의 성격상 대부분의 불법 행위는 당 고위 지도자로부터 판검사, 경찰, 관료, 군인 모두가 일체가 되어 수행했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과 죄의 한도를 정확히 가리기 어려웠다.

이처럼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역설적으로 법치주의로 인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독일 사법부는 실정법의 구속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법 처리 기준을 세웠다. 이는 다름 아닌 자연법의 적용으로, 행위 당시의 법인 동독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그 결과가 자연법 질서에 크게 위배되면 피고인들이 동독법을 토대로 자기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는 독일의 법 철학자로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법무부장관을 지낸 구스타프 라트부르흐(Gustav Radbruch)의 '법률적 불법'이란 개념을 토대로 한 것이다. 라트부르흐는 2차 세계 대전 후 나치 범죄에 대한 사법 처벌과 관련해 나치 만행에 해당하는 범죄가 나치 형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해도 그 법적 구속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정법은 어디까지나 정의에 기여하기 위한 질서와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에 반하는 정도가 극심한 법률은 불법으로 변형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그는 "극도로 정의롭지 못한 실정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이른바 '라트부르흐 공식'을 제기하고, 자연권과 인권에 기초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주장했다.

독일 사법부는 이를 수용해 모든 문화민족에게 공통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자연법 원리도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통해 형벌 불소급 원칙만 적용할 경우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불가능한 사건의 책임자들을 최소한 재판대에 세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것이 '승자의 정의'로 비추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일 형법이 엄연히 소급 입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

제2절 사법청산의 전개–국경 탈주자 살상 사건을 중심으로

1. 정권 범죄 특별수사부의 설립

사통당 정권 범죄의 실상을 접한 독일인들은 분노를 표출하며 모든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법치주의 원칙을 표방한 독일 사법부는 형벌 불소급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즉 동독법상 처벌 사유가 있는 행위를 중심으로 사법 처리를 시행했다. 선거 조작, 납치, 살해, 고문, 신체 상해, 사통당의 정치적 권력 유지를 위해 법을 왜곡하여 판결한 동독 판·검사들의 행위, 베를린 장벽과 동서독 국경을 넘어 서독으로 탈주를 시도한 동독인에 대한 살상 행위 등이 이에 해당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법 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1년 독일 각 주검찰청 내에 정권 범죄 특별수사부가 설치되었다.[11] 베를린의 경우 주 최고 검찰청 내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특별 부서의 설립은 1990년 11월 15일에서 16일까지 아우스부르크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회의에서 사통당 정권이 자행한 불법 행위의 형사 소추를 전 독일적 과제로 인식하고 상호 협력을 도

11 이들이 사통당 고위 지도자들을 비롯해 국경탈주자 살상 사건의 행위자인 국경수비대원, 사법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동독 판·검사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업무를 전담했다. 동독 정권 범죄를 청산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 기구를 만들지 않고 통상적인 형사소추기관 내에 일개 부서로 특별수사부를 조직해 업무를 맡긴 데는 '승자의 사법'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는 의도도 작용했다. 김하중, 체제불법 청산방안에 관한 헌법적 고찰: 구 동독과 북한의 체제불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p. 102.

모하기로 한 결의를 토대로 한 것이다.[12] 베를린 특별수사부는 예외적으로 다른 주로부터 210명의 수사관과 60명의 검사를 차출해 총 430명의 수사관과 80명의 검사로 구성되었다.[13] 베를린에 가장 규모가 큰 특별수사부가 설립된 것은 동독의 중앙집권적 체제로 인해 수도였던 동베를린에서 거의 모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내려졌고, 정권 범죄의 대부분이 이곳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사례가 베를린 사법부의 관할에 속하게 되다 보니 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14] 활동 기간도 원래는 199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생각이었지만 수사가 장기화되고 업무량이 많아짐에 따라 2003년까지 연장되었다.

2. 국경수비대 재판

통일 후 시도된 사법청산 과정에서 독일 사회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국경을 넘어 탈주를 시도한 동독인에 대한 발포 및 사살을 둘러싼 재판이었다. 비무장 상태로 오로지 서독으로 넘어가기 위해 월경을 시도한 민간인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비인간적 행위는 동독 정권의 인권 경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이다. 특별경찰기구인 '정권·통일 범죄 중앙 수사본부(Zentrale Ermittelungsstelle für Regierungs- und Vereinigungskriminalität)'[15]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경지대에서 지뢰 및 총기 발포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는 584명

12 (문서번호 24).

13 고상두, 「통일독일의 과거청산과 한반도에의 함의」, 『통일연구』 제 10권(2007), p. 31; (문서번호 30).

14 이처럼 합동 수사기관의 성격을 띤 베를린 특별수사부는 1994년 10월 1일에 베를린 제2 지방 검찰청으로 승격되었다. 김하중, 체제불법 청산방안에 관한 헌법적 고찰, p. 102.

15 이 기관은 1993년 각 주 간 행정협정에 의거해 연방과 각 주에서 파견된 경찰관 340명으로 구성된 합동 경찰 수사본부로, 베를린 정권 범죄 특별수사부의 수사업무를 지원했다. Ibid.

에 달하며, 이 가운데 369명은 정조준 사격에 의해 사살되었다.[16]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할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했으니 1차적인 기소 대상은 정범에 해당하는 국경수비대원이었다. 그러나 독일 사법부는 이들의 발포가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명령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상위 권력자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즉 직접적인 발포·사살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와 상부 명령 간의 인과관계도 고려해 관련자 모두에게 사법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재판은 탈주자를 겨냥해 총격을 가한 국경수비대원, 이들에게 발포 지침을 내린 국경수비대 사령부, 그리고 동독 국경 방위 문제에 대한 최상위 명령권자인 국방위원회와 정치국 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17]

우선 1991년 9월 초 베를린 모아비트 형사 재판부는 4명의 전직 국경수비대원을 기소했다. 기소 사유는 이들이 1989년 2월 7일 친구 한 명과 함께 베를린 장벽을 넘어 서베를린으로 탈출을 시도한 크리스 귀프로이(Chris Gueffroy)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였다. 당시 귀프로이는 10발의 총알을 맞고 심장에 치명적 손상을 입어 사망했고,[18] 그의 친구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목숨은 건졌지만 불법 탈출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반면에 피고들은 탈주자를 저지한 공을 인정받아 훈장과 물질적 보상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동독 정권은 국경 탈주자에 대한 발포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쉬쉬했고, 유가족에게도 직접적 사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나아가 이들에게 희생자의 죽음을 공론화하지 말라는 압력도 가했다. 그러나 귀프로이의 유가족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그의 사망 사건을 신문지상을 통

16 K. W. Fricke, "Merkrwürdige Schluß-Diskussion", Deutschland Archiv, vol. 28(1995), p. 113.

17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R. Grafe, Deutsche Gerechtigkeit. Prozesse gegen DDR-Grenzschützen und ihre Befehlsgeber(München, 2004) 참조.

18 귀프로이의 사망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불과 9개월 전에 발생한 것으로, 그는 베를린 국경수비대 발포의 마지막 희생자였다. R. Grafe, "Die Prozesse wegen der Tötung des Mauerflüchtlings Chris Gueffroy," Deutschland Archiv, vol. 37(2004), p. 978.

해 알렸고, 1990년 1월 가해자들을 고소했다. 재판은 통일 후인 1991년에 시작되었는데, 재판 기간 내내 피고인들을 담당했던 동독 출신 변호인들은 형벌 불소급 주의를 내세워 재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예컨대 헤닝 슈팡엔베르크(Henning Spangenberg)는 독일 사법부가 동독 시절의 통치행위[19]를 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요구했다.[20] 피고인들도 자신들은 살인자가 아니라 명령을 받은 것을 이행한 죄 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했고, 동독 시절에 합법적이었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경법(1982년 발효)과 각종 복무규정에 명시된 탈주 시도 저지 명령을 이행한 것뿐인데 왜 자신들이 이러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고, 그러한 명령은 일개 사병인 자신들이 내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명령을 어기고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자신들이 과연 온전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21]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사안에 자연법 기준을 적용해 탈주자에 대한 사살 행위를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동독 시절에 학교, 대중조직, 혹은 군대에서 받은 정치교육 모두가 국경수비대원의 법의식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정치적 세뇌 교육에도 불구하고 국경수비대원 스스로가 자신의 발포 행위가 사통당 정권이 아닌 일반 동독 시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일인가를 반문하고 자신의 양심을 검증했다면 이들 역시 탈주자 사살이 인명을 경시하는 불법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22] 나아가 탈주자를 저지하기 위해 발과

19 통치행위란 국가통치의 기본이 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보고 사법심사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뜻한다.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3447&cid=40942&categoryId=31645.

20 Grafe, "Die Prozesse wegen der Tötung," pp. 978-979.

21 Ibid., p. 980.

22 Ibid., p. 979.

같이 비교적 생명의 위협을 덜 받는 신체 부분을 겨냥해 사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체에 정조준한 것은 처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결과적으로 사통당 정권의 권력 유지에 기여하는 것일 뿐임에도 맹목적으로 명령에 복종해 탈주자를 사살한 것은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23]

그럼에도 국경 수비 대원에게 형량을 구형하는 데는 매우 관대했다. 당시 담당 검사였던 헤르비히 그로스만(Herwig Großmann)은 피고들이 국경수비대의 특성상 탈주자에 대한 발포를 정당하게 여기도록 강도 높은 세뇌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이들의 발포 행위는 어디까지나 명령을 이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최대 징역 2년을 구형하되 실형이 아닌 집행 유예를 고려했다. 사건 담당 판사들 역시 피고 4인 가운데 귀프로이의 사망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잉고 하인리히(Ingo Heinrich)와 안드레아스 퀸파스트(Andreas Kühnpast)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했고,[24] 다른 두 명은 석방시켰다.

3. 국방위원회 위원 재판

국경수비대 일반 병사에 대한 재판은 곧 독일 사회 내에 경범은 처벌하고 중범은 놔준다는 비판을 야기했다. 요컨대 동독 탈주자 사살에 대한 책임을 명령을 수행한 하급 병사에게만 부과하고, 명령을 내린 권력자들은 왜 처벌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를린 정권 범죄 특별수사부는 동독 지도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문서를 입수했다. 이는 동독 국방위원회(Nationaler Verteidigungsrat der DDR) 회의 문서로, 베를린 장벽 수립을 전후한 시기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열린 내부 회의에서 국방위원들은 국경 탈주를 저지하기 위해 국경 지대에 지뢰와 자동 발사

[23] Ibid., pp. 979-980.

[24] 하인리히는 불과 40미터 거리에서 사망자의 상체를 조준해 발포했고, 퀸파스트의 경우 발포 지점은 100미터 이상 되었지만 연발 사격을 실시했다. Ibid., p. 979.

장치 등의 살상 무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탈주자를 저지하기 위해 발포 및 사살도 불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25]

일례로 1962년 9월 14일자 회의 문서는 당시 당 중앙위원회 안보담당 서기였던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국가안전부장관 에리히 밀케(Erich Mielke), 동독 총리 빌리 슈토프(Willi Stoph)가 이 날 회의에서 "국경 침범자는 모든 경우 적으로 간주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26] 그러나 보다 결정적인 것은 1974년 5월 3일 국방위원회 제45차 회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였다. 이 회의에서 호네커는 국경이 침범될 경우 가차 없이 총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고, 성공적으로 탈주자를 저지한 수비대원은 치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27] 이는 다른 국방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결의로 채택되었고, 이 결의에 따라 대부분의 동서 베를린 및 동서독 국경 지대에 지뢰와 자동 발사장치가 설치되었고, 국경수비대에게 필요시 "국경 침범자"를 총포로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명령과 복무규정도 마련되었다.

바로 이 점에서 탈주자 사살을 비롯해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 행위와 동독 고위 지도층이 내린 명령과의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고 해석한 베를린 주 형사법원은 1992년 5월 6명의 사통당 고위 권력자를 재판에 회부했다. 해당자는 우선 호네커, 밀케, 슈토프로 이들은 1961년 8월 12일부터 1989년 2월 5일까지 발생한 68건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되었다.[28] 이로써 동독 최고 지도자였던 호네커를 동독 붕괴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세우게 되었

[25] (문서번호 26).

[26] Ibid.

[27] Ibid.

[28] H. Bräutigam, "Die Toten an der Berliner Mauer und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und die bundesdeutsche Justiz – Versuch einer Bilanz", Deutschland Archiv, vol. 37(2004), p. 970.

다.[29] 또한 국방부장관을 지낸 하인츠 케슬러(Heinz Kessler)는 1969년 10월 23일에서 1989년 2월 5일까지 발생한 34건, 동독 인민군 총사령관 프리츠 슈트렐리츠(Fritz Strelitz)와 사통당 술 지구당 서기 한스 알브레히트(Hans Albrecht)는 1972년 7월 14일부터 1989년 2월 5일까지 발생한 26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30]

그러나 이들에 대한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보니 공판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슈토프는 1992 11월 13일에 열린 첫 번째 공판부터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 중지되었다. 밀케에 대한 재판도 그가 재판을 받을 기력이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시간을 끌다 1994년 11월 결국 중지되었다. 호네커의 변호사들도 공판 과정에서 국경 탈주자 살상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하고 간암 판정을 받은 그의 건강상태만 부각시켰고, 급기야 재판 중지를 요청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호네커의 건강상태가 재판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1993년 1월 12일 재판의 지속은 피고인에게도 응당 보장되어야 할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결했다.[31] 그 결과 호네커는 석방되어 칠레로 망명했고, 1994년 5월 29일 그곳에서 사망했다. 동독 최고의 권력 서열에 올랐고, 동독 정권 범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고령으로 늙고 병든 상황은 법치주의 원칙으로 인해 가뜩이나 입지가 좁았던 사법청산의 한계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 밖의 피고들에 대한 재판도 1993년 9월 16일에 종결되었다. 베를린 주 재판부는 케슬러와 슈트렐리츠에게 살인 교사죄로 각각 징역 7년 반, 5년 반

---

29 호네커는 통일 전에 이미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그를 처벌하려는 시도들이 여의치 않아 중단되었고, 1991년 3월 소련의 도움으로 모스크바로 도주했다가 독일의 외교적 노력에 의해 1992년 7월 독일로 소환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30 Bräutigam, “Die Toten an der Berliner Mauer”, pp. 970-971.

31 Ibid., p. 971.

을, 알브레히트에게는 살인 종범 혐의로 징역 3년 반을 선고했다. 이러한 유죄판결의 근거는 이들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내린 결정이 지뢰·자동 살상 무기 설치 및 탈주자에 대한 발포 명령의 근본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간접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항소를 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1994년 7월 26일 이를 기각했고, 오히려 알브레히트의 형량을 5년으로 증형 선고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들을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모든 살상 사건의 '정범 배후의 정범(간접 정범)'으로 규정하고 명백한 가해자로 선언했다.[32] 요컨대 국경수비대원의 발포 행위가 근본적으로 국방위원회의 결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 준해 볼 때 국경수비대 병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권력 피라미드의 정상에 있는 배후 인물들을 단순 가담자로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33] 이는 결국 국경 탈주자 살상 사건의 주요 책임이 일반 병사보다 국방위원회에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국경수비대원 재판과 마찬가지로 국방위원회 위원 재판에서도 동독 탈주자를 저지하기 위해 총, 지뢰 등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동독인을 살해한 정권의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이므로 실정법보다 자연법을 우위에 두는 국제 인권법의 적용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를 근거로 형벌 불소급주의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에게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4. 정치국 위원 재판

연방 대법원이 국방위원회에 대한 베를린 주 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함에 따라 국경 탈주자 살상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치국 위원을 기소할 수

32 (문서번호 30).

33 Bräutigam, "Die Toten an der Berliner Mauer", p. 972.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1월에 에곤 크렌츠(Egon Krenz), 귄터 클라이버(Günter Kleiber), 귄터 샤봅스키(Günter Schabowski), 한스 요아힘 뵈메(Hans-Joachim Böhme), 지그프리트 로렌츠(Siegfried Lorenz), 헤르베르트 해버(Herbert Häber)가 기소되었다.

정치국은 동독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치국이 내렸다. 엄연히 국방위원회가 있었지만 정치국은 안보문제에도 깊이 개입했다. 예컨대 정치국은 1971년과 1973년에 국경 수비와 관련된 광범위한 결정을 내렸고, 지뢰 설치를 통해 국경 방어 시설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34] 이러한 기본 노선은 1989년까지 이렇다 할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국 위원들의 결의와 지시 역시 국방부장관을 통해 베를린 장벽 및 동서독 국경 지역 수비대에게 총기를 사용하라는 명령으로 하달되었고, 이에 따라 국경수비대원들은 살인을 감수하며 탈주자를 향해 발포했던 것이다.

국방위원회 위원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소된 정치국 위원들과 이들의 변호사들 역시 형벌 불소급 원칙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국경수비대의 발포 행위는 당시 동독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적법하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이는 명백히 '승자의 사법'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35] 나아가 과거 동독은 완전한 독립 주권을 누리지 못하고 소련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경 수비 체제에 대한 근본적 책임을 소련의 탓으로 돌렸다. 요컨대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독일의 지정학적 위치상 동서독 국경은 서방과 소련·바르샤바 조약기구 간의 국경이기도 했기 때문에 국경 수비와 관련한 모든 중요 원칙을 소련이 결정했다는 것이었다.[36]

---

34 (문서번호 28).

35 "Gerecht",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7. 8. 26.

36 "Krenz macht Moskau für das Grenzregime verantwortlich", Frankfurter Allgemeine

그러나 베를린주 재판부는 한 국가의 정치 지도부가 비무장한 자국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이 사실을 은폐한다면[37] 스스로도 이것이 불법행위임을 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또한 과거 동독이 소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지만 국경 수비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동독 정권의 몫이었음을 강조했다. 설령 그들이 소련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주민 살상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38]

이를 바탕으로 베를린주 재판부는 1997년 8월 25일 크렌츠에게 징역 6년 6개월, 샤봅스키와 클라이버에게는 각각 3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크렌츠에게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단지 그가 호네커의 후계자라서가 아니다.[39] 크렌츠는 1983년부터 사통당 중앙 위원회 안보 서기로 국가 안보 문제를 담당했기 때문에 여타 정치국 위원보다 국경 수비 문제에 더 깊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샤봅스키와 클라이버의 경우 국경사태와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동독 최고위 지도자로서 국경지대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인한 탈주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 살인의도가 인정된다는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40]

슈트렐리츠와 크렌츠, 케슬러는 베를린 지방 법원의 유죄판결에 맞서 대법원에 항소했고, 연방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과 연방 헌법 재판소가 지방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확정하자 유럽 인

Zeitung, 1997. 7. 25; "Krenz ruft nach einem internationalen Gericht",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7. 8. 19.

37 단적인 예로 사살 명령은 구두로만 내려졌고, 사살 사건을 극비에 부쳤으며, 관련 병사를 다른 근무지로 이동시켰다. 고상두, 「통일독일의 과거청산과 한반도에의 함의」, p. 33.

38 "Krenz zu sechseinhalb Jahren Haft verurteilt. Noch im Gerichtssaal festgenomme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7. 8. 26.

39 크렌츠는 호네커 실각 후 1989년 10월 18일부터 12월 3일까지 사통당의 총서기로 동독을 통치했다.

40 장원석, 「통일독일의 과거사 청산 일고」, 『정치와 평론』, 14권 (2014), p. 95.

권 재판소에 인권 소원까지 제출했다. 이들은 독일 사법부가 유럽 인권 협약 제 7조 1항, 즉 행위 당시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았던 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고, 현재 처벌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해 행위 당시 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또한 국경 지대의 수비 체제는 동독 생존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고, 이것은 국제법에 따라 보더라도 범죄 성립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41]

그러나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1년 3월 22일 인명 보호의 의무 규정이 동독의 헌법, 인민경찰법, 국경법에도 명백히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행위 당시에 생명권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최고의 법익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동독의 존립을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루고라도 국경지대를 수비하는 것이 당시 동독의 국가적 관행이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다.[42]

그렇다면 다양한 차원에서 시행된 국경 탈주자 살상 행위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 내독 국경에서 자행된 폭력행위와 관련해 베를린 형사소추기관에 총 6,432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가운데 기소 건수는 112건이었고, 246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 결과 이 가운데 61명은 무죄로 석방되었고, 13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43]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권력 서열, 지속적인 정치적 세뇌 교육에 따른 법의식의 파괴, 명령에 대한 맹목적 복종을 강요한 억압적 상황, 고령[44]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예컨

41 (문서번호 30).

42 Ibid.

43 Ibid.

44 많은 이들이 재판을 받거나 형량을 살기에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재판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다보니 건강상의 이유로 고령의 피고들은 차차 재판에서 제외되었고, 국방위원회 위원 재판에 회부된 슈토프, 정치국 위원 재판에 회부된 에리히 뮈켄베르거(Erich Mückenberger)와 쿠르트 하거(Kurt Hager) 등은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사망했다. 그 밖에 동독 최고법원의 판사들과 동독 최고검찰청의 고위 사법 간부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같은 이유로 소수만이 진행될 수 있었다. 본래 약 200명에 이르던 피의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조사 시작 당시 65세 이상에다 병환 중이었기 때문이다. Ibid.

대 가장 말단에 해당하는 국경수비대원과 이들의 직속상관은 대부분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에 비해 국경수비대 연대장은 1년 8개월에서 2년 반, 여단장은 3년 3개월, 국경수비대장은 3년 3개월에서 6년 반,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3년 반에서 7년 반, 그리고 정치국 위원들은 처벌 포기에서 6년 반에 이르는 형을 선고 받았다.[45]

제3절 잘츠기터 중앙기록보관소의 증거 기록

사통당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안전부 문서를 비롯해 다양한 동독 측 자료가 분석되었지만, 서독지역에서 수집된 자료도 참고 자료로 이용되었다. 이는 니더작센주 잘츠기터 소재 주 법무행정 중앙기록보관소(Zentrale Erfassungsstelle)가 소장했던 자료이다. 중앙기록보관소는 1961년 11월 동독 정권이 자행한 모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훗날 이에 대한 형사소추 시 필요한 증거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처럼 서독이 동독인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록보관소를 설립한 것은 동독에 거주하는 독일인에 대해서도 서독의 모든 기관은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한 것이고, 나아가 동독인들에게 분단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하나의 조국임을 일깨우고, 통일 의지를 확고하게 표명한 것이었다.

이 기관의 설립을 제창한 사람은 함부르크시 기민당 의장이었던 에릭 블루멘펠트(Eric Blumenfeld)였고, 설립을 주도한 사람은 당시 서베를린 시장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였다. 브란트는 나치 주요 책임자의 불법 행위

[45] Ibid. 이 통계자료에는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5년에서 7년 반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 위원 알브레히트의 경우 선고된 형량이 3년 반이었기 때문에 필자가 이 부분을 수정했음을 밝혀둔다. Bräutigam, "Die Toten an der Berliner Mauer", p. 975에도 국방위원회 위원에게 선고된 형량이 3년 반에서 7년 반으로 제시되어 있다.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나치 과거청산에 일조한 루트비히스부르크 나치 범죄 조사 본부(Zentrale 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zur Aufklärung nationalsozialistischer Verbrechen in Ludwigsburg)를 근거로 서독 역시 동독 정권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적극적 발의 덕분에 중앙기록보관소는 1961년 11월 15일 연방 주 법무부장관 회의를 거쳐 설립되었다.[46]

이렇게 탄생한 잘츠기터 기록보관소는 1961년 베를린 장벽 설립 후 1989년에 이르기까지 동독 정권의 불법 통치를 방증하는 자료, 즉 사통당 정권이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면서까지 내린 지시로 인해 발생한 살인, 신체 상해 및 자유 박탈, 정치적 이유로 많은 동독인에게 내려진 불법 판결, 형 집행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납치 등에 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보관했다. 예를 들면 "글라스노스트(Glasnost, 정보공개)"와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개혁)"라는 문구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시위에 참가했다가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은 에어푸르트의 한 부부, "나는 동독과 사통당이 싫다"라는 문구를 팔에 문신으로 새겼다고 22개월 간 수감되었던 한 청년,[47] 아이들을 강제로 보육원으로 보내겠다는 협박 하에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당한 부부의 사례[48] 등 30년 동안 수집된 4만여 건의 자료와 80만에 달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인명카드 등을 보유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국경탈주자에 대한 발포를 비롯해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행위를 우연히 목격한 서독 연방 국경수비대 초소의 보고, 1970년대 이후 동독에 상주가 가능했던 서독 신문 기자들의 취재 자료, 동독 이탈주민, 탈출 군인, 정치범 석방 거래에 의해 서독으로 넘어 온 동독인의 진술

46 (문서번호 113).

47 (문서번호 112).

48 Das Archiv des Unrechts-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in Salzgitter, März 2013, http://www.kas.de/thueringen/de/publications/33934.

등을 토대로 수집되었다.[49]

그러나 잘츠기터 중앙기록보관소는 분단 시기에 지속적으로 정치적 논쟁을 야기한 '뜨거운 감자'였다. 사통당 독재 정치의 희생자에게 이 기록보관소는 '희망의 장소'였다. 이곳을 통해 증거가 수집되면 사통당 정권이 자행한 범죄에 대해 언젠가는 처벌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반면 사통당 정권은 이러한 동독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동독에 대한 주권 개입으로 비난하며 기록보관소의 폐지를 요구했다. 서독의 정치 세력 내부에서도 기록보관소에 대한 입장은 상이했다. 기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기록보관소의 유지를 옹호한 반면 1970년대 긴장완화 정책을 시행하며 동서독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 사민당은 기록보관소가 동서독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1980년 10월 호네커가 게라에서 양국 간의 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기록보관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시행한 후 사민당은 기록보관소를 실질적으로 폐지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급기야 1980년대 후반에는 사민당이 집권한 연방주-함부르크,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자란트, 브레멘,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와 서베를린 정부는 잘츠기터 기록보관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분노한 한 베를린 시민은 10 마르크를 동봉한 편지를 기록보관소에 보내기도 했다.[50]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잘츠기터 기록보관소는 폐지되지 않고,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과 모금을 통한 지원에 힘입어 동독에서 민주화 혁명이 발생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통일 후 잘츠기터가 보유한 자료는 사통당 정권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형사소추 및 판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이용되었고, 동독 출신 판·검사의 재임용 시 심사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피해자들이 보상 및 복권을 청구하는데도 증거자료의 역할을 했다.[51] 이러한 형법상의 일처리

[49] K. Schweizer, Täter und Opfer in der DDR (Münster, 1999), p. 219.

[50] (문서번호 113).

[51] Ibid.

를 마친 후 기록보관소가 보유한 모든 서류는 코블렌츠에 있는 독일 연방 문서 보관소(Bundesarchiv in Koblenz)로 이전되었다.

제4절 사법청산의 의미와 한계

사통당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청산은 독일통일 15년 후인 2005년에 종결되었다. 독일 연방 공화국에 동독이 편입되면서 전개된 소송들이 이 때에 모두 종결되었다. 새로운 기소는 거의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범행들이 더 발견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시효에 의한 소송의 어려움 때문에 매우 무거운 범죄만을 소추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법청산의 전체적인 성과는 어떠했을까? 통일 후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동독인은 10만 명에 이르렀고, 이와 관련해 대략 7만 5천 건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재판은 1,737명을 대상으로 1,021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52] 이 가운데 형사소추의 핵심을 이룬 것은 세 개의 범죄 유형이었다. 첫째는 동독 시절 현행법의 자의적 적용에 따른 '법왜곡죄'로, 전체 사건의 36.6%에 해당했다. 둘째는 베를린 장벽과 동서독 국경 지대에서의 무력 사용 혐의로, 23.9%에 달했다. 셋째는 동독 비밀 정보기관 국가안전부의 범죄에 관한 재판으로, 13.9%에 해당했다.[53]

전체 혐의자 10만 명 중 기소율은 1.4%에 불과했고, 그나마 피고인 중 53.9%(753명)만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24.1%(336명)가 무죄로 방면됐다. 20.1%는 사망 혹은 고령으로 인해 재판이 중지되었다.[54] 판결의 92.3%가 2년 이하의 형을, 49.5%가 1년 이상 2년 이하, 42.8%가 1년 이하의 형을 선고

52 (문서번호 31). 여기서 피고인 1,737명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 중에는 여러 건에 걸쳐 기소된 사람도 있었다.

53 Ibid., 표 13 참조.

54 Ibid., 표 20 참조.

했다.[55] 그나마 실형 판결을 받은 사람의 약 92%는 형 집행이 보류되고 집행 유예가 선고되었다.[56]

이상을 통해 볼 때 통일 후 독일에서 전개된 사법청산은 실질적 처벌이라기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 즉 사통당 정권의 불법 행위는 명확히 유죄로 규정했지만 실제 처벌은 사면에 가까울 정도로 경미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추가 동독 법규 상 처벌가능한 행위로 제한되고, 개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의 몫을 명확히 가늠할 수 있어야 하고, 국경 탈주자를 살해하고 동독인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의 고령 및 인권을 고려해야 하는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엄중 처벌은 불가능했다.

범죄 행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솜방망이에 가까운 경미한 처벌은 사회적 비판을 야기했다. 특히나 피해자들의 분노와 좌절감은 말할 수 없이 컸다. 동독 민주화 혁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민권운동가 배르벨 볼라이(Bärbel Bohley)는 "우리가 원했던 것은 정의였으나 우리가 실제로 얻은 것은 법치국가였다"는 말로 실망감을 토로했다. 반면에 법치주의를 십분 활용해 사면에 가까운 가벼운 처벌을 받은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져야할 윤리적 책임에 대한 비판적 성찰마저도 없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자신들을 서독이 정치적 의도로 진행한 '승자의 재판'의 희생자로 부각시켰다. '승자의 재판', '승자의 정의'라는 말은 1990년대 신연방주 내에서 많이 회자되었지만 법치주의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고수한 사법청산 과정을 통해 볼 때 설득력이 없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사법청산은 기대와 달리 법과 정의가 항상 일치할 수 없다는 한계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독일의 사법청산이 갖는 의미도 간과할 수 없다. 우선 지은 죄가 편견과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만 판결

[55] Ibid. 표 25 참조.

[56] Ibid., 표 23 참조.

이 가능하며, 불법행위를 불법적 행위로 응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의 고수는 동독 붕괴 과정에서 대두된 혁명적 분위기에 편승한 보복 감정이나 사회 여론에 따라 기준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을 차단함으로써 통일 후 내적 평화 정착에 기여했다.

또한 법이 과거 극복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법에 충실하고자 했던 점은 독일 사회에 법치주의의 의미를 재천명하고, 오랫동안 불법 체제 하에서 살아온 동독 주민에게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미래를 향한 법치국가적 토대를 다지는데 기여했다.[57]

나아가 사법청산은 형사 소추를 위해 시행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사통당 정권이 자행한 만행을 밝히고, 이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같은 맥락에서 비록 가벼운 처벌에 그친 판결은 불만족스러웠지만, 최소한 정권 범죄 및 독재 체제 유지에 적극 가담한 자들이 조사 및 재판 절차를 겪은 것도 소득이었다. 이는 특히 국경 탈주자 살상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최소한 법정에 서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한다"는 한 피해자 유가족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58] 또한 형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해자들이 국내법에 의해서든, 국제법에 의해서든 책임을 추궁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앞으로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막는데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7 김하중, 체제불법 청산방안에 관한 헌법적 고찰, p. 73.

58 Marianne Birthler, "Gerechtigkeit nach Aktenlage?," Bautzen-Forum (ed.): Recht und Gerechtigkeit. Politische Häftlinge der SBZ/DDR im geteilten und vereinten Deutschland. XIII. Bautzen-Forum der Friedrich-Ebert-Stiftung, Büro Leipzig. 23. und 24. Mai 2002. Dokumentation(Leipzig, 2002), p. 87.

제2장

국가안전부 문서 공개와 과거청산

제1절 문서 확보와 공개

통일 후 독일의 과거청산은 국가안전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일명 슈타지(Stasi)로 불리는 동독 비밀 정보기관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국가안전부는 1950년 국내외의 적으로부터 동독을 방위하고 사통당의 정치노선으로부터 이탈하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 정식 요원은 1천 명에 불과했지만, 끊임없이 확장을 거듭해 1989년에는 9만 5천 명의 정보 요원과 약 18만에 달하는 비공식 정보원(Inoffizielle Mitarbeiter, IM)[59]을 보유한 거대한 국가기구로 성장했다. 국가안전부는 사통당의 "방패와 창"으로 동독 사회 전반을 샅샅이 감시함은 물

[59] 비공식 정보원은 동독인을 감시해 국가안전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여타 다른 방식으로 국가안전부에 협력한 동독인들이다. 이들은 국가안전부에 의해 포섭된 평범한 사람들로, 사회 각 영역에 투입되었다. 비공식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장애인으로부터 유명작가, 종교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이들은 주로 감시 대상자의 친척, 친구, 동료, 심지어 배우자이기도 했다. 통일 후 국가안전부 문서 공개로 밝혀진 이러한 비극적 양상은 독일 사회에 엄청난 파문과 충격을 야기했다. 비공식 정보원에 대해서는 Bürgerkomitee Leipzig(ed.), Stasi intern(Leipzig, 1992), pp. 156-172; Die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ed.), Stasi. Die Ausstellung zur DDR-Staatssicherheit(Berlin, 2011), pp. 61-71 참조.

론 체제에 순응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동독인을 탄압함으로써 사통당 독재 체제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60] 따라서 국가안전부는 동독 독재 체제의 청산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상이었다. 통일 후 국가안전부가 남긴 문서가 공개되어 사통당 정권과 국가안전부가 자행한 억압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됨에 따라 과거청산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기관의 문서는 30년이 지난 후에 공개되며, 더욱이 비밀정보 기관의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는 어떻게 통일 후 곧바로 공개될 수 있었을까? 우선 동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서 공개의 유리한 전제 여건을 형성했다. 또한 나치 파국 이후 나치 과거청산이 본격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사통당 독재의 유산은 지체 없이 청산하려는 독일 사회의 의지가 강했다. 나아가 사통당 정권의 탄압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복권 및 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서 공개를 통한 진상 규명

60 국가안전부는 통상적인 비밀 정보기관의 특성 뿐 아니라 비밀경찰,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문 기관의 역할도 했고, 무엇보다 자국민에 대한 감시에 주력했다. 국가안전부의 주요 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서독에 대한 정보수집
2) 방첩
3) 동독 거주 외국 공관 및 언론인 감시
4) 여권과 세관 조사를 비롯한 동서독 국경 지대의 방어 및 국경 수비군의 지휘와 통제
5) 국가 인민군의 감시 및 외부세력 침투로부터의 보호
6) 독일 및 국제 테러 단체로부터 국가 보호
7) 동독 고위 정치 지도자의 신변 보호
8) 국가 보안, 공공질서를 해하는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심문
9) 경제 영역에 대한 보호와 통제
10) 동독 시민의 신상 정보 시스템 구축
11) 동독 내 전화 및 통신체제 감시와 우편물 통제
12) 동서독 주민 간 전화 및 우편 왕래 감시
13) 무선 도청 탐지
14) 국가안전부 요원을 비롯한 주요 국가기관 근무자의 정치적, 사상적 태도 감시
15) 체제 비판 세력의 적발 및 제거
R. Wiedmann, Organisationsstruktur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1989 (Berlin, 1995) 참조.

이 필요했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61]

기본적으로 국가안전부 문서가 공개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동독 시민들의 힘에 의한 것으로, 민주화 혁명의 성과이다. 1989년 가을에 시작된 대규모 민주화 시위로 1989년 10월 18일 동독 최고 지도자인 호네커가 당 총서기 직을 비롯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고, 11월 7일에는 동독 정부가 총사퇴했다. 이어서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가 이끄는 정부가 출범해 억압적인 동독 체제의 개혁을 약속했고, 국가안전부를 대폭 축소하여 비밀 정보기관 고유의 주 업무인 방첩에 전념하는 국가안전국(Amt für Nationale Sicherheit)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가안전부 국장이 된 볼프강 슈반니츠(Wolfgang Schwannitz)는 기존 조직을 그대로 유지시키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국가안전부 범죄의 치부를 드러내는 증거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다.[62] 이로 인해 1989년 말부터 1990년 초에 이르기까지 사통당 최고위층과 핵심 간부급에 관한 문서들은 대다수가 파기되었다.[63]

약속된 국가안전부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불만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문서 파기 소식까지 접하게 된 동독 시민들은 1989년 12월 4일 에어푸르트를 필두로 1990년 1월에 이르기까지 동독 각 지역의 국가안전부 건물을 점거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 덕분에 문서를 비롯한 국가안전부의 다양한 자료들이 완전히 파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동독 시민들은 국가안전부/국가안전국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1989년 12월 8

61 30년 후 공개를 의무화한 문서 공개법의 규정은 동독에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일 후 독일 연방 외무부가 관리하는 구 동독 외무부 문서를 제외한 모든 동독 정부 자료들은 공개되었다.

62 문서 파기는 1989년 10월 말 당시 국가안전부장관인 밀케의 명령에 따라 시작되었다. 민주화 혁명의 여파로 11월 7일 밀케가 물러나자 그의 후임자인 슈반니츠가 문서 파기 작업을 본격화했다. 문서는 주로 파쇄기로 자르고, 손으로 찢어 소각하거나 펄프제조기에 물과 함께 넣어 분쇄하는 방식으로 파기했다. K. Bästlein, “Der Kampf um die Akten”, Deutschland Archiv, vol. 43(2010), p. 831.

63 (문서번호 1).

일 모드로우 정부는 40년 간 사통당의 충실한 오른팔이었던 국가안전부의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해산 작업은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 정권에 의해 진행되었다. 1990년 5월 16일 지역별 대표 186명으로 구성된 국가안전부 해체 위원회가 내무부 산하에 설립되어 해체에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했고, 1990년 9월 25일에 국가안전부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동독 시민의 용기 있는 개입 덕분에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는 거리로 환산할 경우 총 111km에 달하는 문서와 색인카드, 47km에 달하는 마이크로필름 문서, 170만 장이 넘는 사진 자료, 3만개에 가까운 영상 및 음향 자료 등이다.[64] 파기된 문서의 양을 약 25km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니 국가안전부가 남긴 자료는 실로 엄청난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국가안전부의 범죄를 밝혀줄 증거 자료들을 사수했다는 기쁨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회는 곧 문서 공개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로 여론이 갈라져 열띤 논쟁에 휩싸였다.[65] 사회 일각에서는 국가안전부의 불법 행위는 물론 비공식 정보원의 신상, 그리고 이들이 행한 감시 및 염탐 기록을 담고 있는 문서의 공개로 야기될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우려해 공개를 반대했다. 무엇보다 문서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들이 누가 자신을 감시하고 염탐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겪은 고통의 주요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마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동독의 마지막 총리를 지낸 드 메지에르는 심지어 문서가 공개되면 살인까지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66]

---

64 Der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BStU), Elfter Tätigkeitsbericht des BStU (Berlin, 2013), p. 13.

65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S. Schumann, Vernichten oder Offenlegen? Zur Entstehung des Stasi-Unterlagen-Gesetzes. Eine Dokumentation der öffentlichen Debatte 1990-1991(Berlin, 1995) 참조.

66 H. Geiger, "Zur Entstehung der Behörde des Bundebeauftragten und des Stasi-Unterlagen-Gesetzes," K.-D. Henke(ed.), Wann bricht schon mal ein Staat zusammen!(München, 1993), p. 35.

반면에 문서 공개 찬성자들은 정권 범죄의 피해자들이 그들의 삶에 국가안전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국가안전부가 자행한 모든 불의와 억압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라도 문서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사통당 정권의 억압적 지배 체제에 반기를 든 체제 비판 세력이 이러한 입장을 대변했다. 예컨대 체제 비판적 성향의 개신교회 목사이자 훗날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청의 수장이 되는 요아힘 가욱(Joachim Gauck)은 과거의 치부를 드러내고 이와 비판적으로 마주하는 것이 동독이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67] 한편 문인이자 민권운동가로 활약한 루츠 라테노프(Lutz Rathenow)는 국가안전부 문서를 공개해 진상을 밝힘으로써 동독 주민 모두가 사통당 독재에 부역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동독 주민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8]

열띤 공방전 속에서도 문서 공개를 통한 과거청산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우세했다. 일례로 1990년 4월 슈피겔지(Der Spiegel)가 동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사통당 정권 범죄의 피해자들이 문서를 열람할 권리를 가져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69] 이러한 여론에 부응해 동독 인민의회는 1990년 8월 24일 국가안전부를 정치적, 역사적, 사법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조명할 것을 골자로 하는 '구 국가안전부/국가안전국 개인 관련 자료의 보존과 이용법(Gesetz über die Sicherung und Nutzung der personenbezogenen Daten des ehemaligen Ministeriums für Staatsicherheit/Amtes für Nationale Sicherheit)'을 가결하고 문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67 장원석, 「통일독일의 과거사 청산 일고」, p. 97.

68 Ibid.

69 Christian Booß, "Von der Stasi-Erstrümung zur Aktenöffnung. Konflikte und Kompromisse im Vorfeld der Deutschen Einheit", Deutschland Archiv, vol. 44(2011), p. 84.

그러나 1990년 여름 동서독 정부는 통일 조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통일 조약에 포함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안전부 문서를 독일 연방 문서고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이는 향후 30년 간 문서 열람이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결정은 양 정부가 통일 후 직면하게 될 혼란을 최소화하고, 동서독의 사회 통합을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 국가안전부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지극히 정치적 논리에서 비롯되었다.

민주화 혁명의 구심점 역할을 한 동독 민권운동가들은 즉각 이에 반발했다. 이들은 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사통당 정권이 자행한 범죄를 은폐하고 주요 책임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동독 정권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인 국가안전부 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희생자들이 보상 및 명예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자 이들은 1990년 9월 4일 동베를린의 국가안전부 총본부 건물을 점거하고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시위와 단식 농성을 전개했다. 동독 인민의회도 통일 조약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양 독일 정부는 이러한 압력에 굴복해 1990년 9월 18일에 재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통일 후 동독 인민의회가 제정한 법을 바탕으로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법을 제정해 문서를 공개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전담 기관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통일 조약에 추가되었다. 결국 국가안전부 문서를 파기로부터 지켜낸 것도, 통일 후 문서 공개를 통한 과거청산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모두 동독 민주화 혁명의 빼놓을 수 없는 성과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 후 숱하게 대두된 '승자의 심판론', 즉 서독이 패망한 동독을 심판하기 위해 국가안전부 문서 공개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통일 조약에 명시된 대로 독일 연방 의회는 1991년 12월 '구 독일 인민 공화국 국가안전부 문서 처리법(Gesetz übe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70]을 제정했다. 국가안전부가 남긴 방대한 문서와 기타 자료 공개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는 이 법은, 우선 모든 사람이 자신에 관한 문서가 존재하는 한 이를 열람할 수 있다는 공개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둘째, 문서 공개에 따라 국가안전부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당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인 정보 및 인권 보호를 의무화했다. 따라서 개인 관련 문서는 당사자만이 열람할 수 있고, 그 안에 언급된 제3자에 대한 정보 역시 철저히 보호된다. 셋째, 문서 처리법은 문서 공개를 통해 국가안전부의 실체를 역사적, 사법적, 정치적 측면에서 철저히 조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움으로써 사회주의 독재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서 처리법의 제정과 더불어 1992년에는 행정 업무를 담당할 '구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 연방 관청(Der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이 발족했다. 이 관청은 현재까지 국가안전부가 남긴 문서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처리 권한을 지닌 유일한 기관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것을 막고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았다.[71] 베를린에 본부가 있고, 신연방주 14곳에 지부를 두고 있다. 즉 베를린 본부가 총체적으로 문서 처리 작업을 관할하되 지역별로 지부 관청을 두어 해당 지역민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청의 임무[72]는 첫째, 방대한 규모의 문서를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분류

[70] 이하 국가안전부 문서 처리법으로 약칭한다.

[71] 초대 관청장은 현 독일 대통령 요아힘 가욱으로 2000년까지 문서 처리 작업을 총괄했으며, 이후 그의 후임자인 마리안네 비르틀러(Marianne Birthler)가 2011년 3월까지, 현재는 동독 체제 비판 세력 출신인 롤란트 얀(Roland Jahn)이 지휘를 맡고 있다.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청은 이들 청장의 이름을 따서 가욱, 비르틀러, 얀 관청으로도 불린다.

[72] (문서번호 2).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청은 2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활동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를

및 정리하고, 파기된 문서를 복원하는 것이다. 2012년 현재 문서와 색인 카드의 약 94%, 사진 자료의 61%, 영상 자료의 거의 대부분, 음향 녹음 자료의 69%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상태로 정리되었다.[73] 또한 파기된 자료를 되살리는 작업도 많이 진전되어 약 130만 장에 달하는 문서와 색인 카드를 복원했다.[74] 둘째, 문서 열람 신청자들에게 문서 열람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안내하고, 정권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기관의 역할도 수행한다. 셋째, 관청 산하에 교육·연구부를 두어 국가안전부와 동독사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꾸준히 출판하고, 각종 전시회 혹은 강연회를 열어 국가안전부의 범죄 행위를 알리고, 이를 토대로 독일인들의 민주의식을 함양하는 정치, 역사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75]

제2절 문서를 토대로 한 새로운 과거청산 시도

1. 개인적 차원의 청산

국가안전부 문서는 1992년 1월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문서 공개가 시작되자 약 60만 건의 열람 신청이 쇄도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독일은 벌써 20년 넘게 국가안전부의 유산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국가안전부 문서는 과거청산에 어떻게 이용되었고, 또 과거청산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국가안전부가 남긴 방대한 문서는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 과거사 규명에 이용되고 있다. 동독 정권 범죄의 피해자들은 문서 열람을 통해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감시하고 탄압했는지, 동독 시절에 자신이 왜 이유도 모

통해 관청의 과제와 구체적 활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것은 2011년과 2012년의 활동 기록을 담은 제11차 활동 보고서이다.

73 Der BStU, Elfter Tätigkeitsbericht, pp. 13-14.

74 Ibid., p. 14.

75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청이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교육, 홍보 작업의 구체적 내용은 5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른 채 사회적 불이익이나 따돌림을 겪어야 했는지 등의 과거사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76] 문서 속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국가안전부의 불법 행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안전부 문서는 의문사, 실종과 같이 미해결된 사건을 규명할 수 있는 단서도 제공하고 있다. 국가안전부 문서 처리법은 의문의 실종 및 사망 사건 희생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문서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77] 따라서 그동안 미궁 속에 빠졌던 실종 혹은 사망 사건이 국가안전부의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유족이 문서 열람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 연방 관청의 활동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12월 현재 2,918,325 명이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과거사 규명을 위해 문서 열람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2,830,574건이 처리되었다.[78]

문서 열람을 원하는 이들은 해당 지역 문서 관리청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그러면 관청은 우선 신청자에 관한 국가안전부 문서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해 통보해준다. 문서가 존재한다 해도 열람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2008년 문서 열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 기간이 1년 미만이었던 경우가 응답자의 40,3%, 1년에서 2년 사이가 47,1%가, 2년에서 4년 사이였던 경우가 12,6%에 해당했다.[79] 국가안전부 문서 처리법 12조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복권에 관련된 사안이나 국가안전부 협력자라는 누명을 벗겨주어야 할 경우, 혹은 열람 신청자가 75세 이상의 고령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기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

신청 이후 열람까지 오래 기다려야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많

[76] 국가안전부 문서 처리법 13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국가안전부 요원이나 비공식 정보원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문서번호 7).

[77] 가까운 친척은 배우자, 자녀, 손자, 부모, 형제를 뜻한다. (문서번호 7 내, 국가안전부 문서 처리법 15조 참조).

[78] Der BStU, Elfter Tätigkeitsbericht, pp. 112-113.

[79] (문서번호 18).

은데다가 모든 문서가 신청 즉시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안전부 문서 처리법이 문서 공개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신상 정보를 익명화하는 사전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80] 즉 문서 관리청 직원은 문서를 꼼꼼히 읽고, 문서 원본을 복사 후 문서에 기록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 예컨대 대인 관계, 사생활, 건강상태 및 장애 여부, 종교, 결혼 및 가족 관계, 정치적 관계, 직업, 경제 상황 등 기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검게 덧칠하는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작업이 끝난 후에야 열람 신청자는 통보를 받고 관청에 나와 문서를 보거나 혹은 우편으로 문서 복사본을 받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안전부 문서는 사통당 정권의 피해자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명예 회복이라는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국가안전부 문서를 토대로 과거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법 피해 사례를 밝혀 해당 판결을 무효화하고 해당자들을 범법자 신분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출된 열람 신청은 2012년 12월까지 98,220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97,686건이 처리되었다.[81]

나아가 국가안전부 문서는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피해자들이 국가안전부가 자행한 고문이나 비인간적 수감 환경 등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때 이를 중요한 증빙자료로 이용하고 있다.[82] 또한 동독에 집과 토지 등 재산을 남겨두고 온 이탈주민의 재산권 주장과 보상 청구도 국가안전부 문서의 도움으로 보다 용이해졌다. 일례로 동독 정권은 1970년대 이후 온

80 인격권 보호와 익명화의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문서번호 2).

81 Der BStU, Elfter Tätigkeitsbericht, pp. 112-113.

82 국가안전부는 동독 시절에 시행된 수많은 재판 기록, 검찰 측 형 집행 기록문서,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수감자에 대한 기록 등을 보유했는데, 이를 통해 판결 사유, 수감 기간 및 환경, 수감 생활로 인해 얻게 된 질병 등을 판단할 수 있다.

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서독으로의 이주 승인을 요구한 동독인들에게 종종 이주를 허락했는데, 이 경우 최대한 빨리 동독을 떠나야 했다. 때문에 이들은 집과 토지는 물론 대부분의 살림살이를 남겨 두고 왔다. 동독 정권은 이러한 이탈 주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해 공공 자금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보고가 담긴 국가안전부 문서는 동독 이탈 주민의 재산 손실을 사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012년 12월까지 이러한 사안들과 관련해 169,576건의 열람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168,504건이 처리되었다.[83]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부 문서는 피해자들의 연금 산정에도 참고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들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기 때문에 취업 활동 기간이 일반인 보다 짧아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기간을 근무 연한에 포함시킴으로써 연금 산정시 다소 혜택을 받게 했는데, 국가안전부 문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증빙 자료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까지 이와 관련해 접수된 문서 열람 신청 1,155,046건 중에서 1,153,533건이 처리되었다.[84]

2. 사회적 차원의 청산

국가안전부 문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과거청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우선 사회 주요 분야에서 국가안전부와 연루된 동독인을 가려내는데 필요한 증거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신연방주가 독재의 유산을 청산하고 민주적 시민 사회로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동독 정권의 지시 하에 국가안전부가 자행한 범죄에 적극 가담했거나 협조한 동독인들을 사회 각 분야, 특히 공직 분야에서 걸러내는 작업이 필수과제였

83 Der BStU, Elfter Tätigkeitsbericht, pp. 112-113.

84 Ibid.

다. 이러한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특히 1990년 3월 동독 최초로 자유선거가 실시되기 직전 당시 유력한 총리 후보였던 볼프강 슈누어(Wolfgang Schnur)가 국가안전부 비공식 정보원으로 밝혀지면서 독일 사회 내에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 후 신연방주의 행정, 정치제도가 새롭게 정비되는 과정에서 경찰, 교사, 사법 공무원, 시청 직원 등 공직 종사자들의 재임용 및 신규 임용 시 이들의 과거 전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공직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의 종사자, 예컨대, 의회 의원, 공증인, 변호사, 종교계 인사, 주요 기업 이사회 임원 및 경영인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안전부 문서는 심사 대상자가 국가안전부의 협력자였는지를 밝혀주는 증거 자료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 검증은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청이 자동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기관이 신청을 해야 가능했다. 즉 해당 기관이 자체 인력 혹은 임용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면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청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를 철저히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해주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청에게는 문서의 내용만 전달할 수 있을 뿐 판결을 내릴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기관들은 통보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 혹은 인사과 등에서 개별 사례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해고 여부를 결정했다.

예외적으로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청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특정 정보를 발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예컨대 정치 분야 공무원, 관청장급 고위 공무원, 시장을 비롯한 선출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교회관계자 등이 국가안전부를 위해 활동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를 즉각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또한 국가안전부의 범죄 행위, 공공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 간첩

활동, 테러 행위에 대한 단서를 발견해도 연방 내무부에 알릴 의무가 있다.[85]

문서를 이용한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자격 심사는 "과거의 잘못이 공공 생활에 있어 평생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국가안전부 문서 처리법 규정에 따라 발효일로부터 15년으로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원래는 2006년까지가 만료 시한이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현재 2019년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2012년 12월까지 이러한 문서 조사를 통한 인적 검증 신청은 1,979,535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1,979,040건이 완료되었다.[86]

그런가 하면 국가안전부 문서는 과거 사통당 정권이 자행한 정치적 범죄와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사법청산에도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동독 시절에 국가안전부가 관여하지 않은 영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국가안전부 문서는 정권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국경수비대원의 발포로 탈주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가안전부가 수사를 담당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부 문서는 국경 탈주자 살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심지어 국가안전부 문서가 이 사안을 조사하는데 유일한 자료가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87] 이처럼 사법 처리와 관련해 2012년 12월까지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청에 접수된 조사 의뢰는 220,895건이고, 그 중 220,622건이 처리되었다.[88]

끝으로 국가안전부 문서는 과거청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구와 교육에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40년 간 유지된 동독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독일인에게 독재의 정치적 메커니즘과 억압적 정치현실을 알리는 것이 필수 과제이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부 문서 처리법은 매스컴 종사자와 연구

85 (문서번호 8 내, 국가안전부 문서 처리법 27조 참조).

86 Der BStU, Elfter Tätigkeitsbericht, pp. 112-113.

87 (문서번호 30).

88 Der BStU, Elfter Tätigkeitsbericht, pp. 112-113.

자에게도 문서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 후 독일 언론인들은 신문과 잡지를 통해 국가안전부의 실체와 사통당 독재의 양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방송사들은 TV 및 라디오 교양 프로그램도 제작했다. 또한 학계 연구자들은 국가안전부 문서를 분석해 동독 독재 체제의 구조와 억압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 성과를 배출했다. 시간이 갈수록 국가안전부가 남긴 문서 외의 자료도 대폭 공개되어 사진과 영상 자료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2012년 12월까지 매스컴과 학계의 문서 열람 신청은 27,730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26,112건이 처리 완료되었다.[89]

이상을 통해 볼 때 통일 후 공개된 국가안전부 문서는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사통당 독재청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서 공개 이후 2012년 12월까지 문서 관리청에 제출된 총 열람 및 조사 의뢰 신청 건수는 무려 6,793,201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6,699,180건의 처리가 완료되었다.[90] 이처럼 비밀 정보기관의 문서를 토대로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선구적 사례이다. 문서가 완전히 파기되었거나 공개되지 않았다면 사통당 독재의 유산을 청산하는 작업이 지금처럼 강도 높게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3. 문서 공개에 대한 반대와 저항

국가안전부 문서가 다방면으로 과거청산 작업에 이용되고 있지만 통일 직전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비밀정보 기관의 문서를 토대로 과거청산을 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과거청산은 사회적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책임자 규명과 처벌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저항에

89 Ibid.

90 Ibid.

부딪히게 된다. 더욱이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 통일된 상태에서 과거청산이 동독에 국한되어 진행되다보니 신연방주 주민들의 불만이 증대되어 문서 공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그렇다면 국가안전부 문서 공개를 둘러싼 논쟁의 쟁점은 무엇일까? 처음 문서가 공개되었을 때 동독지역 주민의 다수가 문서 공개를 지지했고, 사회적 관심도 컸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문서 공개의 종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서 공개를 반대한 사람들은 첫째, 문서가 공개되어 진실이 드러날수록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폭력을 동반한 복수가 증대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문서 공개를 반대했다. 이러한 우려는 통일 이전에 이미 주장된 바로 통일 이후에도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또한 반대자들은 문서 공개의 후유증이 동서독 간에 대립을 심화시켜 사회적 평화와 내적 통일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국가안전부 문서를 통해 밝혀진 비공식 정보원에 대한 충격적 사실과 폭로성 기사로 도배가 되다시피 한 언론의 무분별한 행태가 동독인들을 마치 '첩자 민족'[91]으로 보이게 하고, 이것이 신연방주 주민과 서독지역 주민의 융화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통일 후 수년 간 가해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이루어졌으니 피해자들도 이제 그만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평화를 위해 국가안전부 문서 공개를 종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가 하면 국가안전부 문서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문서 공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요컨대 국가안전부 문서는 기본적으로 독재 체제를 수호한 비밀정보 기관의 문서인 만큼 그 안에는 많은 왜곡된 해석과 편견이 담겨있고, 나아가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91] A. Barbe, "Schlußstrich oder Auseinandersetzung?", B. Faulenbach/M. Mekel/H. Weber (eds.), Die Partei hatte immer recht.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Essen, 1994), p. 127.

특히 사통당 독재 체제에 깊이 연루되었던 사람들, 예컨대 전직 국가안전부 요원이나 비공식 정보원, 사통당 간부를 비롯한 구 동독 사회지도층 등이 문서 공개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대부분 사통당의 후신인 민사당(PDS)[92] 계열에 속했던 이들은 통일 후 동서독지역이 융화되지 못하고 갈등이 심화된 원인을 전적으로 국가안전부 문서 공개 탓으로 돌렸다. 또한 국가안전부 요원이나 비공식 정보원들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문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공식 정보원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국가안전부에 협력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문서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문서 공개를 서독 '식민주의자'들이 동독의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동독지역에 서독식 체제를 이식한 것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사회적 관심을 국가안전부 문제로 돌려 통일 과정에서 드러난 서독식 체제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한 정치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통일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신연방주 주민들 사이에서 '오스탈기(Ostalgie)', 즉 동독에 대한 반발적 정체성이 확산되는 상황에 편승해 이러한 주장을 강화했다.

이들의 문서 공개 반대는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행위를 통한 압력행사로 확대되었다. 이는 특히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청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이어졌다. 일례로 이 부류에 속하는 한 정치단체는 1990년대 중반 베를린에 위치한 연방 관청 건물 앞에서 "이단 심판을 중지하라. 타도 가욱 관청"이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93] 이들은 전단지에서 문서를 토대로 국가안전부 협력자를 밝히는 가욱 관청의 행위는 1950년대 매카시즘의 광풍하에서 자의적으로 시행된 '이단 심판' 혹은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했고, 문서 공개로 인해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92 민사당은 2007년 좌파당(Die Linke)으로 통합되었다.

93 H. Geiger, "Die Verwaltung der Stasi-Akten: Aufgaben und Probleme", W. Krieger/J. Weber(eds.), Spionage für den Frieden(München, 1997), p. 172.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동독 말기 장관을 역임한 한 고위 정치인은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지를 통해 당시 문서 관리청의 총 책임자인 가욱 역시 국가안전부 비공식 정보원이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94] 이는 가욱을 스캔들의 제물로 삼아, 문서 관리청과 문서 공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정치적 전략이었다.

국가안전부 문서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비단 동독인들만은 아니었다. 일단의 서독 지식인들은 국가안전부 문서 공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동독 출신 공직자의 과거 전력 조회를 가리켜 '사상검증'이라고 비판했다.[95] 또한 만약 자신이 동독과 같은 억압적 체제 속에서 살았다면 자신도 어떻게 행동했을지 모른다는 말로 사통당의 억압적 지배체제에 대한 동독인의 순응적 태도, 혹은 비공식 정보원으로 슈타지에 협력한 행위를 간접적으로 정당화했다.[96]

그렇다면 문서 공개 반대 세력의 주장대로 국가안전부 문서는 애초에 공개되지 말아야 했고, 지금이라도 당장 문서 공개를 중단해야 할까? 통일 이전부터 공개를 반대한 사람들은 문서가 공개되면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서가 공개된 이래로 이렇다할 복수극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문서 열람 후 과거에 누가 자신을 염탐했고, 자신이 겪은 탄압은 국가안전부의 어떠한 공작에 의해 진행되었는지를 알게 된 동독인들은 당연히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충분히 예상 가능하듯이 많은 이들이 자신들을 감시 혹은 밀고하여 정치적 탄압에 처하게 만든 사람들과 인연을 끊었다. 그럼에도 숱한 문서 공개 반대자들이 우려한 물리적 폭력이나, 살인 행위는 발생하

94 Ibid.

95 Ibid., p. 170.

96 Ibid.

지 않았다.[97] 필자는 2005년 5월 26일 당시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 연방 관청의 수장이었던 비르틀러를 인터뷰했는데, 이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문서를 열람한 구 동독인 대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처신했습니다. 자신을 감시한 국가안전부 비공식 정보원이 누구인지 알게 된 동독인 가운데 일부는 가해자들을 만나 왜 그래야만 했는가를 물었습니다. 또 다른 동독인들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해 이들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폭력이나 충돌사태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해 볼 문제는 국가안전부 문서 열람을 중지시키는 것이 진정한 사회평화를 이룩하는 길인가하는 것이다. 문서 공개가 동서독지역 주민 간의 융합과 신연방주 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저해했다는 주장은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 단적인 예로 문서가 공개된 후 국가안전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 행위와 비공식 정보원 혐의자들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 폭로와 스캔들이 확산됨에 따라 40년 간의 동독사는 국가안전부 범죄의 역사로 축소되었다. 또한 민주화 혁명을 통해 사통당 독재를 종식시킨 자랑스러운 동독인 대신에 타인을 감시하고 밀고한 부역자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사실 비공식 정보원의 수가 엄청나지만, 이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국가안전부에 적극 협력한 것은 아니다. 이들 가운데는 자발적인 가담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비공식 정보원이 된 사람도 있었고, 타인에게 하등 피해를 주지 않는 형식적인 보고서만 제출했거나 아주 단기간 활동하다 중지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통일 직후 비공식 정보원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진상을 밝히기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98]

---

97 문서를 열람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Der BStU, Vierter Tätigkeitsbericht des BStU(Berlin, 1999), pp. 12-16 참조.

98 이러한 상황은 1993년 동독의 유명 여류 작가인 크리스타 볼프(Christa Wolf)의 슈타지 연루설이 제기된 후 언론지상을 통해 그녀에게 행해진 감정적 비난과 입장 표명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김수정/이덕형, 「크리스타 볼프 논쟁 II(1993)-슈타지 Stasi 논쟁과 크리스타 볼프」,『독일어 문학』, 34

이러한 상황에서 사통당의 억압 체제와 40년 간 동독인이 살아온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서독지역 주민들은 동독인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한 서독인의 태도는 신연방주 주민에게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원래는 문서 공개를 지지했던 동독 주민도 국가안전부 문서 공개를 점차 달갑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이 점에서 볼 때 1990년대 전반 국가안전부 문서 공개의 부작용이 동서독지역 주민의 융화를 어렵게 하고, 신연방주에서 반발적 정체성이 확산되는 데 일조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문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문서 열람을 일찍 종결시키는 것이 과연 사회 평화를 보장하는 길인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면, 수많은 비공식 정보원이 다른 동독인을 감시해 국가안전부에 밀고했다는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상황인데, 문서를 통해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국가안전부의 감시 대상이었던 동독인의 경우, 주변 사람들을 밀고자로 의심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음에는 충격과 상처를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평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비르틀러 역시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 "동독인들은 이미 동독 시절부터 비공식 정보원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국가안전부의 감시 대상에 속했던 동독인들은 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서 열람을 통해 누가 자신의 감시자였는가를 파악한 뒤 이들은 오히려 쓸데없는 의심을 버리게 되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비르틀러 개인의 의견만은 아니다. 2005년에 비르틀러 관청이 실시한 설문 조사 응답자들 역시 지인에 대한 쓸데없는 의심을 버리기 위해

권(2006), pp. 67-89 참조.

서라도 정확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99] 즉 문서 열람을 통해 가까운 사람이 국가안전부의 앞잡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은 고통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은 의심과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사회적 평화의 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화를 위해 문서 공개를 중단하는 것은 사통당 독재의 희생자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동독 정권 범죄의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자행된 탄압의 진상을 알 권리가 있고, 부당하게 겪은 고통에 대해서도 응당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중요한 참고 내지 증빙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안전부 문서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단적인 예로 문서가 폐쇄되면 과거 정치 재판에 의해 부당하게 범죄자가 된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해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부족으로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전과자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가해자들은 보호하고 정작 희생자들에게는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또한 문서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과거 국가안전부 문서의 주요 작성자인 전직 국가안전부 요원들이 유일한 정보 출처가 되어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국가안전부 요원 200명이 정보를 넘기고 48만 마르크를 받았다는 서독 정보기관의 주장, 혹은 국가안전부 대외정보국 요원들이 통일 전 독일 연방 정보국(BND)에 비밀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100만 마르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후 이를 미국 CIA에 매매했다는 주장 등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100] 또한 이들이 정보를 독점할 경우 언론과 정치권에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도 배재할 수 없다. 나아가

---

99 Die BStU, Siebenter Tätigkeitsbericht des BStU(Berlin, 2005), pp. 12-16 참조.

100 J. Gieseke, Das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1950-1990). Im Dienste der Partei(Berlin, 1998), p. 496; "1백만 마르크 거래설 입 다문 미국", 『주간동아』, 제232호, 하도헌, 통일 과정에서의 슈타지(국가보위부) 해체·청산에 관한 연구, p. 54에서 재인용.

이러한 정보는 정치권에서 경쟁자 혹은 경쟁당을 누르기 위해 악용되어 정치 풍토를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통일 전 동독에서 실시된 최초의 자유총선에서 입후보자들을 슈타지 협력자였다고 고발하는 투서가 난무했었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루마니아의 사례도 이러한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과 달리 루마니아 의회는 사회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루마니아 비밀 정보기관의 문서를 40년 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루마니아 정치 세력이 서로 경쟁자에게 비밀 정보기관의 밀정이었다는 혐의를 제기해 루마니아 정치계는 한동안 정치 스캔들로 얼룩졌다.[101]

더욱이 사통당 독재의 희생자들을 마치 사회적 평화를 저해하는 존재로 부담스러워하면서 이들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적 시민사회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온갖 탄압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동독 정권에 순응하지 않은 이들에게 사회적 평화의 이름으로 침묵을 요구하고 이들의 시민적 용기를 기리지 않는다면 또 다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때 민주적 가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출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내가 동독에서 태어났다면 나 역시 어땠을지 모른다는 말로 종종 가해자들에게 관대함을 보이면서 희생자들에게 침묵과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과거 동독 시절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다.

물론 가해자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도 당연히 이루어져 한다. 이들의 통합 역시 과거청산의 한 과제이다. 그러나 일단은 과거에 자행된 불법 행위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르틀러 역시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진상 규명 없이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사회의 문화적 관습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의 경우 사적인 영역에서의 갈등도 양자가 터놓고 얘기를 나눔으로써 해결이 모색됩니다. 하물며 국가안전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사회적 화해가 진상규명 없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런 의미에서 문서 공개

[101] Barbe, "Schlußstrich oder Auseinandersetzung?," pp. 132-133.

를 통한 진상 규명은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화해를 위한 첫걸음이 되는 셈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최소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동독 민권운동가 출신으로 현재 브란덴부르크주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청의 총 책임자인 울리케 포페(Ulrike Poppe)와 통일 직전 동독의 정치적 대변혁 과정에서 창당된 동독 사민당 초대 당 대표였던 이브라힘 뵈메(Ibrahim Böhme)의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뵈메는 1968년 국가안전부에 포섭되어 비공식 정보원이 되었고, 1985년부터 동베를린의 체제 비판 세력을 감시하는 활동을 했다. 통일 후 이 사실이 폭로되자 뵈메와 친분이 두터웠던 포페는 믿었던 동료가 자신을 감시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포페는 1999년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뵈메가 면담을 청하자 죽음을 앞둔 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실제로는 화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뵈메가 끝까지 자신은 비공식 정보원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음모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102] 비공식 정보원이었던 동독인 가운데는 이처럼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고백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누군가를 감시해서 국가안전부에 정보를 제공했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사실을 덮고 피해자들에게만 용서와 화해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지 의문이 든다.

국가안전부 문서의 신빙성 문제는 어떠한가?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문서가 공개된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가안전부 문서에 기록된 팩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부분 조작되지 않았고, 놀라울 정도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비밀 기관의 생명은 정보의 정확성이다. 때문에 국가안전부 역시

[102] Ulrike Poppe-Brandenburgs erste Stasibeauftragte. Ein Portrait, 2010.2.3., http://www.rbb-online.de/klartext/ueber_den_tag_hinaus/diktaturen/ulrike_poppe___brandenburgs.html.

자체 요원들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정보는 단일 출처가 아니라 2중, 3중의 경로로 수집되었고, 국가안전부 자체가 다양한 정보들을 대조 및 비교하면서 자체적으로 검열했기 때문에 국가안전부 문서 내용의 신빙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문서를 열람한 많은 시민들 역시 문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증언했다.[103] 좀 더 구체적인 예로 2008년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 연방 관청의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슈타지 문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2%가 '대체로 그렇다', 40%가 '부분적으로 그렇다', 13.9%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104] 2005년에 같은 내용으로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대체로 그렇다'가 53.1%, '부분적으로 그렇다'가 34.4%, '아니다'가 12.4%로 큰 차이가 없다.[105]

물론 국가안전부 문서를 다룰 때는 엄격하게 사료비판적 검열을 시행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 문서들은 사통당 독재의 정당성을 전제하고 철저하게 이데올로기적인 관점과 용어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동독사 연구자인 필자는 그동안 수차례 국가안전부 문서를 열람하면서 이 문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일례로 1980년대에 고향의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우려해 소박하게 환경운동을 벌인 소규모 시민운동 단체도 국가안전부 문서에는 동독 체제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반체제 세력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국가안전부의 심문 기록은 더욱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심리적 압박과 폭력 행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서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안전부 문서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인할 필요는 없다. 동독의 역사적 발전, 사통당 지배 체제의 기본 구조와 국가안전부

103 Der BStU, Dritter Tätigkeitsbericht des BStU(Berlin, 1997), p. 20.

104 (문서번호 18).

105 Ibid.

의 기능을 충분히 인지한 후 문서를 분석하고, 나아가 문서의 내용을 감시 대상자, 비공식 정보원, 문서 작성자 모두의 진술을 상호 대조하면서 검토한다면 과거청산은 물론 동독사 연구를 위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안전부 문서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마녀사냥을 당했고, 해고되었다는 점을 내세운 문서 공개 반대 주장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 통일 후 공직자를 비롯한 주요 사회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부 협력 여부를 조사했고, 일부는 그 과정에서 해고되었다. 그러나 해고의 기준은 개개인별로 검증을 통해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불법 행위였는가에 맞추어졌기 때문에 대량 해고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106] 더욱이 통일 협약이나 국가안전부 문서 처리법은 슈타지 협력자에 대해 구체적 처벌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중앙 정부가 주 정부에게 이 문제를 위임했기 때문에 주에 따라 편차도 컸고, 흔히 생각하는 일괄적 대규모 검증도 없었다. 일례로 가욱 관청에 의해 조사된 교사들 가운데 4.7%가 국가안전부에 연루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실제로 해고된 수는 0.99%에 불과했다.[107] 또 다른 예로 심사 대상 공직자의 경우 6%-7% 정도만 슈타지와 관련해 임용 상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30%-50%가 해고되거나 은퇴했다.[108] 공직자들이 해고된 사유도 사실 상 슈타지 활동 자체를 문제삼은 경우보다 지원 당시 슈타지 전력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숨

106 공직자의 경우 사통당 정권과 밀착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결격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한 1995년의 헌법 재판소 판결도 이러한 인력 검증이 무차별적 해고로 직결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107 Geiger, "Die Verwaltung der Stasi-Akten", p. 171.

108 R. Süssmuth, "Zehn Jahre deutsche Einheit-Die innere Befindlichkeit der Gesellschaft, Eine kritische Bilanz,"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vol. 40(2000), p. 172, 헬게 하이데마이어, 「통일독일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전환기 정의의 영향-슈타지 문서관리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정보 센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북한과거사연구회가 주최한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기념 세미나(2014. 9. 16), 『통일독일의 사법적 청산과 사회통합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발표집』, p. 90에서 재인용.

겼기 때문이었다.[109] 사기업의 경우에도 슈타지 협력자 검증을 실시했지만 과거의 행적보다 전문 능력을 중시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해고율을 보였다.[110]

또한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 주요 분야의 엘리트들에 대한 검증은 사상검증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슈타지 협력자로 의심받던 사람들로 하여금 무죄를 깨끗이 입증하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공공 기관, 공직자, 정치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시민들은 공공 기관 내에 더 이상 슈타지 연루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었다.[111]

이상을 통해 볼 때 문서 공개 반대자들의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숙고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청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국가안전부 문서 공개를 전면 중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개 아니면 폐쇄가 아니라 공개를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서에 대한 비판적 검증을 철저히 시행하고, 국가안전부의 불법 행위와 비공식 정보원 문제를 폭로성 스캔들에 매몰되지 않고 동독사 및 사통당 지배 체제의 큰 틀에서 차분히 조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여전히 자신에 관한 문서를 열람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신청자가 많다는 사실 만으로도 문서 공개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문서가 공개된 지 20년이 넘은 만큼 이제는 열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2011년까지 연평균 약 96,300명이 문서 열람을 신청했고,[112] 2012년에도 신청자 수는 88,231명에 달한다.[113] 이처럼 뒤늦은 열람권 행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결코 유쾌하

109 Ibid.

110 장원석, 「통일독일의 과거사청산 일고」, p. 99.

111 헬게 하이데마이어, 「통일독일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전환기 정의의 영향」, p. 90.

112 이는 Der BStU, 20 Jahre Akteneinsicht in Zahlen(Berlin, 2011)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평균을 낸 것이다. http:// www.bstu.bund.de.

113 Der BStU, Elfter Tätigkeitsbericht, p. 16.

지 않을 문서 열람을 망설이다 문서 공개 후 한참 시간이 흘러서야 마주할 용기를 갖게 된 구 동독인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은퇴 후 직장 생활에 쫓기지 않고 여유있게 자신에 관한 문서를 보겠다는 생각에서 열람 신청을 미룬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가 하면 문서 열람 신청 절차나 보상·복권 청구 절차를 몰라 제때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114] 이처럼 열람 신청이 계속되는 것은 아직도 동독사의 어두운 일면에 대한 청산을 원하는 욕구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말해주므로 문서 공개는 한동안 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뒤늦게 문서를 열람한 구 동독인들도 대부분 문서 열람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인식했다. 2008년과 2005년에 비르틀러 관청이 문서 열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115] 이 가운데 각각 89.4%(2008), 84.9%(2005)가 다른 사람에게도 문서 열람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했고, 추천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0%(2008), 3.4%(2005)에 불과했다. 더불어 응답자의 91.1%(2008), 88.2%(2005)가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청의 업무가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제3절 동독만의 문제에서 전 독일적 문제로

통일 후 국가안전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활발한 과거청산 작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서독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이를 동독지역만의 문제로 보고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국가안전부는 동독인만을 상대로 감시와 정치공작을 시행하지 않았다. 국가안전부는 서독에 스파이를 침투시켰고, 서독인을 포섭해 공작원으로 이용했으며, 서독 주요 인사들의 전화를 도청하기도 했다. 요컨대 서독도 국가안전부의 활동 범위에 속했고, 이로 인해 서독

114 Ibid., p. 47.

115 (문서번호 18).

역시 국가안전부의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 봄에 발생한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의 정치 스캔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독일 사회는 콜 총리가 정치자금을 은밀하게 모금하고 관리했다는 스캔들로 떠들썩했고, 연방 의회의 진상 조사위원회와 검찰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진상 규명이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민사당(PDS)은 슈타지 문서의 공개를 요구했다. 과거 국가안전부가 콜 수상의 집무실과 개인 전화를 도청했기 때문에 약 7천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가 존재하니 이것을 수사 자료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이 사건을 기화로 슈타지 문서 공개 논쟁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의회 조사위원회는 사건 규명을 위한 참고 자료로 콜에 관한 도청 녹취록을 이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콜은 국가안전부 문서 처리법 5조, 즉 문서 속의 정보로 인해 당사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비르틀러 관청에 자신에 대한 문서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비르틀러 관청은 일반 개인이 아니라 당대에 주요한 영향력을 가진 공인의 경우 반드시 보호해야 할 정보를 누출하지 않는 한 그에 관한 문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문서 처리법 32조를 근거로 이에 맞섰다. 사실 가욱과 비르틀러 관청은 이전까지 이 규정을 토대로 구 동독 사회, 정치 분야의 유명 인사들에 대한 문서를 언론이나 학계에 공개해 왔다. 결국 콜은 2011년 11월 베를린 행정 법원에 자신에 관한 기록이 학계 및 언론에 개방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콜의 이러한 행동은 비르틀러 관청과의 법적 소송 뿐 아니라 열띤 사회적 논쟁을 야기했다. 콜과 그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콜 역시 국가안전부 감시의 희생자임을 강조하며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비르틀러 관청과 독일 학계는 독일 수상을 세 차례나 역임한 콜이 결코 일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문서를 사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 정치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지도적 인물의 문서를 공개

하지 않으면 역사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욱이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어차피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문서가 공개되어도 콜의 인격권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년 간의 공방전 끝에 연방 행정재판소는 2004년 6월 23일 개인의 인격권을 우선시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고, 그에 따라 콜 관련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안전부 문서의 파급력이 결코 동독에 국한될 수 없음을 보여준 또 다른 예는 로젠홀츠 자료(Rosenholz-Dateien)이다. 미국 CIA는 민주화 혁명으로 인한 동독의 정치적 대변혁의 혼란을 틈타 슈타지에 협력한 해외 첩보원 5만 명의 신원이 담긴 문서를 비밀리에 입수했다.[116] 이를 되찾기 위해 독일 정부는 '로젠홀츠'로 명명된 작전 하에 미국과 오랜 협상을 벌였다. 결국 미국은 2003년 문서를 복사한 CD 318개를 독일에 넘겨주었다.[117] 이는 서독에 거주하면서 국가안전부 스파이로 활동했던 사람들에 관한 자료로, 약 3천 명의 명단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약 50%는 서방 국가에서 활동한 국가안전부 정찰 총국(Hauptverwaltung Aufklärung)의 비공식 정보원으로 밝혀졌고, 360명 이상이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63명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반면 구 동독 주민은 1995년 연방 헌법 재판소 판결에 따라 대서방 첩보 활동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는데 해당자는 23명에 불과했다.[118] 2003년에 공개된 로젠홀츠 자료는 국가안전부가 서방에서 어떠한 목적을 추구했고, 어떠한 인물과 방법을 동원했으며, 그 성공 여부는 어떠했는지 등 지금까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국가안전부 문서를 통해 과거청산이 동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

116 CIA가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하였는지는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117 (문서번호 10).

118 Ibid. 이렇게 대서독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던 것은 간첩 행위가 동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독에도 해당되는데, 동독의 간첩 활동만 처벌하는 것은 기본법 제3조 1항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연방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기인한다. 김하중, 체제불법 청산방안에 관한 헌법적 고찰, pp. 182-183 참조.

이 드러나자 튜링겐주 총리 디터 알트하우스(Dieter Althaus)는 서독의 모든 정치인과 관료를 대상으로 슈타지 협력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지금까지 이 문제는 동독인에 국한해 조사되고 공개되었는데, 사회정의 차원에서 볼 때 서독 정치인과 관료도 검증하여 양 지역에서 동일하게 과거청산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신연방주 정치인들이 대부분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는 의견을 표명한 반면 구연방주에서는 니더작센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관망에서 거부에 이르는 입장을 취했다.[119] 서독은 통일 이후 10년 넘게 슈타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웠지만, 로젠홀츠 문서로 인해 서독 역시 동독의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과 더불어 국가안전부 문제가 갖는 전 독일적 차원이 드러나게 되었다.

제4절 브란덴부르크주의 뒤늦은 슈타지 청산

국가안전부 문서를 바탕으로 독일은 20년 넘게 다양한 방면으로 과거청산 작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에 독일에서는 과거 국가안전부가 자행한 불법 범죄에 적극 가담하거나 협력한 동독인을 공직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주요 분야로부터 축출하는 작업이 시행되었다. 비록 방법상으로나 강도 면에서 차이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신연방주들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브란덴부르크주만큼은 예외였다. 브란덴부르크주는 2009년까지 국가안전부 문서를 처리하는 담당 관청도 설치하지 않았고, 의회 의원과 공직자에 대한 인력 검증도 거의 시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과거청산에 대한 관심도, 이를 둘러싼 논의도 별로 없었다. 자연히 과거 사통당 지배체제 유지에 적극 가담했거나 국가안전부 비공식 정보원으로 활동한 사람들도 통일 후

119 "Stasi-Überprüfung stößt bei West-Politikern auf Ablehnung", Handelsblatt, 2003. 9. 9.

별 문제없이 사회 주요 분야에서 새롭게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 2009년 가을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사민당-좌파당 연합 정권이 출범했을 때 일련의 좌파당 소속 의원들이 과거 국가안전부의 비공식 정보원이었다는 사실이 연이어 폭로되었다. 이는 브란덴부르크주는 왜 정기적으로 주의회 의원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왜 다른 신연방주와 달리 사통당 정권의 불법 행위를 밝히고 피해자들의 보상과 복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청을 두지 않았는지 등 뒤늦게나마 과거청산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브란덴부르크의 예외적 행보의 원인은 무엇일까? 브란덴부르크주에서 과거청산의 노력이 매우 미진했던 데는 무엇보다 브란덴부르크주 총리였던 만프레트 슈톨페(Manfred Stolpe)의 슈타지 논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독 시절 개신교회 행정청장 출신인 슈톨페는 민주화 혁명 과정에서 결성된 사민당(SPD)에 가입했고, 통일 후 브란덴부르크주 초대 총리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1992년 1월 18일 슈피겔지는 슈톨페가 '서기'라는 가명 하에 활동한 국가안전부 비공식 정보원이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슈톨페가 브란덴부르크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사실 슈톨페의 슈타지 협력 활동을 명백히 밝혀줄 증거자료인 비공식 정보원 문서철은 1990년 봄 국가안전부 정찰 총국이 문서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파기되었다.[120] 그러나 다른 부서에 보존되어 있던 문서들을 종합해 1992년 3월 31일에 통보된 가욱 관청의 조사 결과를 통해 그가 '서기'라는 가명을 지닌 비공식 정보원이었고,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동독 개신 교회 내부는 물론 체제 비판적 성향의 목사, 개신 교회의 울타리를 보호막으로 삼아 활동한 1980년대 동독 체제 비판 세력에 대한 정보를 국가안전부에 제공해 이들에 대한 탄압을 용이하게 했고, 심지어 그 공을 인정받

120 (문서번호 62).

아 국가안전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대다수 브란덴부르크 주민들은 슈톨페의 편에 섰다. 문서 공개로 동독 출신의 유명 인사들이 국가안전부 비공식 정보원이었다는 스캔들이 연이어 터지고, 서독지역의 언론이 이러한 사실들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보도하자 동독지역 주민들은 서독인들이 자신들을 비방하는 것처럼 느꼈다. 이러한 상황이 슈톨페에게는 유리한 방어막으로 작용했다. 브란덴부르크 주민들은 슈톨페의 과거 전력에 대한 비판을 서독이 주도한다고 여겼고, 슈톨페에 대한 비판과 사퇴 요구를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동일시하고 슈톨페를 옹호했다. 무엇보다 1992년 브란덴부르크 주민의 슈톨페에 대한 지지도가 85%에 육박했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121]

이처럼 브란덴부르크주에서 동독의 과거청산은 처음부터 슈톨페 문제와 결부되며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근본적으로 사통당 독재를 청산하는 문제가 동서독 간 대립의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슈톨페 논쟁이 지속되는 동안 브란덴부르크 주민들은 마치 서독인들이 자신들을 심판하고 기죽이기 위해 국가안전부 문서를 공개한 것처럼 비난을 쏟아냈고, 문서 공개가 원래는 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서독에 맞서 동독 시민이 관철시킨 것이라는 사실을 지나쳤다.

브란덴부르크 주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슈톨페는 자신이 국가안전부와 접촉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세 개의 기둥이론'을 내세워 이를 정당화했다. 요컨대 자신은 개신교회 대표로서 국가기관과의 협력이 불가피했는데, 사통당, 동독 정부, 국가안전부는 어떤 곳과 접촉해도 그 결과가 다른 두 지도부에 전달되는 동일한 성격의 권력기관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슈톨페는 슈타지와의 접촉이 정치적으로 합법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122] 또

121 부록-브란덴부르크주의 특별노선(원문 CD 마지막 부분 참조)

122 (문서번호 62).

한 자신이 국가안전부와 협력한 것은 개인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안전부가 자신을 비공식 정보원 가명 "서기"로 등록한 사실도 1989년에 처음 알았고, 자신은 한 번도 비공식 정보원에게 요구된 서약서[123]를 작성한 적도,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적도 없다고 주장했다.[124]

슈톨페를 둘러싼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브란덴부르크주 의회는 1992년 민사당 소속의 로타 비스키(Lothar Bisky)를 대표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슈톨페 조사위원회"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진상 조사 활동을 벌였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부를 비롯한 전 동독 국가 기관의 대표자들과 1천 여 건이 넘는 대화를 나누었고, 슈톨페의 30년 간의 활동, 그와 관련된 1만 건의 문건을 조사하고, 50명의 증인도 심문했다.[125] 그 결과 조사위원회는 가욱 관청의 조사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채 슈톨페를 비난할 만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요컨대 슈톨페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89년까지 본인의 의지에 따라 국가안전부와 접촉해 정보를 교환했지만, 이는 교회 업무상의 협상 때문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슈톨페가 국가안전부와 공모한 대가로 공로훈장을 받았거나 반체제 세력에게 위해를 가한 정황 역시 명확히 증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126]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사위원회는 국가안전부와 접촉했다는 형식적

123 국가안전부는 흔히 비공식 정보원으로 포섭한 동독인에게 자필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비공식 정보원이 되기로 동의한 자들은 먼저 자신이 국가안전부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자신이 자발적으로 국가안전부와 협력하기로 했으며, 비밀을 발설할 경우 합의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서약서를 작성한 후 활동 시 사용하게 될 가명을 선택하고 서명했다. Die BStU, Stasi, p. 72 참조. 이렇게 보관된 서약서는 통일 후 누가 국가안전부의 비공식 정보원인가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러나 비공식 정보원 후보들 중 목사와 의사와 같은 민감한 직업의 종사자들은 서약서를 쓰는 대신에 약속 혹은 교섭의 성립을 의미하는 악수로 대신하기도 했다.

124 부록-브란덴부르크주의 특별노선(원문 CD 마지막 부분 참조)

125 Ibid.

126 (문서번호 61).

인 측면만 보고 슈톨페가 국가안전부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127] 결국 브란덴부르크주 정당들은 슈톨페에 관한 문서가 파기되어 정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약점을 근거로 슈톨페의 과거 전력을 철저히 파헤치지 않고 덮고 넘어갔다. 이로써 자유로워진 슈톨페는 2002년까지 브란덴부르크주 총리를 맡았고, 그의 재직 기간 동안 브란덴부르크주에서 과거청산의 시계는 멈추어 섰다.

브란덴부르크주 정당들의 이러한 타협적 태도는 원칙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기 보다는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 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는 비단 독일에서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과거청산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장애물이다. 슈톨페 논쟁이 야기되었을 때 여당인 사민당은 당 소속 의원이자 총리인 슈톨페를 감싸기 바빴다. 한편 야당인 기민당과 자민당은 무엇보다 구 정치 유산에 발목이 잡혔다. 우선 브란덴부르크주 기민당은 동독 시절 사통당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위성정당인 동독 기민당을 전신으로 했다. 이에 따라 소속 의원들 가운데 국가안전부 협력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통일 후 기민당은 과거청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지 못했고, 1989년 이전에 국가안전부 비공식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의 과거를 밝히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1992년 동독의 마지막 총리를 지냈고, 통일 후 기민당 부대표에 오른 드 메지에르가 '체르니'라는 가명을 쓴 비공식 정보원으로 밝혀졌을 때 그를 감싼 기민당의 태도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민당(FDP) 역시 사통당의 또 다른 위성정당인 민자당(NDPD)과 자민당(LDPD)을 전신으로 했기 때문에 기민당과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두 위성정당이 과거 동독 시절 사통당 독재 체제 유지에 기여한 책임에 대해 일체 비판적으로 조명하지 않았고, 소속 의원의 슈타지 연루 혐의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눈감아 주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슈톨페의

127 (문서번호 63).

과거 전력을 철저히 파헤치게 되면 기민당과 자민당 역시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브란덴부르크주 정당들이 이른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슈톨페 문제를 비롯해 과거청산에 소극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정치가와 주요 공직자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례로 브란덴부르크 경찰의 경우 국가안전부에 협력한 혐의가 있는 경찰 가운데 약 20%만이 해고되었다. 그에 비해 여타 신연방주 지역의 평균 해고율은 46%에 달했다.[128] 1990년 2명의 교회 대리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주 의회 의원 100명에 대한 검증을 시행해 슈톨페를 포함한 14명이 국가안전부에 협력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슈톨페의 사례에서처럼 국가안전부 협력자였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근거로 대다수를 구제했다.[129] 실제로 비공식 정보원도 협력 동기나 책임의 경중에 있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에는 충분한 정황이 포착됨에도 철저한 조사 없이 사실 관계를 은폐하고 침묵하기 위해 이용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불충분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브란덴부르크에서는 이후 2009년까지 더 이상의 인력 검증이 없었다. 이에 따라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의원들은 동독 위성정당 소속이었거나 국가안전부 비공식 정보원이었던 떳떳치 못한 과거 전력을 숨겼고, 과거 사통당의 정권 유지에 적극 가담했던 자들도 별 문제없이 통일 후 다시 정치 활동을 벌이며,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일례로 동맹 90/녹색당 의원 페터 슈엘러(Peter Schueller)는 과거 사통당 베를린 지구당 간부 출신이었다.

다른 신연방주에서는 인력 검증이 거의 끝난 상황인 2009년에 일련의 브란

128 부록-브란덴부르크주의 특별노선(원문 CD 마지막 부분 참조)

129 (문서번호 84).

덴부르크주 의회 의원들이 비공식 정보원으로 밝혀진 것은 이러한 과거에 대한 침묵 및 은폐 풍조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9년 가을에 발생한 주 의회 의원들의 슈타지 연루 스캔들이 브란덴부르크주에서 과거청산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사통당 독재의 유산을 청산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2009년 12월 17일 주 의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임명된 울리케 포페를 수장으로 하는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청이 설립되어 뒤늦게나마 문서를 토대로 한 과거청산을 시행하고 있다.[130] 또한 2010년 의원법 개정을 통해 과거에 등한시되었던 주 의회 의원의 국가안전부 협력 혐의에 대한 확대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131] 나아가 주 의회는 2010년 3월 사통당 독재의 과거를 재조명하고 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회 조사위원회를 설립했다. 7명의 의회 의원과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의 임무는 사통당 독재가 붕괴한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브란덴부르크주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민주적 법치국가로 이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실수 혹은 과오를 범했고, 이는 얼마나 극복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132]

2013년 12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4년에 걸친 활동을 매듭지은 조사위원회는, 과거 슈톨페의 슈타지 스캔들을 덮고 넘어간 것을 비판했고, 공직분야에서 슈타지 협력자들의 인적 쇄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 및 사통당 독재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조사위원회는 정권 범죄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제도의 개선, 슈타지 협력자들에 대한 검증 보완, 사통당 독재에 대한 학교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133]

130 (문서번호 49-51).

131 (문서번호 55-59).

132 (문서번호 76).

133 최종보고서는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Abschlussbericht der Enquete-Kommission 5/2 „Kommunal- und Landesverwaltung - bürgernah, effektiv und zukunftsfest - Brandenburg 2020.“ http://www.landtag.brandenburg.de/media_fast/5701/

이러한 일련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브란덴부르크주는 그동안 부재했던 과거청산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브란덴부르크주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청 총 책임자인 포페는 이러한 청산 작업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언급했다. 포페는 브란덴부르크주에 오랫동안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청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만회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과거 국가안전부의 비공식 정보원이었던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국가안전부에 연루되었다 해도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과거 행적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바탕으로 책임을 묻고, 지난 20년 간 얼마나 자신의 과거를 비판적으로 성찰했는가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최소한 자신이 왜,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를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했다.[134]

2009년 브란덴부르크를 떠들썩하게 했던 슈타지 스캔들은 브란덴부르크주에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사례를 통해 국가안전부의 불법 행위에 동참한 자들이 통일 후 공직에 계속 재직해 왔음이 드러남에 따라 독일 연방 의회는 사통당 독재청산 문제를 다시 심도있게 다루었다. 또한 2011년 12월 31일에 종결되도록 규정되었던 내각 각료, 의회 의원, 공직 종사자의 슈타지 협력 여부에 대한 조사 시효를 국가안전부 문서 처리법 8차 개정을 통해 2019년 12월까지 연장시켰다.[135] 나아가 타 연방주에서도 공직 임용자에 대한 검증을 비롯해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더불어 현 국가안전부 자료 관리청 총 책임자 얀은 2011년에 슈톨페의 국가안전부 연루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Drs_5_8000.pdf.

134 Ulrike Poppe-Brandenburgs erste Stasibeauftragte.

135 원래는 2006년 12월까지로 시효가 정해져 있었지만, 국가안전부 문서 처리법 7차 개정(2006)을 통해 2011년까지 기간을 연장했다가 2011년 다시 법을 개정해 2019년까지로 재연장했다.

제3장

독일 연방 의회 조사위원회의 과거청산 활동

법치주의 원칙에 의한 사법 처리로 인해 사통당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들의 분노와 실망이 컸고, 정의의 부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들은, 과거 자신들은 사통당 정권의 반법치주의적 탄압으로 인해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데, 정작 가해자들은 법치주의의 보호막을 이용해 처벌을 면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을 포함한 사회 일각에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136]

이와 관련해 동독 민권운동가 출신으로 동맹 90/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 소속의 정치인 볼프강 울만(Wolfgang Ullmann)은 자연법주의를 내세워 정권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심판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137] 그는 이 기구에 도덕적 권위와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정권 범죄의 책임자를 색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원장은 당시 대통령인 리하르트 바이체커(Richard von Weizecker)에게 맡길 것을 제안했다. 바이체커는 울만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국민심판소는 어디까지나 진상 규

136 고상두, 「통일독일의 과거청산과 한반도에의 함의」, p. 34.

137 실정법주의가 법에 처벌이 규정된 행위만 처벌 가능하다고 본 반면 자연법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 등을 침해했을 경우 법률이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명의 권한만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다.[138]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사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심판소 대신 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91년 말 사민당 의원 마르쿠스 메켈(Markus Meckel)과 마틴 굿차이트(Martin Gutzeit)는 사통당 독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의회 조사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동맹 90/녹색당은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과거청산을 촉진하려 했기 때문에 이 제안에 다소 회의적이었고, 민사당은 이러한 기구가 생겨 활동하게 되면 동독을 통째로 범죄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희생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정의 실현도 필요하며, 과거청산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좀 더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 간에 합의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독일 연방 의회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12대, 13대 의회 두 차례에 걸쳐 사통당 독재 진상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조사위원회는 사법 처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말하고,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사통당 독재의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동독 민권운동가 출신이자 의회 조사위원회의 총 책임자인 기민당 의원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은, 위원회의 목표는 또 다시 독재 정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화해를 위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139] 이는 곧 사통당 독재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역사적, 비판적 조명을 뜻하는 것으로, 슈타지 문제로 축소된 과거청산 논의를 동독 체제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1992년 3월 12일에 발족한 "사통당 독재의 역사 및 결과 청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Enquete-Kommission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는 각 당을 대표해 16명의 하원

138 고상두, 「통일독일의 과거청산과 한반도에의 함의」, p. 35.

139 Ibid., p. 37; (문서번호 40).

의원과 동일한 수의 대리인으로 구성되었다. 더불어 사통당 독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보다 객관적으로 시행하고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각 정당이 추천한 전문가 11명을 더해 총 43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외부 전문가는 대부분 서독 출신이었고, 비교적 다수의 동독 반체제 출신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구성된 1차 의회 조사위원회는 사통당 독재의 역사와 그 결과를 밝힌다는 큰 주제 하에서 일련의 세부 주제를 설정했다. 사통당 독재의 권력 구조와 의사 결정 과정, 국가와 사회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기능과 의미, 동독의 법률, 사법 기관, 경찰, 동서독 관계 및 국제 정세, 사통당 독재 체제와 교회, 동독 시민의 일탈과 저항 행위, 1989년 동독의 평화 혁명, 그리고 국가안전부와 사통당 정권의 희생자 등이었다.[140] 이러한 과제 설정은 조사위원회의 체계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사통당 독재를 비적법화하고, "반전체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며,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조치가 마련되도록 지원하고, 서독지역 주민이 오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동독의 실상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내적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겠다는 실질적 목표로 귀결되었다.[141]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세부 과제별로 분과 위원회가 구성되어 시행되었다. 활동기간 동안 총 44차례의 공청회, 전체 회의 37회, 기타 수많은 소위원회별 회의가 열렸다. 그 과정에서 총 327명의 학자와 증인이 과거 역사에 대해 발언했고, 148명의 전문가로부터 소견서를 받았다.[142] 필요할 경우 동일 주제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에게 의견서를 요청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는 전, 현직 총리와 장관, 구 정치국 위원과 같은 거물급 정치인은 물론 국가안전부 불법 행위의 희생자와 가

140 (문서번호 40).

141 Ibid.

142 고상두, 「통일독일의 과거청산과 한반도에의 함의」, p. 37.

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한자리에서 과거사에 대해 이야기했다.[143] 공청회 초기에는 가해자 측이 사통당 정권의 불법 행위가 소련의 사주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러한 행위가 동독 시절에는 합법적 행위였다고 주장해 피해자 측의 분노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간이 감에 따라 사통당 정권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했다. 때로는 슈타지 간부를 비롯한 사통당 정권의 요인들이 공청회에 출석해 과거청산에 중요한 내용을 진술하기도 했다.[144]

1차 조사위원회는 1994년 27개월 간의 활동을 마쳤고, 총 306쪽에 달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나아가 1만 5천장에 달하는 위원회 회의 의사록, 공청회 기록, 전문가의 소견서 등을 모아 활동 결과물로 제출했다.[145]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1차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통당 독재에 대한 역사적 조명에 치우쳤다. 그에 비해 또 다른 목표였던 사통당 정권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같은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진했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 보상전문가, 사회심리학자 혹은 심리전문가가 필요했지만 대부분의 구성원은 역사학자였고, 참여 의원들도 인문학 전공자가 다수였다. 또한 기민당-자민당 연정이 실질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재정적 부담이 클 것을 우려하여 돈이 적게 드는 역사적 조명을 추진한 것도 한 요인이었다.[146] 이에 따라 역사적 조명에 치우친 1차 위원회는 엘리트적 성격을 띤 학문적 토론에 치중했고, 의회가 정책으로 입안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이렇다 할 제안이나 권고도 하지 못했다.[147] 특히

[143] Ibid., pp. 37-38.

[144] 하도헌,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슈타지(국가보위부) 해체·청산에 관한 연구, p. 66.

[145] 이는 18 권의 총서로 출판되었다. Deutscher Bundestag(ed.), Materialien der Enquete-Kommission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Baden-Baden, 1995).

[146] A. H. Beattie, "Die Weichen stellen für die Zukunft der DDR-Erinnerung, Rückblick auf die Enquete-Kommission des Bundestages zur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ZeitRäume, vol. 2011, p. 25.

[147] Ibid., pp. 26-27.

40년 간 침묵을 강요당한 일반 동독인의 시각을 반영하는 아래로부터의 관점의 부재는 조사위원회의 큰 문제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역사적 규명에 치우치다보니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정당들의 대립이 불거졌다. 예컨대 독일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기민당은 콘라트 아데나우어(Konrad Adenauer)와 콜, 사민당은 빌리 브란트를 내세워 자신의 정당이 수행한 정책이 독일통일에 더 기여했음을 부각시키려는 논쟁을 벌였다.[148]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정당들은 자신들의 민주적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서로 타 정당이 사통당 독재와 연루되어 있음을 드러내며 논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사민당은 동독지역의 사민당 지구당이 독일 공산당과 통합해 사통당이 되었다는 것, 자민당과 기민당은 사통당의 위성정당을 전신으로 했다는 점, 민사당은 사통당의 후신이라는 약점을 서로 교묘하게 이용했다.[149]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해 1995년 결성되어 1998년까지 활동한 제2차 의회 조사위원회는 독재의 유산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즉 현재적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사통당 독재의 잔재 극복을 위한 조사위원회(Enquete-Kommission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ß der deutschen Einheit)"라는 명칭을 사용한 후속 조사위원회는 의회 의원 12명과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고, 총 24회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2차 조사위원회는 사법청산, 사통당 범죄의 희생자 문제, 미래를 위해 사통당 독재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즉 사통당 독재의 역사 자체가 아니라 통일 후 전환 과정에서 사통당 독재가 남긴 유산 청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좀 더 현실적인 관점을 지향했다.[150] 2차 조사위원회는 1차 조사위원회 때

148 (문서번호 40).

149 Beattie, "Die Weichen stellen für die Zukunft der DDR-Erinnerung", p. 26.

150 2차 조사위원회가 주로 다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평가, 조사위원회의 회의록, 증언 등을 모아 16권에 달하는 총서로 발간했다.[151]

이러한 의회 조사위원회의 장기적 활동 및 방대한 활동 결과물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공청회에 증인과 전문가로 참여한 사람들은 1차 위원회 때 327명에 이어 2차 위원회 때는 292명이었다. 이에 따라 1992년에서 1998년 사이 총 600명 이상이 독일 연방 의회 조사위원회 앞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었고, 조사위원회는 이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질의하였다.[152] 비록 일련의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이처럼 다양한 참가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통당 독재의 역사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독재가 남긴 유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한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사법청산이나 국가안전부 문서 처리를 통한 청산과는 다른 차원의 과거청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의회 조사위원회 활동은 사통당 지배 체제의 독재적 성격을 명확히 밝혀 1990년대에 신연방주에 확산된 반발적 정체성의 문제점을 일깨우는 데도 일조했다. 나아가 수백 장에 달하는 최종 보고서와 수만 장의 출판 자료는 통일 후 첫 10년 간 사통당 독재에 대한 독일 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조명에 대한 생생한 기록으로 앞으로 역

1) 독일통일 과정 중 사통당 독재 정권의 잔재를 극복하는데 있어 법치국가인 독일 연방 공화국의 구조적 능력
2) 사통당 독재정권의 희생자, 공공 분야의 엘리트 교체, 사법적 청산
3) 경제정책, 사회정책, 환경정책
4) 교육, 학술, 문화
5) 과거 동독의 일상생활과 신연방주의 일상생활
6) 기록보관소
7) 독일의 두 독재와 그 희생자에 대한 기억의 전 독일적 형태
8) 중부·동부·남동부 유럽 내 전체주의 독재청산에 있어 국제적 협력에 대한 전망
9) 사통당 독재청산의 향후 과제들
10) 분단 유럽 속의 분단 독일.
(문서번호 40).

[151] Deutscher Bundestag(ed.), Materialien der Enquete-Kommission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ß der deutschen Einheit"(Baden-Baden, 1999).

[152] (문서번호 40).

사 연구의 중요한 토대 역할을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1차 위원회에 비해 좀 더 실질적인 관점을 지향한 2차 조사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성과는 희생자의 복권에 관련된 법 개정과 독재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지 및 역사 기념관 건립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지침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조사위원회가 남긴 가장 큰 성과는 사통당 독재청산 재단(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의 설립이다. 2차 조사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과거청산이 5년, 10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님을 인식하고 자신들이 한시적으로 했던 일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전문 기구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고, 독일 연방 의회가 이를 받아들여 1998년에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과거청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수많은 과거청산 관련 단체와 개인 연구자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153]

[153] 이 재단의 활동은 5장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제4장

피해자들의 복권과 보상

과거청산의 과제는 비단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독재 체제가 양산한 희생자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사통당 독재 체제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냈다. 수십만 명의 동독인이 정치적 이유로 구속되거나 유죄 선고를 받았고, 재산몰수, 시베리아 유형, 교육과 직업 면에서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았으며, 끊임없는 감시에 시달렸다. 특히 냉전이 본격화되고 스탈린식 사회주의가 이식된 사통당 정권 초기에는 체제 비판세력을 정치범으로 몰아 처형하거나 투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심문 과정에서 자행된 가혹 행위로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일도 발생했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통일 후에도 과거에 겪은 탄압으로부터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다. 따라서 사통당 독재청산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작업은 통일 전인 1990년 초에 이미 동독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동독 검찰은 과거에 선고된 판결을 검토해 정치적 동기에 의해 부당하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무효화했다. 이를 통해 발터 얀카(Walter Janka), 볼프강 하리히(Wolfgang Harich), 루돌프 바로(Rudolf Bahro), 로버트 하베만(Robert

Havemann) 등 과거 반체제 인사들에게 내려진 형사 판결이 무효화되었다. 이러한 동독 말기의 자정적 움직임은 1990년 9월 6일 최초로 실시된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된 동독 의회가 '복권법'을 가결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법적 피해자들의 복권을 공식화함에 따라 더욱 진전되었다.

나아가 통일 후 독일 연방 의회는 1992년 6월 17일에 사통당 정권 희생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예 회복 선언을 채택했다.

"독일 연방 의회는 공산주의 폭정으로 인해 희생당한 자와 그 가족의 고난을 고귀하게 인정한다. 사통당 치하에서 고통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처벌되었다. 그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속되었다. 그들은 비인간적인 형무소에서 고문과 고난을 받았으며 생명을 잃었다. 그들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으며 모독과 멸시를 받았다. 그들은 고향으로부터 추방되었고, 그들의 재산은 파괴되었다. 독일 연방 의회는 개인적 희생을 무릅쓰고 40년 간 분단되었던 독일이 자유와 평화 안에서 통일되도록 노력한 이 모든 희생자들에게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154]

이어서 1992년 11월 4일에는 제 1차 사통당 불법 청산법(Das erste SED-Unrechtsreinigungsgesetz, 일명 형사복권법)을 가결했다. 이 법에 따라 1945년 5월 8일에서 1990년 10월 2일 사이에 동독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내린 판결로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한 사람들의 사례를 재검토해 판결을 무효화했고, 해당자의 전과 기록도 말소했다. 동독 시절 정치범은 약 25만 명~3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2007년 말까지 약 18만 4천 명이 복권되었다.[155] 다른 한편

[154]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Bonn, 1995), p. 379,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 재건과정』, 한울사, 1997, p. 250에서 재인용.

[155] R. Eppelmann, "Vergessene Opfer? Vom Umgang mit Opfern politischer Verfolgung in der Bundesrepublik," Thüringer Ministerium für Soziales, Familie und Gesundheit, Zur sozialen Lage der Opfer des SED-Regimes in Thüringen. Dokumentation zum Kongress des Thüringer Ministeriums für Soziales, Familie und Gesundheit am 17. Dezember

으로 독일 외무부는 구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과 협상을 벌여 과거 정치적 이유로 이들 국가로 유배당한 독일인 13,500명에게 복권과 재활 기회를 제공했다. 명예회복과 더불어 1992년에는 처음으로 보상법이 제정되어 부당하게 징역을 산 경우 수감 기간만큼 매월 250 유로(현재는 300 유로로 인상됨)를 보상금으로 받게 되었다.

1차 사통당 불법 청산법으로 정치적 구금자에 대한 보상과 복권의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사통당 정권의 피해자는 비단 이들만이 아니었다. 정치적으로 구금되지는 않았지만 1970/80년대 사통당 정권이 국가안전부를 내세워 드러내지 않고 시행한 다양한 탄압으로 피해를 입은 동독인도 많았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1994년 7월 1일 제2차 사통당 불법 청산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주를 기존의 정치적 구금자의 범위를 넘어 확대시켰다. 요컨대 징역은 살지 않았지만 사통당 정권이 다른 방식으로 자행한 탄압으로 인해 건강상의 장애를 안게 되었거나 재산을 상실하고 직업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도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사통당 독재의 피해자의 유형을 보다 다양하게 인정함으로써 보상의 수혜자를 확대시킨 것이다.

제2차 사통당 불법 청산법은 직업적 복권법(Berufliches Rehabilitierungsgesetz)과 행정법적 복권법(Verwaltungsrechtliches Rehabilitierungsgesetz) 두 개로 이루어졌다. 직업적 복권법은 사통당 정권 탄압의 희생자들이 직면한 직업적, 경제적 불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피해자들의 다수는 동독 시절에 아무런 저항 없이 살아온 대다수 신연방주 주민은 물론 심지어 이들을 억압했던 가해자들보다 더 궁핍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과거 정치적 탄압으로 구금된 피해자들은 구금 기간 동안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대다수가 자신의 학력에 맞는 직장에서 직업적

2008 in Erfurt, p. 14. https://www.thueringen.de/imperia/md/content/tmsfg/abteilung3/dokumentation_druckvorlage_10.6.2009.pdf.

경력을 쌓지 못하고 하급의 일을 해야만 했으며, 아예 좋은 미래가 보장되는 고등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동독 정권 범죄의 피해자들은 동독 시절에도 경제적으로 궁핍했지만 은퇴 후에도 적은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통일 후에도 수입이 낮은 직업에 종사하기 일쑤였다.

직업적 복권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구금 전에 취업 활동을 한 피해자의 경우 구금 기간을 연금 납입 기간에 포함시키고, 대학 재학 중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졸업하지 못했을 경우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후 조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연금 손해를 보완할 수 있게 했다.[156] 나아가 동독 시절 교육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해 통일 후 직업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직업 교육, 재교육, 대학 교육 등 피해자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도 표방했다.

한편 행정법적 복권법은 과거 사통당 정권이 다양한 영역에서 자행한 행정적 불법 행위로 인해 야기된 재산, 건상 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동독 정권의 행정조치가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거나 당사자의 건강, 재산, 직업 활동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과거의 행정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현재에까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그 행정조치는 폐기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상 기준을 제시했다.[157]

이러한 행정적 불법 행위의 대표적 예로는 과거 사통당 정권이 국경지대 거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킨 것을 들 수 있다. 사통당 정권은 1952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동서독 국경 지대의 보안을 강화하고, 동독인의 국경 탈출을 저지하기 위한 장애물을 설치하기 위해 인근 지역의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156 (문서번호 36).

157 (문서번호 35).

이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긴 동독인은 무려 1만여 명에 달했다.[158] 이러한 행정적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인정되면 해당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후속 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 보상의 종류는 건강상의 피해일 경우 연방 원호법, 재산상실의 경우 미결 재산 문제를 위한 규정법, 직업 및 교육상의 피해는 직업적 복권법을 토대로 결정된다.

2007년에는 다시 한 번 사통당 불법 청산법이 개정되어 사통당 정권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이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희생자 연금(Opferrente)'을 지급하게 되었다. 물론 모든 피해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당한 판결로 최소 180일 이상 징역을 살았고, 현재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만큼 궁핍한 저소득자에 한해서만 매달 300 유로가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피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지만 현행 보상제도에 일련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억울하게 징역을 산 것에 대한 보상금이 충분치 않다. 현재 해당 피해자들에게 징역 개월 수에 한해 매월 300 유로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독일에서 부당하게 수감된 사법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330 유로보다 적다. 과거 동독 시절의 수감 환경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통당 정권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더 적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희생자 연금의 신청 자격 여건이 최소 180일 간의 구금 기간인데, 그렇다면 179일 간 징역을 산 피해자의 고통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 조차도 복잡한 소득 관련 심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할 만큼 궁핍한 경우로 제한해 놓는 것은 과거 용기있게 사통당 정권에 저항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는 거리가 멀다.

158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 재건 과정』, 한울, 1997, p. 255.

셋째, 독일 정부가 희생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 규정을 마련했지만, 보상 절차가 피해자들에게는 너무 복잡하다. 우선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담당 관청에 의해 사통당 정권의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몫이다. 요컨대 과거 정권 탄압으로 육체적 장애를 안게 된 사람은 현재 자신의 상태와 사통당 정권 범죄의 인과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동독 시절에 발생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상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일례로 과거 시베리아 유형 당시 겪은 고통으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후유증을 앓게 된 한 피해자는 70이 넘은 고령임에도 보상 담당 관청으로부터 신체검사 날짜를 통보받는데 만 2년 반을 기다려야 했다.[159] 더욱이 그는 1947년부터 1955년까지 8년 간 극심한 추위 속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얻은 동상의 후유증으로 계속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담당 관청은 동상이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생긴 것인지를 증명하라고 요구했다.[160] 무려 수십년 전의 일이고,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수감환경에서 살아남은 것만도 기적과 같은 상황인데 그가 무슨 증빙 자료를 구비해 놓을 수 있었겠는가? 상황이 이러하니 정황상 피해자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해 오랫동안 투쟁을 벌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인정받기는 더욱 어렵다. 과거 국가안전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거나 혹은 고통스러운 여건에서 징역을 산 후유증으로 적지 않은 동독인들이 오늘날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일례로 홀거 젠스케(Holger Senske)는 1967년 14세 때 국경을 넘어 서독으로 넘어가려다 실패하고 체포되었다. 그는 불법적 탈출 시도죄로 소년원에 수감되었다가 청소년 재교육원으로 보내졌다. 이후에도 그는 체제에 순응하지 못해 여러 차례

[159] Eppelmann, “Vergessene Opfer?”, p. 15.

[160] Ibid.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인해 젠스케는 늘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 같은 불안감과 알 수 없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그는 술에 의존해 살아가게 되었다.[161]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후유증의 근본 원인이 사통당 정권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아예 보상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빙의 의무를 피해자에게만 지울 것이 아니라 담당 관청의 주도 하에 보다 합리적 기준과 증거 간소화 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동독에서 시행된 정치적 탄압의 결과를 피해자들의 후유증과 연결시켜 파악할 수 있는 의료 감정인을 더 많이 양성해야 할 것이다.[162] 나아가 보상 신청 과정에서 보상 담당 관청의 공무원이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되는 질문이나 상담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담당 관청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입증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증빙 의무 부담과 보상 절차에 드는 시간을 줄임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으로 게겐빈트 희생자 상담소(Beratungsstelle Gegenwind)와 같은 민간 사회단체의 지원 활동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1998년 사통당 정권의 정치적 박해, 구금, 심리적 테러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문을 연 이 상담소는[163]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 청구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절차를 안내해 이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장애의 치료도 돕

[161] Traumata bei DDR-Bürgern-Warum viele Opfer noch heute leiden, http://www.mdr.de/exakt/wendeopfer110-recommend.html.

[162] M. Beleites, 'Gerechtigkeit bei Überprüfung und Rehabilitierung?, Bautzen Forum(ed.): Recht und Gerechtigkeit. Politische Häftlinge der SBZ/DDR im geteilten und vereinten Deutschland. XIII. Bautzen-Forum der Friedrich-Ebert-Stiftung, Büro Leipzig. 23. und 24. Mai 2002. Dokumentation (Leipzig, 2002), p. 60.

[163] (문서번호 48).

고, 이러한 치료를 받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형성해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단체들이 더 많이 생겨나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면 피해자 구제 제도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통일 후 사통당 정권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독일 사회의 관심이 충분하지 않다. 사실 과거청산에 있어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적 보상이나 명예회복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관심이다. 그러나 통일 후 독일 사회가 통일로 야기된 당면 문제 해결에 매달리다 보니 사통당 정권의 희생자들에 대한 관심이 뒤로 밀리게 되었다. 또한 나치 독재가 자행한 폭력이 워낙 극단적이다 보니 사통당 독재의 양상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보인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통일 후 정권 범죄의 피해자들은 여러 면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로 비추어졌다. 대다수 동독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억압적인 동독 체제에 순응했고, 일부는 현실적 유혹에 굴복해 사통당 독재 유지에 적극 가담했다. 따라서 다수는 사통당 독재의 희생자이기도 하면서 공범자이기도 했다. 이러한 미묘한 상황에서 동독 정권에 맞서 많은 고통과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들은 다수의 동독인들에게 끊임없이 자신들의 비겁함을 떠올리게 만드는 불편하고 달갑지 않은 존재이기도 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들에 대한 초기의 공감과 연대감이 약해지면서 가해자들을 비판하고 끊임없이 정의를 요구하는 이들의 외침을 사회 평화 및 통합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보는 시선도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한 보상 절차상의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한 점, 불법 도핑 희생자들[164]에게 연방 원호법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혜택을 받게 해주기보다 2천 내지 4천 유로에 해당하는 일회적 보상을 시행하고

[164] 과거 동독 정권은 국제 대회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동독 운동선수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 및 장애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도록 강요했다.

끝내려는 연방 의회 스포츠 위원회의 보상 법안,[165] 나치 정권의 피해자에 비해 모든 면에서 현저히 부족한 보상 혜택 등이 이러한 문제를 반영한다.

더욱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존중이 충분치 않으면 2003년에 출판된 『안보. 국가안전부의 방위 활동(Die Sicherheit. Zur Abwehrarbeit des MfS)』[166]이라는 두 권짜리 책에서 드러나듯이 상황을 호도하는 가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져 과거청산을 방해한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20명의 전직 국가안전부 고위 장성 및 장교들은 국가안전부가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정상적인 비밀 정보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신들이야 말로 1989년 가을에 시작된 정치적 대변혁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들은 국가안전부와 사통당 정권에 의해 탄압을 받은 희생자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할 뿐 아니라 수감자들이 슈타지 감옥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희생자들을 중상모략 했다.

과거청산이 시작된 후 20년이 넘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희생자들을 폄하하는 가해자들의 공공연한 자기 정당화도 놀랍지만, 응당 이러한 상황에 분노하고 이들에게 일침을 가해야 할 사회적 경고의 목소리 또한 미약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도 크다. 물질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독재 정권에 항거한 용기를 기리는 것 역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치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가 요구되며, 이 점에서도 과거청산은 아직도 미완성이다.

---

165 B. Bohley, "'Wir wollten Gerechtigkeit und bekamen den Rechtsstaat' Bilanz zwölf Jahre danach", Bautzen-Forum (ed.): Recht und Gerechtigkeit. Politische Häftlinge der SBZ/DDR im geteilten und vereinten Deutschland. XIII. Bautzen-Forum der Friedrich-Ebert-Stiftung, Büro Leipzig. 23. und 24. Mai 2002. Dokumentation(Leipzig, 2002), p. 34

166 R. Grimmer et al., Die Sicherheit. Zur Abwehrarbeit des MfS(Berlin, 2003).

제5장

사회문화적 청산

제1절 학술적 청산

과거청산은 일차적으로 과거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목표를 두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즉 과거에 발생한 과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밝혀 또 다시 유사한 상황이 오더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면역력과 비판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과거청산 과정에서 규명된 진상은 교육과 계몽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더욱이 사법적 청산이 많은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과거사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대안적 과거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 후 독일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통당 독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 예로는 우선 동독사와 사통당 독재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학술적 청산을 들 수 있다. 분단 시기 서독에서 동독에 대한 연구는 심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예컨대 냉전이 첨예하게 전개된 1950/60년대까지 동독에 대한 연구는 냉전 논리를 반영해 동독을 붉은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전체주

의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긴장완화 및 동서독 문호개방이라는 상황 속에서 서독 정부가 이른바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동독 체제의 억압적 성격이나 동독 체제비판 세력 등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1989년 동독에서 민주화 혁명이 전개되었을 때 시위의 구심점 역할을 한 체제비판 세력을 보고 서독 학계와 언론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통일 후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고 동독의 역사와 동독 체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신연방주와 베를린에 새로운 연구 기관들이 생겨났다. 대표적 예로는 포츠담 현대사 연구소(Zentrum für Zeithistorische Forschung in Potsam), 뮌헨 현대사 연구소 베를린 분소(Institut für Zeitgeschichte München-Berlin), 드레스덴의 한나-아렌트 연구소(Hannah-Ahrendt-Institut Dresden), 국가안전부 문서관리 연방 관청 내 교육과 연구부(Abteilung Bildung und Forschung des BStU)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기관들과 신연방주 대학 내 연구소를 통해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통일 전 미비했던 동독의 권력 구조와 지배 체제, 국가안전부, 반체제 세력, 동독인의 동독 이탈 및 민주화 혁명, 동독 붕괴의 배경 등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어 많은 연구 성과를 배출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물들은 사통당 독재를 재조명하는 주제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과거청산에 기여하고 있다. 예컨대 이들은 사통당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박물관 전시나 추모지 건립에 필요한 배경 지식과 자료를 제공하고, 과거청산 관련 기관의 활동 방향 및 판단 기준을 정할 때 참고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통일 전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동독 반체제 세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민적 용기의 중요성과 더불어 동독인들이 모두 사통당 정권의 억압적 체제에 순응한 것이 아님을 밝혀 주었다. 비록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는 못했지만 동독 전시기에 걸쳐 존재한 다양한 체제비판 세력에 대한 연구 성과는 1990년대 슈타지 스캔들로 인해 일면화된 동독인

에 대한 인식을 상대화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가 주로 사통당과 국가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동독의 권력 구조 혹은 동독 붕괴 원인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사통당 독재의 일상적 구조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통당 독재가 어떻게 나치 독재의 3배가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는지, 독재의 일상적 토대는 어떻게 형성되고 기능했는지를 밝히고, 신연방주 주민들이 사통당 독재 청산과 관련해 개인적 차원에서 성찰해야 할 문제들을 환기시키고 있다. 나아가 사통당 독재의 청산이 1990년대 전반부처럼 슈타지 범죄의 역사, 혹은 동독만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전 독일적 차원에서, 동서 냉전 체제의 국제적 맥락 속에서 조명하려는 노력도 증대되고 있다.

제2절 공공 기관 및 민간단체의 교육·계몽 활동

통일 후 베를린과 신연방주에는 사통당 독재청산과 관련된 역사 교육 및 계몽을 표방하는 공공 기관이 설립되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 예로는 우선 국가안전부 문서 연방 및 주 관리청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시민들의 문서 열람을 위한 행정적 작업 외에도 국가안전부가 남긴 문서, 사진, 필름 등 각종 자료를 이용해 국가안전부의 불법 행위를 알리는 강연회, 전시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일례로 국가안전부 문서 연방 관리청이 2011년과 2012년에 개최한 행사만 800여 건에 달했고, 7만 8천명 이상이 이에 동참했다.[167]

또한 국가안전부 문서 연방 관리청은 베를린 시내 중심부에 교육 센터(BStU-Bildungszentrum Berlin)를 두어 국가안전부의 구조와 주요 임무, 그리고 국가안전부가 정치, 문화, 스포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동독

[167] Der BStU, Elfter Tätigkeitsbericht, p. 20.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는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상설 전시회를 열어 계몽 활동을 피고 있다. 전시회의 내용이 국가안전부가 남긴 영상 자료를 십분 활용하고, 동독 시민의 개인사를 적절히 가미해 관람객에게 보다 흥미 있게 전달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교육 센터가 베를린 관광 중심지 중 하나인 체크포인트 찰리(Checkpoint Charlie) 박물관 인근에 위치하다보니 베를린 주민 뿐 아니라 외부에서 온 많은 관광객들도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 센터는 국가안전부와 동독 역사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부족한 서독지역 주민에게도 유용한 교육 및 홍보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사통당 독재청산 재단(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을 들 수 있다. 이 재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연방 의회 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로 설립되었다. 1998년 사통당 독재청산 재단 설립법[168]을 토대로 발족한 이 재단의 임무는 첫째, 사통당 정권 범죄에 대한 증거 확보 및 피해자 파악, 둘째, "반전체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셋째, 민주주의와 내적 통일의 공고화이다.[169]

이러한 목표 하에 독재청산 재단은 다양한 세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선 재단은 독일인들이 과거청산에 보다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독사 및 사통당 독재청산과 관련된 수만 권의 도서를 구비해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통당 독재에 대한 저항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문서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동독

168 (문서번호 42).

169 주요 활동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과거청산 관련 시민단체, 사설 문서고, 사통당 독재 희생자 단체의 프로젝트 지원
2) 소련 군정과 사통당 독재 희생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지원
3) 소련점령지역/동독에서 시행된 독재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규명 및 학술 연구 지원
4) 동독 체제에 대한 저항과 정치적 탄압 관련 자료 및 개인 소장 자료의 수집, 보존 및 평가, 기록실, 도서관 및 문서고의 설립 및 유지
5) 독재의 희생자 및 독일 분단과 1989/90년 동독 평화혁명에 대한 추모와 기억화
6) 독재청산을 위한 국제적-특히 유럽 내-협력 지원. Ibid. 참조.

정권이 금서로 지정한 문학 작품과 반체제 세력의 활동 기록을 모아놓은 기록 보관소를 설립해 학계, 언론 등에 개방하고 있다.[170] 특히 과거 체제비판 세력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들이 통일 후 관리 인력 부족 및 재정적 어려움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 이러한 재단의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71]

둘째, 독재청산 재단은 1998년부터 연구 기관이나 개인 연구자, 피해자 단체 등이 사통당 독재의 원인과 독재의 실상 및 결과를 밝히기 위해 추진하는 연구·교육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1998년 이래로 지원 액수는 3천만 유로가 넘는다.[172] 나아가 이들이 정기적인 의사소통과 토론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과거청산에 대한 공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셋째, 과거 동독 시절 사통당 정권에 의해 정치적 박해를 받은 희생자들에게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시행해 탄압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넷째,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기관들과 제휴를 맺고, 독재의 재평가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증진도 모색하고 있다. 과거 현실 사회주의권에서 발생한 정권 범죄, 예컨대 1930년대에 스탈린이 주도한 대숙청, 1968년 소련군의 침공으로 좌절된 프라하의 봄, 1956년의 헝가리 봉기 등에 대한 특별 자료 발간도 이러한 국제적 협력 및 비교 작업의 일환이다.

다섯째, 독재청산 재단은 독일 사회가 사통당 정권이 자행한 불법행위와 피해자들의 고통과 용기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연구 서

170 일례로 재단 산하의 도서관과 기록보관소에는 4만 5천권 이상의 장서와 4만 부 정도의 미 출간 지하문학 작품의 사본, 4만 장의 사진, 3천 7백 개의 예술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통일독일에서의 과거 공산주의자 청산문제』, p. 54.

171 (문서번호 41).

172 재단은 독일 연방 정부로부터 연간 76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재단이 보유한 1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기금은 대부분 사통당 소유 재산을 넘겨받아 조성된 것이다.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통일독일에서의 과거 공산주의자 청산문제』, p. 53.

적과 잡지를 발간하고, 전시회, 학술 대회, 워크숍 개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재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민주주의 의식의 함양을 위해서는 과거청산이 사회적으로 담론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특히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통일 후 독일에서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결성되어 이러한 작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동독 시절 사통당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했던 체제 비판 세력의 일원과 사통당 정권의 피해자들은 통일 후에도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통당 정권의 불법 행위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일례로 베를린의 로버트 하베만 협회(Robert Havemann Gesellschaft)를 들 수 있다. 1990년 11월에 결성된 이 협회는 동독 체제 비판 세력의 저항 활동을 연구하고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동독의 유명한 반체제 인사였던 로버트 하베만에 대한 자료 외에도 1980년대 체제 비판적 정치 집단과 1989년 가을 동독의 민주화 혁명 과정에서 결성된 동독 정당 및 정치 단체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동독 체제 비판 세력에 속했던 동독인들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을 넘겨받아 문서 외에도 편지, 청원서, 사진, 전단, 현수막, 포스터, 필름 및 음향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귀중한 자료를 대중에게도 공개해 과거청산 관련 프로젝트나 학술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다양한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전시회를 통해 대중과도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특히, 2005년 협회가 독일 연방 정치교육 센터(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와 공동으로 제작한 동독 청소년의 반체제 활동을 다룬 영상 자료는 TV 영상물 중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되어 그림상(Grimme-Preis)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2009년에는 동독 민주화 혁명 20주년을 맞아 동베를린의 중심가 알렉산더 광장에서 1989/90년에 동독과 동유럽에서 전개된 민주적 변혁을 기리는 야외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별도의 특정 공간이 아닌 25년

전 수많은 동독 시민이 운집해 정치적 대변혁을 이룬 바로 그 현장 자체를 기억의 공간으로 십분 활용해 오고 가는 사람이 사통당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화 혁명을 상기할 수 있게 한 이 전시회는 그해 독일 연방 정치 교육센터가 수여하는 통일 공로상을 수상했다.

제3절 박물관과 추모지를 통한 기억화

과거사를 기념하고 피해자들을 기리는 기념관, 박물관 및 추모지의 건립은 과거청산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사통당 독재의 역사를 고증하고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모지가 건립되어 과거청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 기억의 공간은 무려 600곳이 넘는다고 한다.[173] 대표적인 예로는 우선 베를린 장벽 추모지(Gedenkstätte Berliner Mauer)를 들 수 있다. 베를린 장벽은 독일 분단의 상징물로, 동독 이탈주민이 서독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다. 베를린 장벽 추모지는 이러한 분단의 비극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1998년 베를린 베르나우어가에 건립되었고, 이후 2011년까지 확충되었다.

추모지가 있는 베르나우어가는 동독 시절 동서 베를린의 접경지대로 베를린 장벽이 있었던 곳이다. 건축가들이 추모지 건립 당시 60미터에 달하는 베를린 장벽의 잔재를 살려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분단의 비극을 보다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베를린 장벽 재단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베를린 장벽의 역사 및 장벽의 잔존물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베를린 장벽을 둘러싸고 발생한 역사적 사건과 독일 분단사 전반에 대한 기록 영화를 상영해 기본적인 역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각종

[173] Eppelmann, "Vergessene Opfer?," p. 20.

추모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장벽을 넘다 사망한 136명의 희생자의 이름과 사진이 전시된 격자창 스타일의 추모 공간도 있다. 더불어 약 1.4km에 달하는 추모지 곳곳에 베를린 장벽에 관한 사진, 비디오 영상 및 음향 파일 등으로 꾸며진 야외 전시 공간을 마련해 사통당 정권의 독재에 대한 계몽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장벽의 잔재를 따라 걸으며 과거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동시에 장벽을 넘다 희생된 동독인을 추모하고 기억하게 하는 베를린 장벽 추모지는 과거청산을 위한 교육의 모범 사례이다.

또 다른 예로는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슈타지 기념관 및 박물관을 들 수 있다. 베를린의 슈타지 박물관은 국가안전부장관 밀케의 집무실이 있었던 국가안전부 본부 건물 1동에 마련되어 있다. 이는 '베를린 노르마넨가의 반스탈린주의 활동 연합(Verein Antistalinistische Aktion Berlin Normannenstraße)'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동독 민주화 혁명 과정에서 결성된 노르마넨가 시민위원회(Bürgerkomitee Normannenstraße) 출신 동독인과 과거 동독 정권의 탄압을 받았던 민권 운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슈타지 해체 과정에서 슈타지가 사회 감시에 사용한 대다수 장비들은 슈타지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그대로 보존한 후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부 본부 건물에 위치한 슈타지 박물관을 방문하면 국가안전부장관이었던 밀케의 집무실을 원형 그대로 볼 수 있고, 8천명의 요원을 수용했던 본부 건물들을 통해 국가안전부가 가히 세계 최대 규모의 억압 기구였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부가 불법 행위에 사용한 다양한 기술적 도구들도 전시되어 있어 이 거대한 기관이 어떻게 사회를 감시하고, 반체제 세력을 억압했는지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다.

한편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슈타지 벙커 박물관(Museum im Stasi-Bunker)은 과거 국가안전부가 비상사태 혹은 핵전쟁을 대비해 비밀리에 만든 벙커를 전시실로 이용해 국가안전부의 실체를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라이프치히 국가안전부 책임자는 1969년부터 1972년에 걸쳐 비상시에 100명의 요원과

함께 대피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벙커를 지었다. 약 5.2 헥타르에 달하고, 거의 원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이 벙커 박물관은 국가안전부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시행한 다양한 훈련을 고증함으로써 사통당 정권과 국가안전부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권력을 지키고자 했는지를 알려준다.

그런가 하면 베를린에 있는 호헨쉔하우젠 기념지(Gedenkstätte Berlin-Hohenschönhausen)는 슈타지 중앙 형무소에 대한 역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174] 이곳은 2차 세계대전 후 소련 점령 통치 기간 동안 나치 정권 범죄에 책임이 있는 독일인과 소비에트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을 수감하는 수용소였다가 1951년 이후 슈타지 형무소로 이용되었다. 1990년대 초반 과거 이곳에 수감되었던 동독인들이 이곳을 기념지로 만들려고 노력한 끝에 1994년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그러다 1995년 베를린 문화부가 이곳을 본격적인 기념지로 만들기 위해 재단 설립에 착수했고, 2000년 6월 베를린 주의회가 베를린 호헨쉔하우젠 기념지 재단설립법을 가결했다.[175]

호헨쉔하우젠에 설립된 기념지는 1945년부터 1989년까지의 형무소 역사를 연구하고, 나아가 사진전과 전시회를 통해 과거 국가안전부가 이 형무소에 수감된 동독 체제 비판 세력에게 행한 육체적, 심리적 억압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국가안전부에 대한 비판적 조명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추모 의식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독일 연방 수도에 있다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 기념지는 독일 내 공산주의 강압 통치의 희생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념지로 꼽힌다.[176]

---

174 M. Kaule, Relikte der Staatssicherheit. Bauliche Hinterlassenschaften des MfS(Berlin, 2014), pp. 34-37.

175 (문서번호 47).

176 2009년 한 해 동안의 방문객 수만 31만 4천 명에 달한다. Ibid.

제4절 시대적 증인과의 대화를 통한 생생 역사 교육

통일 후 독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청산은 생존자들이 이러한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동독이 붕괴한지 아직 오래되지 않은 만큼 독일에는 과거청산과 관련해 개인의 경험을 증언할 수 있는 생존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근래에 들어 사통당 독재청산과 관련된 공공 기관과 민간단체들은 이들과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일인들은 언론이나 책으로 접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당사자를 통해 직접 듣고 배우는 소중한 체험을 하고 있다.

일례로 사통당 독재청산 재단은 2009년에 시대적 증인 포털[177]을 개설해 이들과 시민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베를린 장벽 재단은 2012년 2월부터 구 동독의 반체제 문인, 민권운동가, 동독 이탈주민 등을 초빙해 커피와 케이크를 먹으며 강연을 듣고 청중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대적 증인과의 대화 카페(Zeitzeuegen-Cafe)'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178] 그런가 하면 호헨쉔하우젠 기념지의 경우 과거 이곳에 수감되었던 동독인들이 직접 방문자들을 안내하며 동독 국가안전부의 심문 방식 및 도구, 국가안전부 형무소 수감자들의 수감 여건 등을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시대적 증인들의 능동적 참여 덕분에 독일인, 특히 동독사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서독지역 주민이나 젊은 세대가 동독 이탈 주민은 왜 그리고 어떻게 동독을 이탈했고, 그로 인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체제 비판 세력은 왜 사통당 지배체제에 저항했고, 사통당 정권은 이들을 어떻게 탄압했는

177 www.zeitzeugenbuero.de. 이곳에는 지금까지 재단에 등록된 시대적 증인들의 개인적 이력이 소개되어 있어서 관심사에 맞게 만남을 시도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이 사이트를 통해 시대적 증인들과의 만남 행사, 과거청산과 관련된 전시회 및 역사 교육 프로젝트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78 5 유로를 내면 커피와 케이크가 제공된다. 여기서 오고 간 대화의 녹음 파일은 직접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장벽 재단 홈페이지에 제공된다. http://www.berliner-mauer-gedenkstaette.de/de/index.html.

가 등에 대해 당사자로부터 생생한 체험담을 듣고 배우는 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증인과의 만남은 동독에 대해 잘 모르거나 편견을 갖고 있는 서독지역 주민과의 대화도 촉진시켜 내적 통합을 이루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사통당 정권의 탄압을 겪은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되새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통일 후 점차 많은 사람들이 동독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터놓고 얘기하지 못한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누려고 용기를 내고 있다. 이는 사통당 독재의 청산에 기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제5절 청소년 대상 교육의 강화

근래에 이르러 독일의 다양한 과거청산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은 미래를 위한 과거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위한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독일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 이들의 동독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청소년들이 동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경험적 조사를 실시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신연방주 거주 학생의 경우 구 동독을 명확히 독재 체제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절반에도 못 미쳤고, 40%가 슈타지를 통상적인 첩보 기관으로 간주했다.[179] 이 두 가지 모두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청소년들에게 독재의 위험을 알리고 민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사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독일 연방 및 주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사통

[179] 하이데마이어, 「통일독일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전환기 정의의 영향」, p. 91.

당 독재의 역사와 과거청산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 연방 공화국 대통령, 혹은 독일 연방 및 주 정치 교육 센터(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는 동독사를 포함한 역사·정치에 관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그 결과물을 제출하는 공모전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배우는 단편적 지식을 넘어 독일 분단사와 동독의 독재 체제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 심화 학습을 유도하고 이들에게 비판적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과거청산 관련 기관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 교육부서는 수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역사·정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국가안전부장관 밀케의 집무실이 보존되어 있는 구 국가안전부 본부 건물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의 날'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안전부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 예컨대 국가안전부는 임무를 어떻게 수행했을까?, 오늘날 우리는 국가안전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등에 대해 설명해주고, 슈타지 박물관, 국가안전부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문서 관리청의 문서고, 국가안전부가 남긴 영화나 기타 자료 등에 대한 견학을 실시한다. 또한 사통당 정권에 맞서 저항했다가 국가안전부의 감시 혹은 탄압을 받은 증인들의 경험을 직접 듣고, 학생들이 궁금한 바를 묻고 대답하는 만남의 시간도 주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시민적 용기의 중요성과 과거청산의 필요성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전부 문서 관리청 교육부는 교사들이 국가안전부와 사통당 독재 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선 국가안전부가 남긴 방대한 자료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집해 교사들에게 수업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교사들이 효율적으로 국가안전부 문제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 방법 연수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국가안전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정보서도 출판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서적은 국가안전부의 감시와 탄압을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예컨대 국가안전부의 비공식 정보원이 된 동독 청소년들의 사례와 동독 청소년의 저항 행위 등을 소재로 삼아 청소년들의 관심과 공감을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자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제공되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통일 후 독일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통당 독재에 대한 역사 교육과 희생자에 대한 추모작업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인과 민간 차원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사통당 독재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잘 알수록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만큼 이러한 사회문화적 청산의 노력은 정치적, 사법적 청산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며 과거청산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사통당 독재청산을 위한 사회문화적 노력이 여전히 동독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은 아쉽다. 간간이 베를린과 신연방주의 과거청산 관련 단체들이 서독지역을 돌며 이동 전시회를 시행하고 있지만, 서독지역에서 자체적인 발의에 의해 과거청산 작업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은 드물다. 이는 아마도 사통당 독재청산을 여전히 동독지역만의 관심사로 보는 서독지역의 지배적인 시각 때문일 것이다. 20세기 독일의 두 번째 독재가 동독에서 시행되었지만, 이는 넓게 보면 분단과 냉전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독지역 주민에게 과거청산 혹은 동독 역사를 전 독일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는 동기를 더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남겨진 숙제이다.

제6장

맺음말

과거청산과 관련해 독일처럼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 20세기에 두 번의 독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일은 통일 이후 나치 과거청산과 더불어 사회주의 독재청산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나치 과거청산이 전후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야 본격화된 것과 달리 사통당 독재의 청산은 동독 붕괴 직전부터 이미 동독시민의 손에 의해 시작되었고, 통일 이후 지금까지 심각한 사회적 충돌 없이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다.

20년 넘게 시행된 과거청산의 노력은 다양한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우선 통일 후 독일은 사통당 정권 하에서 자행된 불법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주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사법청산을 시행했다. 또한 사통당 정권의 억압적 체제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한 국가안전부의 범죄 기록을 담고 있는 문서를 파격적으로 공개해 동독인 개인의 과거사를 밝히고, 형사소추, 사회 지도층의 인력 검증,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의 과거청산도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 의회 내에 사통당 독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정치인과 전문가,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모여 과거청산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사회적 공론의 장 형성을 시도했고, 피해자들의 복권과 보상을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더불어 이러한 모든 청산 과정을 통해 밝혀진 독재의 위험성을 알리고 민

주주의 의식을 함양하려는 교육과 계몽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독일은 20세기 독일에서 시행된 두 번째 독재 체제의 청산 의지를 국내외적으로 천명했고, 국제 사회가 독일을 과거청산에 있어 모범 국가로 인정할 만큼 성과도 거두었다. 그럼에도 지난 25년 간의 과거청산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일련의 한계도 드러냈다. 우선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사법청산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동독 주민의 사회 통합에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문제를 남겼다. 따라서 독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면 정권 범죄에 맞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또한 국가안전부 문서 공개 직후 과열된 폭로적 성격의 보도와 모든 동독인을 사통당의 부역자로 단죄하는 듯한 감정적인 논의는 사통당 독재의 과거를 국가안전부 범죄의 역사로 축소시켰고, 신연방주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사례는 이러한 상황이 과거청산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제는 사통당 통치 체제에서 국가안전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국가안전부가 사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차분히 발전시켜 나감이 바람직하다. 비공식 정보원의 문제도 속단과 도덕적 단죄 이전에 이들이 왜 슈타지에 협력하게 되었는지를 보다 다각도로 밝히고, 한계적 상황에 처한 인간의 다양한 행위 양식을 깊이 있게 다루어 신연방주 주민들을 반발적 자기방어가 아닌 자발적 자기성찰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나아가 명예 회복에 비해 피해자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아직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재정 상황과도 관련이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정치권과 여타 독일인의 관심 부족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희생을 무릅쓰고 40년 간 분단되었던 독일이 자유와 평화 안에서 통일되도록 노력한” 희생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

정과 보다 나은 대우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행된 과거청산의 성과를 토대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교육, 계몽 활동도 주로 베를린과 신연방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는 곧 사통당 독재청산의 과제가 여전히 동독지역만의 관심사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사통당의 독재 역시 크게 보면 냉전과 분단의 이중적 모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서독 역시 이와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역사교육을 통한 성찰적 과거청산은 사통당 독재청산이 전독일적 차원의 문제임을 알리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이 궤도에 오를 때 구연방주와 신연방주 간의 내적 통합도 더 진전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독일에서 과거청산 작업이 20년 넘게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12년 간 지속된 나치 독재의 청산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 그보다 세배 이상 길었던 사통당 독재청산이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통일 후 2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서히 감정적 논의도 줄어들고 세대교체도 시작되고 있으니 어찌 보면 지금부터 한 차원 더 높은 과거청산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독재의 유산과 비판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 시민적 용기의 소중함을 새롭게 일깨워준다. 나아가 독일의 사례는 분단 상황의 상이함에서 비롯되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통일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북한 공산 독재의 청산 문제에 대해 여러 면으로 시사를 준다.

첫째, 북한 정권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과거청산 과정에서 남한이 주도권을 갖고 북한 체제를 단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반세기가 넘었음에도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는 친일 세력 및 군부 독재청산 작업에서 드러나듯이 남한 자체가 과거청산을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이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 공산 독재의 청산이 남한에 의한 '승자의 심판'이라는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부 독재 하에서 자행된 억압

의 진상과 책임의 소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여전히 미흡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복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는 북한 공산 독재의 성공적 청산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둘째, 동독 정권 범죄와 비교할 때 북한 공산 독재의 청산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북한의 요덕 정치범 수용소가 서울시 면적의 90%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180]와 공개 처형이 비일비재한 북한 상황에서 드러나듯이 북한 정권이 자행한 불법행위는 동독 정권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 과거청산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과 과도기적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북한 주민을 하루 속히 통일한국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 범죄의 청산이 독일의 사례처럼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 평화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청산이 법적, 제도적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사법처리를 빙자한 보복으로 나간다면 이 또한 체제불법이 될 것이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독일과는 분단 배경과 상황이 완전히 다른 우리의 경우 법치주의적 청산을 도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동안 북한 정권에 의해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재산 몰수는 물론 강제 노동소에서 노역과 학대에 시달린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법치주의적 사법청산을 순순히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또한 북한으로 납치되거나 북한이 파견한 간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한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 외에도 한국 전쟁의 여파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체제대립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적대 의식 속에서 내내 살아온 남한 주민들도 엄격한 법치주의적 사법 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독일과는 다른 상황에서 차후 발생하게 될 갈등과 혼란을 최소

[180] 北 요덕수용소 '은폐'…中은 '북한 거들기', TV 조선 뉴스, 2014.11.7.

화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이미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정권 범죄의 심각성, 북한 피해 주민의 의사, 그리고 오랫동안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비판적으로 지켜봐 온 남한 주민의 정서를 고려해 법치주의 국가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한국적 사법청산의 원칙과 모델을 찾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준비 없이 통일을 맞게 될 경우 북한 정권 범죄의 청산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불협화음을 야기할 것이고, 이는 신생 통일한국의 내적 통합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셋째, 동독 국가안전부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의 청산 또한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억압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감시와 통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북한 보위부의 경우에도 엄청난 기밀문서와 협력자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문서가 공개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통일 직후 문서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정치적 독립성을 지닌 전담 기관과 관련법을 신속히 마련해 북한 주민의 인권·사생활 침해,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을 방지하면서 북한 정권 범죄 입증, 공직자 임용 심사, 피해자 구제 등 과거청산 작업에 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독일의 경험에 주목해 북한 보위부의 범죄 행위와 그 협력자들의 문제 처리가 북한 체제의 억압적 성격과 개인적 책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단죄와 폭로에 매몰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과거청산에 있어 중요한 현실적 문제는 피해자 구제이다. 독재는 종식되었지만 그로 인한 피해자는 남아있다. 따라서 과거청산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종결될 수 없다. 통일이 되면 우리 역시 북한 정권 범죄의 피해자 구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독일은 형사복권, 행정복권, 직업복권의 차원에서 관련법과 지원책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우리 역시 독일의

사례를 참조해 북한 정권의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었거나 고문, 강제 노역에 시달린 북한 주민의 명예 회복과 치료 및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통일 과정에서 대두하게 될 실업이나 경제적 혼란과 같은 현안에 밀려 이들의 처우 개선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데, 국가 기관 뿐 아니라 민간 사회단체의 적극적 지원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우리도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국가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서독은 통일 이전에 중앙 법무 기록보존소를 설립해 통일 이후 동독 정권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에 대비했다. 북한 인권 침해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작 남한에는 북한 인권정보 센터라는 민간단체가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다른 한편으로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다양한 출처를 통해 이루어지겠지만, 현재 남한으로 입국하는 탈북민이 점점 증대하는 만큼 이들의 생생한 증언이나 이들이 소지한 물적 증거들을 수집 및 기록하는데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과거청산의 목적은 비단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에 머무르지 않고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여 비판적 역사의식을 함양하는데 있다. 민관이 합동해 다양한 형태의 계몽과 역사 교육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모범 사례이다. 통일 후 우리 역시 북한 공산 독재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기리고, 그 모든 것을 야기한 독재의 위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계몽 활동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찰적 과거청산은 관에 의해 주도되기보다는 개인과 민간 차원에서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공론

화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 독재 체제가 분단과 냉전이라는 이중적 모순을 배경으로 수립된 만큼 과거청산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을 포함한 한국 전체의 문제임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국문〉

김수정/이덕형, 「크리스타 볼프 논쟁 II(1993) – 슈타지 Stasi 논쟁과 크리스타 볼프」, 『독일어 문학』 제 34집(2006, 9월), pp. 67–92.

김하중, 체제불법 청산방안에 관한 헌법적 고찰. 구 동독과 북한의 체제불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고상두, 「통일독일의 과거청산과 한반도에의 함의」, 『통일연구』, 제 10권 제 2호(2007), pp. 25–50.

안나 카민스키, 「1989년 이후 독일에서의 청산정책」, 『통일연구 』, 제 11권 제 1호(2007), pp. 19–37.

장원석, 「통일독일의 과거사 청산 일고」, 『정치와 평론』, 14권 (2014), pp. 89–119.

최승완, 「독일의 또 하나의 과거청산. 구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처리작업」, 『역사비평』, 74호 (2006년 봄), pp. 412–440.

하도헌,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슈타지(국가보위부) 해체·청산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헬게 하이데마이어, 「통일독일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전환기 정의의 영향– 슈타지 문서관리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정보 센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북한과거사연구회가 주최한 베를린 장벽붕괴 25주년 기념 세미나, 『통일독일의 사법적 청산과 사회통합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발표집』, 2014. 9. 16, pp. 85–92.

〈외국문헌〉

1. 단행본

Bautzen–Forum (ed.), Recht und Gerechtigkeit. Politische Häftlinge der SBZ/DDR im geteilten und vereinten Deutschland. XIII. Bautzen–Forum der Friedrich–Ebert–Stiftung, Büro Leipzig. 23 . und 24. Mai 2002. Dokumentation(Leipzig, 2002).

Der BStU, Dritter Tätigkeitsbericht des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Berlin, 1997).

....., Vierter Tätigkeitsbericht des BStU(Berlin, 1999).

....., Elfter Tätigkeitsbericht des BStU(Berlin, 2013).

Die BStU, Zehn Jahre Stasi–Unterlagen–Gesetz. Zehn Jahre Aufarbeitung(Berlin, 2002).

....., Feind ist, wer anders denkt. Eine Ausstellung über die Staatssicherheit der DDR(Berlin, 2009).

....., Stasi. Die Ausstellung zur DDR-Staatssicherheit(Berlin, 2011).

Dreier, R., Juristische Vergangenheitsbewältigung(Baden-Baden, 1995).

Grafe, R., Deutsche Gerechtigkeit. Prozesse gegen DDR-Grenzschützen und ihre Befehlshaber(München, 2004).

Grimmer R. et al., Die Sicherheit. Zur Abwehrarbeit des MfS(Berlin, 2003).

Kaule, M., Relikte der Staatssicherheit. Bauliche Hinterlassenschaften des MfS(Berlin, 2014).

Krieger, W/Weber, J. (eds.), Spionage für den Frieden(München, 1997).

Lindner, B., Die demokratische Revolution in der DDR 1989/90(Bonn, 2001).

Schuhmann, S., Vernichten oder Offenlegen? Zur Entstehung des Stasi-Unterlagen-Gesetzes. Eine Dokumenation der öffentlichen Debatte 1990-1991(Berlin, 1995).

Schweizer, K., Täter und Opfer in der DDR(Münster, 1999).

Suckut, S./Weber, J.(eds.), Stasi-Akten zwischen Politik und Zeitgeschichte. Ein Zwischenbilanz(München, 2003).

Weber, J./Piazolo, M.(eds.), Eine Diktatur vor Gericht. Aufarbeitung von SED-Unrecht durch die Justiz(München, 1995).

Wiedmann, R., Organisationsstruktur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1989(Berlin, 1995).

Wollenberger, V., Virus der Heuchler. Innenansicht aus Stasi-Akten(Berlin, 1992).

2. 논 문

Bästlein, K., "Der Kampf um die Akten", Deutschland Archiv, vol. 43(2010), pp. 830-837.

Barbe, A., "Schluß strich oder Auseinandersetzung?", B. Faulenbach/M. Mekel/ H. Weber (eds.), Die Partei hatte immer recht.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Essen, 1994), pp. 127-137.

Beattie, A. H., "Die Weichen stellen für die Zukunft der DDR-Erinnerung?", ZeitRäume, vol. 2011, pp. 20-33.

Beleites, J., "Mit lautem Donner zu kurz gesprungen. Die 8. Novelle des Stasi-Unterlagen-Gesetzes," Deutschland Archiv, vol. 44(2011), pp. 485-490.

Birthler, M., "Gerechtigkeit nach Aktenlage?", Bautzen-Forum(ed.), Recht und Gerechtigkeit, pp. 77-88.

Bohley, B., " 'Wir wollten Gerechtigkeit und bekamen den Rechtsstaat.' Bilanz zwölf

Jahre danach", Bautzen-Forum (ed.), Recht und Gerechtigkeit, pp. 29-35.

Booß, C., "Von der Stasi-Erstrümung zur Aktenöffnung. Konflikte und Kompromisse im Vorfeld der Deutschen Einheit", Deutschland Archiv, vol. 44(2011), pp. 79-87.

Bräutigam, H., "Die Toten an der Berliner Mauer und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und die bundesdeutsche Justiz - Versuch einer Bilanz", Deutschland Archiv, vol. 37(2004), pp. 969-976.

Fricke, K. W., "Merkrwürdige Schluß-Diskussion", Deutschland Archiv, vol. 28(1995), pp. 113-115.

Geiger, H., "Zur Entstehung der Behörde des Bundesbeauftragten und des Stasi-Unterlagen-Gesetzes," K.-D. Henke(ed.), Wann bricht schon mal ein Staat zusammen!(München, 1993), pp. 35-42.

....., "Die Verwaltung der Stasi-Akten: Aufgaben und Probleme", W. Krieger/J. Weber(eds.), Spionage für den Frieden(München, 1997), pp. 163-180.

Grafe, R., "Die Prozesse wegen der Tötung des Mauerflüchtlings Chris Gueffroy," Deutschland Archiv, vol. 39(2004), pp. 977-982.

Schweizer, K., "Möglichkeiten und Schwierigkeiten der Vergangenheitsbewältigung", L. Mertens/D. Voigt(eds.), Opfer und Täter im SED-Staat(Berlin, 1998), pp. 11-40.

Wentker, H., "Zwischen Aufarbeitung und Indentitässtiftung," M. C. Bienert et al., Die Berliner Republik(Berlin, 2013), pp. 225-241.

Winters, P. J., "Herbert Häber und der zweite Politbüro-Prozess," Deutschland Archiv, vol. 36(2003), pp. 5-11.

3. 신문

"Krenz zu sechseinhalb Jahren Haft verurteilt. Noch im Gerichtssaal festgenomme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7. 8. 26.

"Gerecht",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7. 8. 26.

"Krenz macht Moskau für das Grenzregime verantwortlich",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7. 7. 25.

"Stasi-Überprüfung stößt bei West-Politikern auf Ablehnung", Handelsblatt, 2003. 9. 9.

4. 인터넷 자료

Abschlussbericht der Enquete-Kommission 5/2 „Kommunal- und Landesverwaltung – bürgernah, effektiv und zukunftsfest – Brandenburg 2020 ", http://www.landtag.brandenburg.de/media_fast/5701/Drs_5_8000.pdf.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Bundesunmittelbare Stiftung des

öffentlichen Rechts, 『통일독일에서의 과거 공산주의자 청산문제』(Berlin, 2011), http://www.bundesstiftung-aufarbeitung.de.

Das Archiv des Unrechts –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in Salzgitter, März 2013, http://www.kas.de/thueringen/de/publications/33934.

Der BStU, 20 Jahre Akteneisicht in Zahlen(Berlin, 2011. 12. 16), www.bstu.bund.de.

Die Waldsiedlung Wandlitz. http://www.zeitzeugen-tv.com/ dossier/ movie/ 5725/_die_waldsiedlung_wandlitz..html.

Eppelmann, R., "Vergessene Opfer? Vom Umgang mit Opfern politischer Verfolgung in der Bundesrepublik," Thüringer Ministerium für Soziales, Familie und Gesundheit, Zur sozialen Lage der Opfer des SED-Regimes in Thüringen. Dokumentation zum Kongress des Thüringer Ministeriums für Soziales, Familie und Gesundheit am 17. Dezember 2008 in Erfurt, p. 14. https://www.thueringen.de/imperia/md/content/tmsfg/abteilung3/dokumentation_druckvorlage_10.6.2009.pdf.

Ulrike Poppe-Brandenburgs erste Stasibeauftragte. Ein Portrait, 2010.2.3., http://www.rbb-online.de/klartext/ueber_den_tag_hinaus/diktaturen/ulrike_poppe___brannden-burgs.html.

Traumata bei DDR-Bürgern-Warum viele Opfer noch heute leiden, http://www.mdr.de/exakt/wendeopfer110-recommend.html.

독일통일 총서 7

과거청산분야 관련 정책문서

정책문서를 중심으로 본 통일과 과거청산

베르너 페니히 / 이은정
(독일 베를린 자유대)

들어가며

과거청산(Vergangenheitsbewältigung)이라는 단어는 자국의 과거와 그에 따른 책임을 자기연민이 섞이지 않은 진실한 자세로 인식하고, 그로써 과거시대를 종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과거는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쳐 미래의 발전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므로 "종결시키다/정리하여 마치다"라는 의미에서 "청산"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밝혀지거나 해결되지 않은 동독의 역사, 특히 '슈타지'라고 불리는 비밀경찰 즉 국가안전부 활동의 장기적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어떤 의미에서 과거청산 문제는 체제전환을 겪은 모든 사회가 거치는 통과의례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체제전환 이후 사회통합의 발전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독일의 경우에는 구 동독지역의 신연방주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과거청산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달랐다. 베를린과 작센주의 경우 비교적 엄격하게 비밀경찰 협조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반면 브란덴부르크주는 모두가 새로운 시작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적 화합에 중점을 둔 과거청산 작업을 진행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의 특별한 노선"이라고도 불리는 화합을 강조하는 과거청산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이한 평가가 존재한다.

제1장

과거청산과 비밀경찰 슈타지

제1절 동독 국가안전부 슈타지(Stasi) 문서

1989~1990년 과도기에 있었던 많은 중요한 사건들 중 하나는 인민의회가 국가안전부 일명 슈타지의 문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슈타지는 수많은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종이를 모두 연결하면 약 178킬로미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동독의 평화혁명이 시작된 1989년 11월에 당시 동독 국가안전부장관이었던 에리히 밀케(Erich Mielke)[1]는 처음으로 문서파기를 지시하였고 실제 각 지역의 비밀경찰들이 문서를 파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동독의 시민단체들이 주민들에게 정부의 은폐시도를 막기 위한 감시그룹을 결성할 것을 호소하였다.[2] 그에 부응한 시민들이 1989년 12월부터 각 지역의 슈타지 사무소들을 점거하기 시작하였다.[3] 1990년 1월 15일에는 시민들이 동베를린의 비밀경찰본부를 점령하였는데 당시 동독 총리였던 한스 모드로우

1 밀케는 1957년부터 국가안전부장관을 역임하였고 1993년, 1931년에 있었던 살인과 관련하여 6년의 자유형 판결을 받았다.

2 Süß, Walter. 동독 슈타지에 의한 극우에 대한 해석과 인식에 관한 연구(Zur Wahrnehmung und Interpretation des Rechtsextremismus in der DDR durch das MfS), Bundesstiftung, BStU, Abteilung Bildung und Forschung, Analysen und Berichte, 1993 Reihe B Nr. 1), 55p.

3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당중앙문서보관소(Zentrales Parteiarchiv, ZPA)의 문서파기 (문서번호 1).

는 시민대표들이 자신을 보호해서 비밀경찰 건물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4] 동독의 과도정부는 에리히 호네커와 귄터 샤보프스키(Schabowski)[5]의 사무실에 남아있던 자료들은 1990년 2월 말 사회주의통일당 당중앙문서보관소(ZPA)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0년 3월 8일 각료회의(Ministerrat)를 통해 국가안전부 비공식 요원(IM) 109,000명과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후 동독의 시민단체는 동독 슈타지 문서를 무제한적으로 공개하기를 요구하였다. 이들의 모토는 "내 문서는 내 소유"라는 것이었다. 실제 비밀경찰 문서 접근권은 아직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문서 접근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서독 정부의 콜 총리와 쇼이블레 내무장관이 기밀문서를 문서보관소에 폐쇄 보관하거나 심지어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불법적으로 행해진 국가안전부 심문 프로토콜에 담겨진 정보가 예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6] 동독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는 감시 대상자였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작성된 문서를 보게 될 경우 자기를 감시한 사람을 "살인"하는 사건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반면에 동독의 시민인권운동가들은 지속적으로 이 문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기를 요구하였고, 그들의 뜻은 상당 부분 관철되었다.[7] 1990년 8월 24일에 인민회의 의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슈타지 문서의 "안전과 활용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요아힘 가욱(Joachim Gauck)은 동독 최고인민회의의 슈타지 해체 특별

4 베를린 자유대 연구팀과의 인터뷰에서 2012년 9월 22일.

5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 정치국원이자 중앙위원회 비서로서 동독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다. 에리히 호네커의 후계자가 될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1989년 11월 9일 기자회견에서 동독 주민들의 여행 자유화에 대한 결정을 알리고 그것이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발표한 인물이다.

6 동독 슈타지 문서 특임관에 관한 실케 슈토카르 폰 노이포른의 토론 기고문 (문서번호 92).

7 2012년 5월 3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독 통일자문회의에서 드 메지에르 수상의 발언.

위원회의 마지막 위원장이었다. 그는 통일 후에 10년 임기의 "슈타지 문서관리를 위한 연방특임관청" 초대 청장이 되었다. 가욱은 구 동독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청산하는데 있어 구 동독 역사의 정치적, 사법적, 역사적 청산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1990년 당시 동독의 많은 사람들이 요아힘 가욱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었다.

역사학자이자 다년간 슈타지 문서관리사무처 대변인이었던 크리스티안 보스는 당시 결정에 대해, 독일 의회주의의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서술했다. 보스는 해당 비밀 문건을 공개하기 위해 이토록 단시간 내에 독재국가의 국가안전부를 굴복시킨 유례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최상위 목적은 정치적, 역사적, 법률적 고찰이었다. 이로써 마치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위원회나 탈나치화 등과 같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토론될 수 있는 독재 극복 모델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보스는 또한 문서 열람이 구 동독 혁명만의 산물이 아니라 전(全)독일 차원에서 이루어진 논의 결과이자 화합안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전부 활동을 그 이유로 들어 인물에 대한 검증 실시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문서 열람에 대한 권리 주장은 여전히 통일된 독일의 정치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던져주고 있다.[8]

슈타지 문서 처리는 항상 논쟁거리였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주제다. 특히 저명인사의 문서일 경우 그 문서의 내용 자체에 대한 관심과 연구목적이 서로 충돌한다. 논란은 주로 특정 인물의 신원을 알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발생한다. 그런 보도는 시대사적 인물에 대한 관심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언론의 욕심일 수도 있다. 더욱이 누군가 비

8 브란덴부르크 주지사 마티아스 플라첵에게 동독 슈타지 전문가 크리스티안 부스가 보낸 공개서한 (문서번호 86).
"신원조회를 따질 시간은 이미 지났다." 볼프강 티어제, 동독 슈타지 기록에 대한 법원 판결에 관하여 (문서번호 90).
동독 슈타지 문서 특임관의 권한에 대한 연방총리의 조직적인 결정 (문서번호 91). 그 외 (문서번호 97-106 참조).

밀경찰의 비공식협조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 초대 총리인 만프레드 슈톨페를 둘러 싼 논란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슈타지 문서법과 슈타지 문서관리국

통일조약 및 부속합의에는 입법부가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의 보전, 이용, 안전에 관한 광범위하고 최종적인 법률을 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1991년 11월 4일 독일 연방의회가 슈타지 문서법을 결의하였고 12월 말부터 이 법이 발효되었다.[9] 이 법을 통해 동독 국가안전부 및 국가안전부의 전신, 또는 후신 기관에서 작성된 문서의 조사, 연구, 관리, 사용 방법이 규정되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슈타지가 개인의 신상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슈타지가 개인의 운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 슈타지가 보관한 개인 신상정보의 잘못된 관리로 인하여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 슈타지 활동을 역사적, 정치적, 사법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법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할 경우 이를 공공기관 또는 비공공기관에 제공한다.

슈타지 문서법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와 같은 공공기관, 자연인 또는 기타 비공공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슈타지 문서에 적용된다. 2003년 7월부터는 로젠홀츠 데이터[10]도 청산작업에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로젠홀츠 데이터

9 슈타지 문서법(Stasi-Unterlagen-Gesetz, StUG)과 슈타지 문서 관리청(BStU) (문서번호 50).

10 로젠홀츠(Rosenholz)데이터란 슈타지 대외정보기관인 정찰총국(HVA)이 가지고 있던 외국(주로

는 슈타지 문서관리국에서 다른 슈타지 문서와 동일하게 사용되며 검색도 가능하다.

슈타지 문서법 3장 제1절은 개인이 슈타지 문서관리국에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2절은 공공기관 및 비공공기관의 접근권 그리고 제3절은 신문, 방송, 영화 등을 통한 정치·역사 청산을 위한 슈타지 문서 사용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다. 공공기관과 비공공기관은 슈타지 문서법이 허용하고 지시하는 한도 내에서만 문서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슈타지의 피해자, 제3자, 실종자나 사망자의 가족, 슈타지 직원이나 특혜자가 자신에 관한 신상정보 문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슈타지 문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최종적인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된 문서와 포함되지 않은 문서
- 문서에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룹: 당사자, 제3자, 직원, 특혜자, 밀고자, 시대사적 인물, 정치인, 공직 수행 중이었던 공직자
- 정보 접근권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당사자, 제3자, 직원, 특혜자, 공공기관, 비공공기관, 친척, 가족이나 친인척, "연구자/기관", "정치적 청산" 관계자/기관, 미디어분야 종사자/회사
- 접근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안내, 고지, 열람, 반출[11]

슈타지 문서법의 도입을 통해 1990년대 초반 일반대중에 의해 '가욱청'이라고 불리던 슈타지 문서관리국, 정확하게 "슈타지 문서를 위한 연방특임관청"(Behörde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Stasi-Unterlagen)이 활동

서독) 비공식 요원과 관련된 색인카드 형식의 정보자료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사해둔 것을 말한다. 로젠홀츠 데이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경로를 통해 미국 CIA가 입수했으며, 독일이 이 데이터를 입수하기 위한 작전명을 "로젠홀츠"라고 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이 데이터 자체를 "로젠홀츠 데이터"라고 부른다.

11 제8조 1항에 "전자복사본, 필사본 및 기타 복사본"이라고 되어 있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12] 이 법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보다 기존의 연방문서법에 따라 슈타지 문서를 처리할 경우 모든 연방문서에 대해 적용되는 30년 공개금지규정으로 인해 개인이 문서를 열람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정보를 포함한 문서의 공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슈타지 문서관리국은 슈타지 문서법 제20조에서 제25조까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서열람 요청에 따라 일정한 개인에 관한 신상정보가 신청자에게 전달된 경우, 전달 이후 그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아가 슈타지 문서관리국이 문서의 개인에 관한 정보내용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슈타지 문서관리국에 내용이 옳지 않다는 의견이 제출될 경우, 또는 해당 개인이 내용이 바르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별지에 작성하여 해당문서에 첨부해 두어야한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집된 정보, 비밀리에 이루어진 정보수집 등 염탐을 통해 수집된 개인신상정보는 당사자나 제3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되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당사자 또는 제3자에 관한 정보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제21조 1항 1호와 2호[13]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이나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문서 사용이 허락될 경우 형사소송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슈타지 문서관리국에 통보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슈타지 문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를

---

12 초대 슈타지 문서 연방특임관이 요아힘 가욱이었고 그는 2011년에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의 이름의 상징성 때문에 슈타지 문서 연방특임관청은 초기에 '가욱청'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13 슈타지 문서법 제21조 1항 1호, 2호
(1) 당사자나 제3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는 공공기관이나 비공공기관에 의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1. 당사자, 실종자 및 사망자의 복권, 포로지원법[1955년 제정된 과거 소련 포로를 위한 법]에 의한 보상, 급여.
2. 인격권의 보호

통하여 개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검찰 또는 법원의 동의를 득하여 슈타지 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슈타지 문서관리국은 슈타지 문서법에 의거하여 명시적인 청산의 임무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청산의 임무로 인해 수백만 개인 관련 문서에 대한 접근, 확인과 복권을 위한 노력 지원, 연구 및 미디어를 위한 문서 공개가 가능해졌으며, 슈타지 문서관리국 자체적으로 연구, 대외업무 및 교육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슈타지 문서관리국 연구원들의 문서 접근권은 부당한 특권이 아니라, 법 규정에 따라 입법기관인 연방하원이 슈타지 문서에 부과한 엄격한 금지조건의 틀 안에서 학술적 목적의 연구를 가능하게 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외부 연구자에게도 슈타지 문서관리국 연구원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도 있다. 그러나 외부 연구자의 문서 접근을 2013년 현재보다 더 용이하게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슈타지 문서관리국의 교육프로그램은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을 위해 전국적, 지역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방주(州), 기초지자체, 교육담당기관이 독재청산과 관련하여 슈타지 문서관리국의 전문지식 지원, 계속교육, 교육자료 지원을 받고 있다.

독일의 슈타지 문서관리국은 EU의 새로운 회원국이 된 동유럽 국가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바, 이들 국가들은 슈타지 문서관리국의 성공적인 업무를 좋은 사례로 인정하면서 유사한 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제3절 슈타지 문서의 활용

슈타지 문서를 공개한 이래로 그 성격과 신빙성에 관한 연구도 가능해졌다. 2009년 말까지 2만 명이 넘는 구 동서독 주민들이 슈타지 문서를 열람했다. 민간 기업들도 3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슈타지 문서를 통해 신원조회

를 하였다. 슈타지 문서관리국은 요청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었고, 근로자의 해고여부는 기업이 결정했다.

슈타지 문서를 통해 알게 된 사실 때문에 복수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타지 문서 의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헬무트 콜 수상에 대한 슈타지 문서의 공개여부를 두고 일어난 논란도 하나의 예이다. 2000년에 슈타지 문서 연방특임관이 학문적인 연구, 정치교육 그리고 언론 활용을 위해 헬무트 콜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헬무트 콜 본인이 이에 반대해 베를린 행정법원에 공개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콜의 입장은 그가 슈타지의 비공식적인 조력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슈타지의 공격 목표였다는 것이었다. 2002년까지 진행된 헬무트 콜(Helmut Kohl) 수상에 관한 슈타지 문서 관련 소송은 최종적으로 헬무트 콜에 관한 슈타지 문서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로 막을 내렸다. 이 소송을 계기로 슈타지 문서와 같은 자료의 사용에 대한 규정이 더 정교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타지 문서와 관련된 과거청산 문제는 통일된 독일 사회에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슈타지와 관련하여 서독인들이 후속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드문 반면, 동독인들은 우선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헬무트 콜은 법적으로 자신에 관한 문서의 공개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동독인들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브란덴부르크주의 초대 총리였던 만프레드 슈톨페에 대한 비밀경찰 연루여부에 관한 논란은 그런 인상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제2장

과거청산의 이중성 문제

1990년대 초 슈타지와의 접촉 또는 협력한 의혹을 이유로 구 동독의 유명정치인(기지, 드 메지에르, 슈톨페)에 대한 고소가 늘었고, 몇몇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도핑 사실도 확인되었다. 서독 언론에 이들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들이 보도되었다. 이 같은 동독 슈타지 논쟁은 신연방지역의 경제 사회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고,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서쪽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구 동독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국 운동선수들의 실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은 많은 운동선수들의 도핑사실이 확인되면서 간접적으로 서독 운동선수들이었다면 금지된 성적 향상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약물복용에 대한 보도와 정치인에 대한 법적 고소는 구체적인 인물을 향한 것이었지만, 마치 신연방지역의 주민들이 서독인들에 의해 획일적으로 비난받는 것처럼 느끼는 분위기가 일반적으로 조성되었다.

더욱이 1992년 이후 동독지역의 경제사정은 악화되었고, 실업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동시에 수많은 국가안전부 협력 사례가 발견되었다.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선택적으로 공개되었는데, 동쪽지역 사람들은 모종의 정치적 동기가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그것이 정치적 박해라는 감정을 갖기도

했다.[14]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이 만프레드 슈톨페와 관련된 논쟁이었다.

제1절 브란덴부르크 전 총리 만프레드 슈톨페를 둘러싼 논쟁

1992년 여름에 만프레드 슈톨페는 저서 "어려운 출발"에서 1963년과 1989년 사이에 교회의 법률전문가로 그리고 동독 개신교 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약 천 번 정도 비밀경찰 요원과 만나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이 동독의 독재국가의 방법을 알고, 그 국가를 이용하고자 한 것이지 그들에게 보고를 하거나 협조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책의 발간과 함께 슈톨페는 그 후 약 2년 동안 독일 전역에서 벌어진 논의의 발단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에서는 이 논의로 인해 사민당과 녹색당 그리고 자민당으로 구성된 주정부 '신호등 연정'까지 위협받게 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 의회는 1992년 2월 12일에 기민당 소속 의원들 20명의 발의에 따라 슈톨페와 비밀경찰 협조 문제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15] "슈톨페 조사위원회"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사회통일민주당, 국가안전부 및 구 동독의 다른 국가기관 대표들과 1,000건이 넘는 대화를 나누었고, 만프레드 슈톨페의 30년 활동을 조사했으며, 1만 건의 문서 및 문건을 다루었고, 52명이 넘는 증인을 심문했다. 위원회의 결론은 만프레스 슈톨페는 국가안전부와의 접촉 때문에 비난

14 "브란덴부르크에서 동독 슈타지 적발. 주의회 부의장 사임"-게르린데 슈토브라바와 레나테 아돌프 (문서번호 69).
동독 슈타지 공조에 대한 게르린데 슈토브라바의 성명 (문서번호 70).
"새로운 동독 슈타지 스캔들, 포츠담 좌파 압박"-미하엘 루트하르트 (문서번호 71). 그 외 (문서번호 72-74 참조).

15 이 조사위원회는 1994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의 비밀경찰 협조 여부에 관한 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1994년 5월 30일).

을 받을 이유가 없다[16]는 것이었다.

슈톨페 본인이 이 모든 비난이 근거 없는 소리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비밀경찰 문서를 관리하던 가욱청에서도 슈톨페가 "IM-Sektretaer"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비밀경찰 비공식 요원 또는 협조자였다고 비난하였다. 그에 대해 슈톨페는 자신이 동독 개신교 지도대표라는 직책 때문에 슈타지와 접촉해야만 했고, 이러한 접촉은 20년이 넘게 지속되었다고 밝히고, "나는 구 동독 시절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의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처리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슈톨페는 국가안전부가 그를 비공식 협력자인 "서기관"으로 등록한 사실을 1989년에야 알았고, 자신은 한 번도 의무성명에 서명한 적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난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년에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17]

1994년 브란덴부르크주 의회의 조사위원회의 다수가 슈톨페에 대한 비밀경찰 비공식 요원이라는 비난이 근거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는 커다란 짐을 벗을 수 있었다. 개신교 측에서도, 그가 맡은 임무를 넘어서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는 확실한 교회의 사람이었지 비밀경찰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톨페는 오랫동안 비밀경찰 비공식 요원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은, 이러한 의심의 근거가

16 브란덴부르크주 의회-주지사 만프레드 슈톨페의 동독 슈타지 공조에 대한 조사위원회 1/3 최종 보고서 (문서번호 61).
브란덴부르크주 의회-주지사 만프레드 슈톨페의 동독 슈타지 공조에 대한 조사위원회 1/3 최종 보고서-녹색연합의 소수의견 (문서번호 62).

17 브란덴부르크주 의회-주지사 만프레드 슈톨페의 동독 슈타지 공조에 대한 조사위원회 1/3 최종 보고서 (문서번호 61).
브란덴부르크주 의회-주지사 만프레드 슈톨페의 동독 슈타지 공조에 대한 조사위원회 1/3 최종 보고서-녹색연합의 소수의견 (문서번호 62).
슈톨페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결의제안 (문서번호 63).
"만프레드 슈톨페의 인민소유 경영체제"-브란덴부르크의 연방주개발회사(LEG)에 연루 (문서번호 64).

전직 비밀경찰 장교였던 사람이 자신이 슈톨페에게 훈장을 전달했다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었다. 슈톨페 본인이 그런 훈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황색언론에서 그러한 핫이슈를 그냥 두지 않았다.

슈톨페에 대한 이런 비난이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된 이유는 무엇보다 슈톨페라는 정치인이 갖는 무게 때문이었다. 그는 단순한 브란덴부르크주의 총리가 아니었다. 분단시기에 동서독 간의 다리를 놓은 인물로 인정받은 슈톨페는 이미 전 독일적 전설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다. 동독의 교회가 고유한 자주성을 상실하지 않고 동시에 전독일 교회의 정신적 통일을 이루는 것 그리고 독일통일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브란덴부르크 지역뿐만 아니라 구 동독 전 지역에서 그는 일종의 희망의 등대와 같은 인물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994년 그가 리하르트 바이체커 연방대통령의 후임으로 최적이라고 볼 정도였다. 그는 동독의 바이체커, 또는 도덕을 대표하는 인물로 불렸다.

슈톨페를 향한 비난도 그에 대한 이런 명망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만프레드 슈톨페라는 대중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주지사에 대한 고소는 브란덴부르크주에 대한 일종의 공격으로 평가되었다. 그 결과 브란덴부르크주에는 지지 정당이 어디가 되었건 상관없이 일종의 연대감이 생성되었으며, 이러한 연대감은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18] 그것은 1994년에 치러진 선거에서 슈톨페가 이끄는 사민당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사민당이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단독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브란덴부르크주 의회는 2011년 또 다시 과거 앙케이트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만프레드 슈톨페는 이 위원회의 활동을 아주 부정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활동이 권력 남용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18] 슈톨페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결의제안 (문서번호 63).

내부적으로 의견의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이 난무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2011년에 앙케이트 위원회 자문단은 주지사 슈톨페가 1990년 초 약 12명의 다른 의원들과 공동으로 사임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밝혔다.[19]

만프레드 슈톨페 케이스의 구체적인 사실과 슈타지 문서 보관소 보유 자료의 해석 문제를 제외하고 보면, "슈톨페 케이스"는 한 저명한 인사를 고소 대상으로 삼고, 법적 절차를 감정적인 일치단결, 호의의 문제로 돌린 후, 이를 정치적 논쟁거리로 점화하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제2절 악셀 힐퍼트 케이스

악셀 힐퍼트는 매우 흥미로운 케이스이다.(슈타지와 협력, 부정부패, 법적 심사 대상이 된 민간 경제기업가)[20] 1947년에 출생한 힐퍼트는 동독체제 하에서 비공식 협력자("모니카")로 슈타지 대령까지 지냈으며, 방첩 주무부서Ⅱ 소속이었다. 동독 첩보업무 영역이었던 상업적 조정 "KoKo"의 예술품 및 골동품 거래대표로서 힐퍼트는 외환거래를 담당했으며, 쿠바와의 거래(예를 들어, 무기수송, 예술품 위조)영역에서도 대표 조정관으로 활동했다. 쿠바군은 힐퍼트에게 명예 대령직을 수여하기도 했다.

힐퍼트는 다양한 경험과 방대한 인맥 및 관련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을 만한 정보력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감이 충만하고 활동력이 강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독체제 하에서 성공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이 모든 것

19 "앙케이트 위원회 감정서: 슈톨페는 동독 슈타지와의 접촉을 이유로 의석을 잃어야만 했었다" (문서번호 65).

20 "슈빌로프 호수의 공중누각 주인"-악셀 힐퍼트 (문서번호 67).
"슈빌로프 호수의 조용한 전원경치"-악셀 힐퍼트, 브란덴부르크 시골뜨기에 대한 혐의 (문서번호 68).

들이 통일 후 민간경제 부문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었다.[21]

악셀 힐퍼트는 베를린 남서쪽(포츠담 근처) 브란덴부르크 호수의 경치 좋은 곳에 방대한 시설인 "슈비로프 호수 리조트" 건립을 추진했다. 그는 리조트 운영자이자 공동 소유자이기도 했다.

이전에 그곳에는 붕괴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외관도 엉망이고 수익성도 없는 구 동독 "청소년 관광호텔"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악셀 힐퍼트는 결단성 있고 아이디어가 풍부한 변화 계획을 세웠다. 호텔 위치는 좋았다. 12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수많은 지역 내 납품 업체와 사업파트너들이 있었다. 연간 11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호텔을 이용했다. "슈비로프 호수 리조트"에서는 유명 행사들도 개최되었다. 정치적으로도 호의적인 지원을 받아 2007년에는 G8 재정장관 회의가 리조트에서 열렸다.

2011년 여름 힐퍼트는 위조된, 즉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비용 영수증으로 3천 6백 만 유로에 달하는 투자를 받은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같은 비용 책정으로 힐퍼트는 주(州)투자은행으로부터 920만 유로를 부당하게 지원 받았으며, 유럽연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유럽펀드로부터 재정지원도 받았다. 2009년에 이미 심사기관인 브란덴부르크주 회계 검사원이 의혹을 제기했었다. 브란덴부르크주 투자은행과 경제부가 프로젝트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신중하게 심사하지 않았음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힐퍼트는 인맥이 화려했고, 1990년대에는 주정부의 자문위원으로도 재직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이 프로젝트가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실현되는 것을 반겼다. 힐퍼트 케이스는 붕괴된 정권의 조력자가 특수 지식, 좋은 인맥 및 배짱으로 특히 부동산 영역에서 새롭고 화려한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예다. 이 케이스를 통해 브란덴부르크주는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일이었지만, 생성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21]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토지 문제 및 공공 발주 비정규성에 대한 조사위원회 1/5의 중간보고서 (문서번호 66).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협력과 보호가 얽혀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는 어떤 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2011년 8월 현재). 그러나 악셀 힐퍼트, 과거 "비공식 협력자(모니카)"는 계속 구금중이며, 독일신용은행과 다수의 건설업자들은 의혹을 받고 있다.

제3장

화해 중심의 과거청산-브란덴부르크주의 사례

통일된 지 20년이 지난 2010년에 브란덴부르크주는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청산 담당관직을 신설하고 2011년에 과거청산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이유는 과거 다양한 방식으로 슈타지에 관여했던 인물들을 둘러싼 문제들로 인해 격해진 정치적 대립이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그때까지 합의 지향적인 과거사 처리 방식으로, 여타 신연방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과거사 문제를 처리해 왔었기 때문이다. 이같이 동독이 붕괴된 지 20년이 지난 후에 과거문제가 새삼스럽게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이다.

제1절 "브란덴부르크의 특별한 노선" (Sonderweg von Branndenburg)

1990년 12월 브란덴부르크주의 첫 번째 총리로 취임한 만프레드 슈톨페는 그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기본적으로 "브란덴부르크만의 특별한 길"을 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가능한 한 많은 정치적 세력을 포용하는 화해
- 동의와 합의를 우선시,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도 과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을 찾기보다는 모든 정치세력의

동의와 합의를 구하는 것에 초점

- 동독 시절의 엘리트들을 가능하면 광범위하게 포용
- 가능하면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의사결정
- 조심스런 체제전환
- 가능한 광범위한 사회국가 원칙의 적용
- 반환토지의 처리에 있어서 국가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
- 지역의 주민들에게 "브란덴부르크의 특별할 노선"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어 이것이 다른 연방주와 연방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것을 인식

이러한 정책의 기본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1990년대 초기에 동독체제가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동독 주민에 대한 억압정치에서 지배정당인 사통당과 국가비밀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브란덴부르크주는 튜링겐이나 작센과 같이 초대 총리가 서독 출신의 정치가였던 지역과 분명히 구분되었다. 실제 브란덴부르크주의 정치적 경험은 다른 신연방주와 매우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동독 출신의 사민당 정치가(만프레드 슈톨페와 마티아스 플라첵) 출신의 총리가 선출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민당은 일종의 브란덴부르크주의 국가정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다른 신연방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이한 현상, 즉 동독의 지배정당인 사통당의 후신인 민사당이 통일로 인해 잃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볼 수 없었다.

통일 이후 동독에 대한 향수를 갖게 된 사람들 중에는 동독에서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독체제를 거부하였던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이

들은 대부분 통일이 되면 모든 사람의 삶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헬무트 콜 수상의 약속을 믿었다가 실망한 사람들이었다.

물론 브란덴부르크주에도 실망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민사당/좌파가 실망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사민당이 그들의 대변자로 인식되었다. 그러한 조건 하에서 과거와 완전한 단절을 추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것처럼 주정부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도 않았다.

제2절 지속되는 "과거" 논쟁과 앙케이트 위원회

브란덴부르크주 정부가 선택한 화해와 협력에 바탕을 둔 정책은 공개된 비밀경찰의 문서에 대한 조사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사안들이 밝혀질 때마다 다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한 논란은 통일 20주년을 기념하던 2010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1990년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과거문제의 처리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물론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았다.

그리고 2010년 브란덴부르크주에서 과거문제가 또 다시 주정부를 압박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2009년에 사민당이 민사당/좌파와 연정을 구성하게 되었고, 브란덴부르크주의 민사당/좌파가 베를린의 민사당/좌파와 달리 동독의 독재정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도부(의회와 정부)의 몇몇 구성원이 과거 국가안전부와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지역의 독재희생자 그룹이 크게 반발하였고, 이러한 논란이 기민당을 비롯한 녹색당의 지원을 받아 주의회에서 정치적인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주의회 야당은 정치인과 학자로 구성된 앙케이트 위원회(역사 고찰과 사회통일, 민주당 독재 및 과도기로 파생된 결과의 극복이 그 설립 목적임) 설치를 강

요했다. 2010년에 브란덴부르크주 의회는 과거청산문제에 관한 조사를 위한 주의회 앙케이트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의 보고서와 의견서가 새로이 불거진 과거사 논쟁에 큰 영향을 주었다.[22]

2010년에 브란덴부르크주에서 다시 불거진 과거논쟁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내적 통합을 방해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해야 한다.
- 다시 과거 경력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하고 그 검토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많은 법조인들은 "감시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한다.
- 과거 문제 특히 비밀경찰과의 협력관계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이 브란덴부르크에 내적인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 과거에 대한 검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통해 서로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쓸데없는 의심을 하고 서로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멈추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동독 당시 가해자였던 사람들 스스로가 당시의 활동에 관해 고백해야 한다.
- 독재와 억압의 피해자에 대해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 통일 당시 그 때 가능한 틀 내에서 공무원으로 행정관청에서 근무한 모든 사람들이 비밀경찰에 협조했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많은 경우 독일의 공무원법 때문에 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22] "브란덴부르크에서 동독 슈타지 적발. 주의회 부의장 사임"-게르린데 슈토브라바와 레나테 아돌프 (문서번호 69).
동독 슈타지 공조에 대한 게르린데 슈토브라바의 성명 (문서번호 70).
"새로운 동독 슈타지 스캔들, 포츠담 좌파 압박"-미하엘 루트하르트 (문서번호 71).
그 외 (문서번호 72-74, 76-89 참조).

- 사법부의 경우 모든 판사와 검사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 강등, 또는 해고가 있었다.
- 판사나 검사와 같은 특정한 직업군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은 정당하지 못하다. 모든 지도층과 843명의 판사에 대한 새로운 검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모든 부처가 1990년 이후 과거에 대한 검증규칙을 마련하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검증이 부처별로 다르게 진행되었다. 그것을 "브란덴부르크적인 무질서"라고 불렀다. 누가 자기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는지는 우연에 의해 결정되었다. 주 정부 내에서는 거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의 경우 대부분 해고되지 않았던 반면, 교사들의 경우 가장 엄격하게 검증받았다.
- 만프레드 슈톨페 전 주총리는 1990년 당시 급증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직 비밀경찰 요원을 경찰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서독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실제 브란덴부르크에서는 약 20%의 전직 비밀경찰요원만이 해고되었다. 신연방주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46%가 해고되었다.
- 과거에 대한 검증은 중립적인 기관 또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당시 브란덴부르크주 의회와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1992년과 2009년 사이에는 검증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신연방주의 경우 비밀경찰의 문서들이 계속 정리 분석되면서 의원들에 대한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제3절 주정부의 대응

2009년 이후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과거문제를 보는 상이한 관점으로 인한 논쟁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2010년 3월 10일에 주지사 마티아스 플라첵이 울리케 포프를 초대 과거청산 담당관으로 임명하고, 그녀의 제안에 따라 차후 사통당 독재의 희생자들에 대한 상담을 개선하고, 과거 비밀경찰 사무실 또는 감옥 등에 설치된 기념관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사통당 체제 하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주 차원에서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지속되었다. 과거논쟁에 논쟁이 꼬리를 무는 상황에서 주총리 마티아스 플라첵은 2011년 7월 과거검증 문제와 관련하여 개선은 약속하지만 전반적인 새로운 검증작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브란덴부르크주는 동독 시절의 판사 중에서 43%을 재임용하였고, 작센주는 48%를 재임용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과거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였었다고 강조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의 내무장관 또한 주정부가 과거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대충 넘어갔다는 비난에 대해 반박하며 다음과 같은 수치를 공개하였다.

- 고위 공무원 중에 최소한 39명이 과거 비밀경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 고위 경찰 공무원 중에는 16명이 있다.
- 1990년 이후 약 400명의 문교부 직원(교사 포함)이 해고되었고, 200명의 고용계약이 파기되었다.
- 내무부 500명 해고
- 환경부 61명 해고
- 86명의 판사와 37명의 검사가 1990년 임명 지원서를 철회하였다.

비밀경찰과 관련된 과거경력으로 인해 해고된 공무원에 관한 조사의 경우 1997년까지 브란덴부르크와 다른 신연방주를 비교해 보면 주정부의 반

박이 근거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일 이 수치를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비율, 즉 퍼센트로만 본다면 위의 표에서 본 것처럼 브란덴부르크 32%, 작센-안할트 34%, 베를린 50%, 작센 50 %로 브란덴부르크가 가장 낮다. 그러나 그 뒤에 놓여 있는 정확한 숫자를 비교하면 브란덴부르크 4,342명, 작센-안할트 5,446명, 베를린 3,806명으로 브란덴부르크에서 해고된 인원이 적은 것은 결코 아니다.

제4절 브란덴부르크주가 독일의 지속적인 과거청산에 미친 영향

브란덴부르크에서 비밀경찰과 관련된 과거경력 문제를 두고 벌어진 정치적인 논쟁은 전체 연방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의원의 과거경력에 대한 비밀경찰의 문서가 공개된 2009년부터 과거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고, 앞으로 공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과거문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특히 동독 독재정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정치에 대한 일반적이 신뢰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브란덴부르크의 사례에 대한 일반 여론의 분노는 자주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특히 비밀경찰과 관련된 과거문서로 인해 비난을 받게 된 사람들이 주로 좌파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브란덴부르크의 특별한 노선” 즉 화해를 강조한 정치를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사민당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 좋은 예가 연방의회의 국회의원인 토마스 노드의 비밀경찰 협조경력에 관한 조사였다. 노드 의원은 이미 그 전에 자신의 과거 경력을 공개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에 대한 논쟁이 단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에서는 브란덴부르크의 사례를 이유로 사통

당 독재 청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첨예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슈타지 문서에 관한 법이 여덟 번째 개정되었다. 이 개정 작업은 브란덴부르크주 의회에서 진행된 조사위원회와 11번째 의원법 개정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 결과 브란덴부르크의 앙케이트 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여해서 증언한 전문가들이 연방의회의 공개 토론회에 또 다시 참석해서 이야기를 반복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23]

브란덴부르크주는 특수한 경우지만, 사회통일민주당 독재 청산이라는 과제가 얼마나 복합적인 문제인지를 잘 보여준다. "브란덴부르크 노선"은 다른 한편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과거 청산뿐만 아니라 기존 간부급 인사들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명백히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이다.

23 동독 슈타지 문서법(StUG) 개정을 위한 8번째 법안 초안 (문서번호 97).
동독 슈타지 문서법(StUG) 개정을 위한 8번째 법안 초안을 놓고 연방의회 심의 (문서번호 98).
동독 슈타지 문서법(StUG) 개정을 위한 8번째 법안 초안-사민당과 녹색연합의 개정 제안 (문서번호 99).
그 외 (문서번호 100-106, 55-59 참조).

제4장

기타 기관들

제1절 연방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독재청산재단)

독일연방하원 산하 조사위원회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정권 자체와 그것이 독일통일에 끼친 영향을 조사했다.[24] 그리고 1992년 10월 29일과 1994년 7월 1일 사회주의통일당 불법행위청산법(SED-Unrechtsbereinigungsgesetz)[25] 제1호와 제2호를 제정하였다. 이 법을 근거로 동독체제에서 행해진 부당한 판결을 무효화하고, 독재정권 피해자가 감금에 대한 보상 및 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며,[26] 직업 및 연금수령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27]

나아가 1998년 6월에 연방의회는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연방 사회주

24 앙케이트 위원회(Enquête-Kommission) (문서번호 40).

25 원명 "가입지역의 비법치국가적 처벌행위의 희생자에 대한 복권 및 보상법"(Gesetz über die Rehabilitierung und Entschädigung von Opfern rechtsstaatswidriger Strafverfolgungsmaßnahmen im Beitrittsgebiet).

26 형사복권법(가입 지역(구 동독 지역)에서 反법치적 형사소추를 당한 희생자의 복권과 보상에 관한 법) (Strafrechtliches Rehabilitierungsgesetz-StrRehaG) (문서번호 34).

27 행정복권법(가입 지역(구 동독 지역)에서의 反법치적 행정결정 무효화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권) (Verwaltungsrechtliches Rehabilitierungsgesetz-VwRehaG) (문서번호 35).
직업복권법 (가입 지역에서의 정치적 박해 희생자의 직업적 불이익 해소에 관한 법) (Berufliches Rehabilitierungsgesetz-BerRehaG) (문서번호 36).

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독재청산재단) 설립을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28] 독재청산재단의 목적은 동독 역사와 관련한 지속적 작업이 촉진되어 과거청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독재청산재단의 운영비는 주로 연방 예산에서 받으며, 재단의 자본은 대부분 독일 연방채에 투자된다.

제2절 잘츠기터 "국경 폭력행위 기록 및 해명을 위한 주(州)법무관리 중앙등록처"

서독에는 1961년 11월부터 잘츠기터에 "국경 폭력행위 기록 및 해명을 위한 주(州)법무관리 중앙등록처"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국경에서의 살인, 구 동독 정치범에 대한 정치판결 및 전횡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동독은 이 기관의 폐쇄를 계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서독 내의 정치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은 1992년까지 존속하였다. 1990년 3월에는 동독 과도정부 각료회의 대표단이 업무 정보를 얻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1992년 폐쇄될 때까지 이 등록처에는 약 4만 2천 건의 폭력행위가 기록되어 있었다.[29]

통일 이후 잘츠기터 중앙등록처의 존재가 동독의 지도부에 일정한 부담이 되었던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인민군 병사들에게도 이 기구의 존재가 알려져 있었다고 증언한 사람도 있다. 그 사실은 국경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동독 주민이 사살되었을 때 총격을 가한 국경수비대 병사의 이름을 장벽 너머로 전달해 주던 군인의 행동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중앙등록처의 책임자가 인터뷰에서 설명하였다.

---

28 사통당 독재청산 재단 설립에 관한 법 (문서번호 42).

29 구 동독 범죄와 관련된 서독 문서보관소의 문서, 동 베를린 정치 선전원들에 의해 요구 (문서번호 112).
연방주 법무행정청의 중앙조사처 (문서번호 113).
"구 동독 비법치정권의 범죄에 대한 학술적 고찰"-니더작센 주의회의 결의 (문서번호 114).
"중앙 증거 및 문서관리국의 과업 완수" (문서번호 105).

※내용 CD 참조

*부록–2013년 연방정부 과거청산 보고서

독일 연방정부는 2013년에 "사통당–독재청산 현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연방의회의 인쇄물 17/12115[30]로 일반에 공개된 이 보고서는 과거청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기관들이 과거청산작업을 위해 도입되었고 각 기관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여주는 이 보고서가 독일 정부 예산으로 진행된 과거청산 작업에 관한 실질적인 백서라고 할 수 있다.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9 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상세한 목차로 시작된다. 이 목차를 통해서도 현재 독일의 어떤 기관들이 과거청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먼저 연방수상청의 문화 언론 담당 차관 베른트 노이만의 권두사로 시작된다. 문화와 교육 관련 정책이 각 연방주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독일 연방제의 특성상 연방정부에는 문화부가 없다. 단지 연방수상실에 차관급의 문화 담당 특임관직이 있을 뿐이다. 현재 과거청산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업무는 연방수상청 문화특임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연방의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총 15장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문(13쪽)
- 사통당–독재청산의 필요성
- 사통당–독재청산 업무

  연방정부

  연방주

2. 청산작업의 기반과 변천(14쪽)
- 1989년 동독의 평화적 혁명과 1990년 독일통일

[30] (문서번호 116).

- 비밀경찰문서의 처리
- 독재 희생자의 복권과 보상
- 연방의회의 과거청산작업 사통당–독재에 관한 앙케이트 위원회
- 기념관에 관한 연방정부의 구상과 2008년까지의 진척
- 평화와 통일–2009/2010년 평화적 혁명과 통일의 기념

3. 희생자의 복권과 보상(19쪽)

- 형사법적 복권법
- 행정법적 복권법
- 직업 복권법
- 연방보훈법에 따른 희생자 보상
- "1949년과 1990년 사이 동독의 보육원생"을 위한 기금

4. 희생자 단체(21쪽)

- 공산주의 폭력지배 희생자 단체 협의회
- 스탈린주의 희생자 협회

5. 상담기관(24쪽)

- 사통당 불법 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전국적인 상담 프로그램
- 동독 보육원 희생자를 위한 전담기구와 상담시설
- 사통당 불법행위 피해자를 위한 연방주의 상당 프로그램 사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헤쎈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니더작센

  작센

작센–안할트
튜링겐
튜링겐의 상담 이니셔티브

6. 신연방주에서의 미해결된 소유권 문제와 반환(26쪽)

7. 형사법적 청산(26쪽)

8. 사회적 청산과 정치교육(27)

- 사통당–독재 청산을 위한 연방재단(연방독재청산재단)
  - 연방 독재청산재단의 설립과 구조
  - 재단의 업무
- 연방정치교육원
  - 1989년 이후 연방정치교육원의 업무
  - 사통당–독재청산에 관한 연방정치교육원의 프로그램
- 구 동독 비밀경찰 문서를 위한 연방특임관
  - 연방특임관실 구조
  - 비밀경찰 문서법의 변천
  - 비밀경찰 문서의 활용
  - 비밀경찰 문서특임관실에서 진행하는 정치교육
  - 문서고와 정보실
- 연방주의 정치교육원들(40)
- 구 동독 비밀경찰 문서 담당 연방주 특임관
  - 상담
  - 정치교육 및 홍보
  - 연구

- 청소년 정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프로그램과 행사의 사례

  민주주의와 관용을 위하여–극단주의에 반대
- 동독역사에 관한 학교 수업
- 역사적 증인을 위한 조정실

9. 학술적 청산(45쪽)

- 현대사 연구소(뮌헨, 베를린)
- 자유대학교 사통당 국가 연구센터 연구프로젝트 "동서독 국경의 희생자"
- 드레스덴 대학의 독재주의 연구를 위한 한나 아렌트 연구소
- 포츠담 현대사 연구센터
- 구 동독 비밀경찰 문서를 위한 연방특임관
- 포츠담 군사역사 연구청
- 현대 독일–러시아 관계 연구를 위한 공동 위원회(독일–러시아 역사위원회)
- 연방문서국의 독일정책 문서 편집팀

10. 추모관과 기억의 현장(51쪽)

10–1 분단과 국경

- 쉬플러스그룬트 국경박물관, Asbach/Sickenberg

  역사적 현장

  박물관의 설립과 발전

  전시

  교육사업
- 베를린 장벽 재단
- 베를린 장벽 추모관
- 마리엔펠데 임시수용소 기념관

전시

연구

행사

시대적 증인의 증언 사업

교육사업

홍보업무

- 체크포인트 브라보(드라이린데 국경검문소)와 구 드레비쯔 국경검문소
- 포인트 알파 기념관, 게이사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전시

  연구

  교육사업

- 마리엔본 독일분단 기념관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전시

  방문객 수

- 뫼들라로이트 독-독 박물관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전시

  소장품

  교육사업

  방문객 수

- 아이히펠트 국경박물관 협회, 타이숭겐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전시

교육사업

10–2 감시와 억압

- 소련군의 특별수용소에 관한 설명
- 바우젠 추모관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전시

  소장품

  연구

  교육사업
- 베를린–쇤하우젠 추모관 재단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전시

  소장품

  연구

  행사

  시대적 증언 사업

  교육사업

  방문객 수
- 베를린 노르만슈트라세 1번지 비밀경찰 박물관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전시
- 브란덴부르크 형무소 자료실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 코트부스 형무소 추모관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 드레스덴 바우젠슈트라쎄 추모관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전시

  소장품

  연구

- 드레스덴 뮌헨광장 추모관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전시

  소장품

  연구

- 에어푸르트 안드레아스슈트라쎄 추모교육관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 1933년부터 1989년 정치적 폭력의 지배 희생자 추모 및 자료관, 프랑크푸르트 오더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 케첸도르프 추모관–퓨어스텐발데 소련군 특수수용소 5호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 게라 토어하우스 추모 및 교류관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 할레 로터 옥세 추모관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전시

소장품

- 호엔에크 여자형무소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전시

시대적 증인 사업

- 얌리츠/리버로제 자료실–소련군 특별수용소 6호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 라이프치히 비밀경찰 벙커 기념관과 "룬덴에크"의 추모박물관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전시

소장품

연구

행사

교육사업

- 막데부르크 모리츠 광장 추모관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전시

시대적 증인 사업

교육사업

- 뮬베르크 추모관–소련군 특별수용소 1호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 퓐프아이헨 추모관–노이브란덴부르크 소련군 특별수용소 9호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교육사업

- 작센하우젠 박물관 및 추모관–오라니엔부르크 1번지/소련군 특별수용소 1호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교육사업

- 포츠담 라이스티코프슈트라쎄 추모관 및 교류관 재단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 포츠담 린덴가 54/55번지, 20세기 정치적 폭력 희생자를 위한 추모관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전시

- 로스톡 추모관 및 자료실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전시

- 독일에서 있었던 독재의 희생자를 위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자료센터, 슈베린

  역사적 현장

  설립과 발전

- 토어가우 자료실 및 홍보관
  - 역사적 현장
  - 설립과 발전
  - 전시
  - 소장품
  - 교육사업
- 부헨발트 추모관–소련군 특별수용소 2호
  - 역사적 현장
  - 설립과 발전
  - 전시
  - 소장품
  - 교육사업

11. 박물관 (89쪽)

- 독일연방공화국 역사관 재단
  - 본의 상설전시
  - 라이프치히 상설전시
  - 트렌넨팔라스트(눈물의 성), 베를린
  - 베를린 문화양조장의 상설전시 계획
  - “소련군점령지역과 동독의 억압의 현장” 인터넷 포털
  - 교체 전시
- 독일 역사박물관
  - 특별전시
  - 특별전 부대 프로그램
  - 상설전시
- 드레스덴 연방군 군사사 박물관
  - 상설전시

교체 전시

베를린–가토 비행장

- 베를린–칼스호스트 독–러 박물관
- 독일 역사의 자유운동을 위한 기념관, 라스타트

전시

교육사업

- 비스코프 예술 아카이브: 동독 체제 찬양 예술의 역사
- 베를린 동독박물관 유한회사
- 장벽 박물관–베를린 체크포인트 찰리 박물관
- 아이젠휴텐슈타트 동독 일상사 자료실 협회
- 포츠하임 망각하지 않기 위한 협회–동독사 자료 수집

12. 아카이브 (97쪽)

- 연방문서국 및 연방문서국의 동독 정당과 대중조직의 아카이브를 위한 재단
- 구 동독 비밀경찰문서를 위한 연방특임관

비밀경찰문서 특임관실의 아카이브

- 소련군 점령지역 및 동독의 억압사와 저항사의 자료실–드레스덴 자료실

설립과 발전

- 로베르트–하베만 협회, 동독 반체제 아카이브

아카이브

- “마티아스 도마쉬크” 현대사를 위한 튜링겐 아카이브, 예나
- 라이프치히 시민운동을 위한 아카이브협회
- 시민저항과 비폭력을 위한 마틴–루터–킹–센터협회–남서작센지역 시민운동 아카이브

교육사업

13. 기념상과 추모비 (105쪽)

- 베를린 장벽 추모관의 기념상
- 플라우엔 자유상
- 베를린 자유와 통일상
- 라이프치히 자유와 통일상
- 기념비탑

베를린, 11989/90년 평확적 혁명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기념탑

베를린 외곽 순환도로 장벽의 희생자를 위한 기억의 탑

베를린, “백십자가(바이쎈크로이쯔)”

라이프치히, 평화적 혁명의 현장들

포츠담, 국경을 기억하기 위한 탑

14. 결산 (108쪽)

15. 부록 (110쪽)

- 연방문서국과 동독 정당과 대중조직의 문서재단의 자료 현황

동독 정당과 대중조직의 문서재단의 자료

동독실 자료현황

군사 아카이브실 현황

B실에 속한 문서

16. 약어 (114쪽)

독일통일 총서 7

과거청산분야 관련 정책문서

과거청산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 당중앙문서보관소(Zentrales Parteiarchiv, ZPA)의 문서파기	1997년 1월 4일	연방하원	Deutscher Bundestag(Hrsg.) Materialien der Enquete–Kommission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ß der Deutschen Einheit“ : (13. Wahlperiode des Deutschen Bundestages); acht Bände In 14 Teilbänden–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S. 1293–1295
2	슈타지 문서법(Stasi–Unterlagen–Gesetz, StUG)과 슈타지 문서관리청(BStU)	2009년	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슈타지 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98–105
3	슈타지 문서법 제32조–국가안전부 활동의 청산을 위한 슈타지 문서 사용에 관한 지침(2010년 2월 26일 기준)		슈타지 문서관리청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슈타지 문서법(StUG)
4	슈타지 문서법 제33조–절차 관련 지침(2007년 3월 1일 기준)		슈타지 문서관리청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슈타지 문서법(StUG)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	슈타지 문서법 제32a조–통보 관련 지침(2007년 3월 1일 기준)		슈타지 문서관리청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슈타지 문서법(StUG)
6	슈타지 문서법 제34조–언론, 방송, 영화에서의 문서 사용 관련 지침(2007년 3월 1일 기준)		슈타지 문서관리청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슈타지 문서법(StUG)
7	제3장 : 국가안전부 문서의 이용 제1절 당사자, 제3자, 국가안전부 직원, 특혜자의 권리	1993년	슈타지 문서관리청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Geiger, Hansjörg/Klinghardt, Heinz. 1993. Stasi–Unterlagen–Gesetz mit Erläuterungen für die Praxis. Köln: Deutscher Gemeindeverlag, S. 62–84.
8	제3장 : 국가안전부 문서의 이용 제2절 공공기관 및 비공공기관의 국가안전부 문서 이용	1993년	슈타지 문서관리청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Geiger, Hansjörg/Klinghardt, Heinz. 1993. Stasi–Unterlagen–Gesetz mit Erläuterungen für die Praxis. Köln: Deutscher Gemeindeverlag, S. 84–13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9	제3장 : 국가안전부 문서의 이용 제3절 정치적·역사적 청산을 위한 국가안전부 문서 이용 및 신문과 방송에 의한 국가안전부 문서 이용	1993년	슈타지 문서관리청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Geiger, Hansjörg/Klinghardt, Heinz. 1993. Stasi-Unterlagen-Gesetz mit Erläuterungen für die Praxis. Köln: Deutscher Gemeindeverlag, S. 134-143.
10	로젠홀츠 데이터	2003년 7월	슈타지 문서관리청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Schwan, Heribert/Heindrichs, Helhard. 2005. Das Spinnennetz. Stasi-Agenten im Westen: Die geheimen Akten der Rosenholz-Datei. München: Ventura Publisher im Verlag, S. 55-63 http://www.bstu.bund.de/cln_012/nn_712830/DE/MfS-DDR-Geschichte/Aktenfunde/Rosenholz/rosenholz_node.html_nnn=true 2010년 6월 20일
11	슈타지 문서관리청(Stasi-Unterlagen Behörde)조직도 (2009년 3월 기준)		슈타지 문서관리청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92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2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에 대한 안내, 열람 및 반출 신청서	2009년 3월	슈타지 문서관리청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http://www.bstu.bund.de/cln_012/nn_715154/DE/Akteneinsicht/Erlaeuterungen-fuer-Privatpersonen/Antragsformular/antragsformular__pdf,templateId=raw,property=publicationFile.pdf/antragsformular_pdf.pdf 2010년 6월 12일
13	신청서 및 요청서 접수 건(2009년 3월 기준)		슈타지 문서관리청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131
14	신청서 및 요청서 처리(2009년 3월 기준)		슈타지 문서관리청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132
15	징역형(刑)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요청서(2009년 3월 기준)		슈타지 문서관리청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137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6	슈타지 문서법(StUG) 제32조와 제34조에 의거한 신청서 접수와 처리(2009년 3월 기준)		슈타지 문서관리청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138
17	신청자 유형–보고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2009년 3월 기준)		슈타지 문서관리청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139
18	주민 설문조사의 통계 분석 및 이전 설문조사와의 비교	2009년 3월	슈타지문서관리청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134
19	1945년부터 1990년 독일 통일까지의 연대기	1945–1990년	연대기	Gieseke, Jens. 2000. Die DDR–Staatssicherheit, Schild und Schwert der Partei.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S. 104–117
20	법적기반–통일조약 제8조, 형법시행법(EGStGB) 제315조–제315c조, 형법(StGB) 제2조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정부,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연방하원	BGBl. 1990 II, S. 889. BGBl. I, S. 2288. BGBl. I, S. 3322.
21	시효 문제–주법무장관 회의의 결의사항	1991년 11월 5–6일	주법무장관들	1991년 11월 5일, 6일 주법무장관 추계 회의 결의사항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2	SED(사통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효정지법 (VerjährungsG)	1993년 3월 26일	독일연방하원, 바이체커(Weizsäcker) 연방대통령, 헬무트 콜(Helmut Kohl) 연방총리, 로이트호이서-슈나렌베르거(Leuchtheusser-Schnarrenberger) 연방법무장관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3, Teil I
23	공소시효 소멸기간 연장법(2. VerjährungsG)	1993년 9월 29일	독일연방하원, 바이체커(Weizsäcker) 연방대통령, 헬무트 콜(Helmut Kohl) 연방총리, 로이트호이서-슈나렌베르거(Leuchtheusser-Schnarrenberger) 연방법무장관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51, S. 1657
24	동독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주법무장관 회의의 결의사항	1991년 6월 4-6일	주법무장관, 연방총리, 각 연방주 총리, 베를린시 법무장관	1991년 제62차 주법무장관 회의 결의사항
25	장벽-국경 초병의 사살행위에 대한 첫 번째 판결	1992년 1월 20일	베를린 주법원	JuristenZeitung(JZ), Jahrgang 1993, Tübingen: J.C.B. Mohr(Paul Siebeck), S. 691- 696
26	검찰 공소장(요약본)	1992년 11월 30일	새프겐(Schaefgen) 고등검사, 프란츠-헤르만 브뤼너(Franz-Hermann Brüner) 고등검찰청 정권범죄수사본부 고등검사, 헤르비히 그로스만(Herwig Großmann) 고등검사, 베른하르트 얀츠(Bernhard Jahntz) 정권범죄수사본부장, 베를린주법원 배심제재판부	Peter Richter, 1993, Kurzer Prozeß: Honecker & Genossen-ein Staat vor Gericht? Berlin: Elefanten-Press, S. 145-155.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7	케슬러, 슈트렐레츠, 알브레히트의 헌법소원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사통당 정권의 정권범죄 가벌성	1996년 10월 24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Beschlus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 den Verfassungsbeschwerden am 24. Oktober 1996
28	연방재판소의 상고심 판결–샤보프스키, 클라이버, 크렌츠	1999년 11월 8일	연방재판소(BGH)	Redaktion „Neue Justiz “ (Hrsg.). 2001. Der Politbüro–Prozeß: Eine Dokumentation. Baden–Baden: Nomos, S. 509– 539
29	인간 존엄성 침해로 인한 형사소송 중지–호네커 사건	1993년 1월 12일	베를린주 헌법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1993년 1월 12일
30	사통당 정권과 관련한 1989년 가을 이후의 사법적 청산과 그 한계		각 연방주 법무장관, 베른하르트 얀츠(Bernhard Jahntz) 정권범죄수사본부장 겸 제2 베를린주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Bernhard Jahntz. Die Strafrechtliche Aufarbeitung des SED–Regimes seit dem Herbst ‘89 und ihre Grenzen. http://www.fes.de/magdeburg/pdf/d_27_10_5_3.pdf
31	동독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사실과 통계		법무부, 정권범죄수사본부, 신연방주 검찰청의 중점수사부	Klaus Marxen/Gerhard Werle/Petra Schäfter(Hrsg.). 2007. Die Strafverfolgung von DDR–Unrecht: Fakten und Zahlen. Berlin: Gutendruck.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32	사통당 정권 희생자 분류		“사통당 독재의 역사와 잔재 청산” 조사위원회	Bericht der Enquete–Kommission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 Drucksache 12/7820. S. 229–233.
33	복권법(Rehabilitierungsgesetz)		독일연방하원	http://de.wikipedia.org/wiki/Rehabilitation.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4	형사복권법(가입 지역(구 동독 지역)에서 反법치적 형사소추를 당한 희생자의 복권과 보상에 관한 법) (Strafrechtliches Rehabilitierungsgesetz–StrRehaG)	1992년 10월 29일 –최근 개정 2007년 12월 13일	연방하원	연방법무부
35	행정복권법(가입 지역(구 동독지역)에서의 反법치적 행정결정 무효화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권) (Verwaltungsrechtliches Rehabilitierungsgesetz–VwRehaG)	1994년 6월 23일–최근 개정 2009년 6월 25일	연방하원	연방법무부
36	직업복권법(가입 지역에서의 정치적 박해 희생자의 직업적 불이익 해소에 관한 법) (Berufliches Rehabilierungsgesetz–BerRehaG)	1994년 6월 23일–최근 개정 2007년 8월 21일	연방하원	연방법무부
37	희생자 연금(Opferrente) 신청서		베를린주 보건복지청	www.berlin.de/lageso/versorgung/antraege/ . 베를린주 보건복지청.
38	행정복권법(VwRehaG)에 의거한 무효화, 또는 反법치성 확정 신청서/직업복권법(BerRehaG)에 의거한 직업적 복권 신청서		베를린주 보건복지청	www.berlin.de/lageso/versorgung/antraege/ . 베를린주 보건복지청.
39	수감자지원법(HHG), 형사복권법(StrRehaG), 행정복권법(VwRehaG)에 의거한 상해 피해자 원호금 (Beschädigtenversorgung) 신청서		베를린주 보건복지청, 베를린 원호청	www.berlin.de/lageso/versorgung/antraege 베를린주 보건복지청, 베를린 원호청
40	앙케이트 위원회(Enquête–Kommission)		연방하원	Weidenfeld, Werner und Korte, Karl–Rudolf(Hrsg.). 1999.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1949–1989–1999.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S. 330–342.
41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사통당 독재 잔재 극복" /조사위원회 중간보고서– "역사청산과 사통당 독재 결과 청산을 위한 독립적 공공 연방재단 설립" 에 관한 중간보고	1997년 9월 25일	조사위원회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사통당 독재 잔재 극복"	Materialien der Enquete–Kommission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ß der deutschen Einheit". S. 60–75.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2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설립에 관한 법		독일연방하원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8 Teil I Nr. 33.
43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정관	2000년 10월 23일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재단 이사회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활동보고서 (Tätigkeitbericht der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1998-2001.
44	사통당 독재청산재단의 지원 원칙	2007년 1월 1일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http://bundesstiftung-aufarbeitung.de/downloads/pdf/2010/foerdergrundsaetze.pdf.
45	사통당 독재청산재단의 재정 조달	1998-2008년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활동보고서 (Tätigkeitbericht der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1998-2008
46	사통당 독재청산재단의 구조와 사업 분야	1998-2008년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활동보고서 (Tätigkeitbericht der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1998-2001.
47	베를린-호헨쇤하우젠(Berlin-Hohenschönhausen) 기념재단	1998-2008년	베를린-호헨쇤하우젠 기념재단	http://www.stiftung-hsh.de/index.php.
48	희생자단체	1998-2008년	사통당 희생자와 희생자단체를 위한 상담소	http://bundesstiftung-aufarbeitung.de/service_wegweiser/beratungsangebote.php.
49	브란덴부르크 과거청산담당관법(BbgAufarbBG)	2009년 7월 7일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브란덴부르크 연방주의 규정체계 (BRAVORS).
50	공산주의 독재의 결과 청산을 위한 브란덴부르크주 특임관(LAkD) 울리케 포프의 선거 추천	2009년 12월 15일	브란덴부르크 총리청, 정부대변인 게르린데 크라네르트.	브란덴부르크 총리청(http://www.stk.brandenburg.de 2011.06.14 기준).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1	브란덴부르크 청산특임관법의 개정을 위한 법	2010년 2월 17일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기록문 "PARLDOK" (http://www.parldok.brandenburg.de/parladoku/w5/drs/ab_0400/457.pdf, 2011.06.20 기준).
52	브란덴부르크주 지방 대표단체 구성원 및 지방 선거공무원을 상대로 동독 슈타지에 대한 협력 여부를 검증하도록 권고	2010년 9월 15일	공산주의 독재의 결과 청산을 위한 브란덴부르크주 특임관(LAkD).	브란덴부르크주/주특임관(LAkD) (http://www.aufarbeitung.brandenburg.de, 2011.06.24 기준).
53	주특임관를 통한 기부금 위탁	2010년 11월 14일	공산주의 독재의 결과 청산을 위한 브란덴부르크주 특임관(LAkD).	브란덴부르크주/주특임관(LAkD) (http://www.aufarbeitung.brandenburg.de, 2011.06.24 기준).
54	"희생자들을 하나로 모으고, 희생자들의 고립된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져야 한다" (브란덴부르크주 특임관(LAkD)의 과업 및 실무에 대한 기고문)	2011년 3월 1일	라이너 포트라츠(브란덴부르크주 문서보관서), 주특임관(LAkD).	브란데부르크주 문서보관서(브란덴부르크주 문서보관서 보고서와 통지문, 28/2011, 발행 브란덴부르크주 문서보관서. 포츠담 2011).
55	제11차 국회의원법 개정법(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 녹색연합 초안	2009년 10월 21일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녹색연합.	브란덴부르크 의회 기록시스템 (PARLDOK-BB).
56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의원 검증법(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 기민당 초안	2009년 12월 2일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기민당 원내교섭단체.	브란덴부르크 의회기록 시스템 (PARLDOK-BB).
57	제11차 의원법 개정법(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 브란덴부르크주 최고위원회-공개청문회	2010년 1월 13일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최고위원회 A1, 몇몇 전문가.	브란덴부르크 의회 기록시스템 (PARLDOK-BB).
58	제11차 의원법 개정법(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최고위원회-의결제안 및 보고서	2010년 1월 19일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최고위원회 A1.	브란덴부르크 의회기록시스템 (PARLDOK-BB).
59	제11차 의원법 개정법(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 브란덴부르크주	2010년 1월 21일	브란덴부르크주.	브란덴부르크주 법공보 및 규정공보, 21년차, 3번.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0	브란덴부르크주 의원 검증에 대한 논쟁	1991년 11월 27일	유스트 의원(사민당), 디스텔 박사(기민당), 푹스(자민당), 슈만 교수(민주사회당/좌파), 노케(녹색연합), 주지사 슈톨페 박사(사민당).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제 1차 회기, 제30차 회의, 총회 프로토콜 2,230~2,245페이지.
61	브란덴부르크주 의회–주지사 만프레드 슈톨페의 동독 슈타지 공조에 대한 조사위원회 1/3 최종보고서	1994년 5월 30일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주지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 의회 기록집 (http://www.parldok.brandenburg.de/parladoku//w1/drs/ab_3000/3009.pdf, 2011.08.11 기준).
62	브란덴부르크주 의회–주지사 만프레드 슈톨페의 동독 슈타지 공조에 대한 조사위원회 1/3 최종보고서 녹색연합의 소수의견	1994년 5월 18일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주지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 의회 기록집 (http://www.parldok.brandenburg.de/parladoku//w1/drs/ab_3000/3009.pdf, 2011.08.11 기준).
63	슈톨페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결의제안	1994년 6월 16일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조사위원회 1/3, 볼프강 비르틀러, 페터 미하엘 디스텔, 지그프리드 리츠만, 미하엘 슈만, 롤프 베트슈테트.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발행물 1/3098.
64	"만프레드 슈톨페의 인민소유 경영체제" 브란덴부르크의 연방주개발회사(LEG)에 연루	2001년 8월 1일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조사위원회 LEG.	베르그 슈테판, 2001년, 만프레드 슈톨페의 인민소유 경영체제. 슈피겔 32/2001. 42~43 페이지.
65	"앙케이트 위원회 감정서: 슈톨페는 동독 슈타지와의 접촉을 이유로 의석을 잃어야만 했었다"	2011년 6월 12일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알렉산더 프뢸리히, 2011년. 앙케이트 위원회 감정서. 슈톨페는 동독 슈타지와의 접촉을 이유로 의석을 잃어야만 했었다. 포츠담 최신 뉴스 2011.06.12.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6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토지 문제 및 공공 발주 비정규성에 대한 조사위원회 1/5의 중간보고서	1994년 6월 14일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의회 조사위원회 1/5, 시 개발부, 주거교통부(MSWV), 요헨 볼프 장관, 시건설을 위한 주개발협회, 브란덴부르크주 주거와 교통(LEG), 부동산업자 악셀 힐퍼트.	브란덴부르크 의회 기록집 (http://www.parldok.brandenburg.de/parladoku//w1/drs/ab_3000/3012.pdf, 2011.08.02 기준).
67	"슈빌로프 호수의 공중누각 주인" –악셀 힐퍼트	2011년 6월 11일	브란덴부르크주, 악셀 힐퍼트.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 2011년 6월 11일 자.
68	"슈빌로프 호수의 조용한 전원경치" 악셀 힐퍼트, 브란덴부르크 시골뜨기에 대한 혐의	2011년 6월 13일	브란덴부르크주, 악셀 힐퍼트.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 2011년 6월 13일 자.
69	"브란덴부르크에서 동독 슈타지 적발, 주의회 부의장 사임" 겔린데 슈토브라바와 레나테 아돌프	2009년 11월 30일	겔린데 슈토브라바, 레나테 아돌프.	슈피겔 온라인, 2009년 11월 30일, 15시 59분. URL–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664299,00.html(2011.08.02).
70	동독 슈타지 공조에 대한 게르린데 슈토브라바의 성명	2009년 12월 1일	게르린데 슈토브라바,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게르린데 슈토브라바 홈페이지, URL–http://www.gerlindestobrawa.de/fileadmin/lcmskarinniederstrasser/Gerlinde_Stobrawa/pdf/biographie/bstu/Erklaerung_Gerlinde_Stobrawa.pdf(2011.08.02).
71	"새로운 동독 슈타지 스캔들, 포츠담 좌파 압박" –미하엘 루트하르트	2009년 12월 2일	미하엘 루트하르트, 브란덴부르크 사민당–민주사회당 연정.	슈피겔 온라인, 2009년 12월 2일, 14시 07분. URL–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664776,00.html(2001.08.1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72	“플라첵, 사회통일민주당 유산과 화해할 것을 촉구”	2009년 10월 31일	마티아스 플라첵.	슈피겔 온라인 2009년 10월 31일, 15시32분. URL-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658493,00.html(2011.08.06).
73	“좌파 대표 토마스 노르트는 자신이 동독 슈타지 간부였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회의로부터 검증 절차를 거친 유일한 간부였다.”	2011년 3월 3일	연방의회, 의원 토마스 노르트.	베를리너 차이퉁, 2011년 3월 30일 자.
74	연방의회 의원 토마스 노르트의 동독 슈타지 검증 과정 보고서	2011년 7월 5일	독일연방의회, 선거조사위원회, 면책특권 및 국회법(제1위원회).	독일연방의회 기록 및 정보시스템(http://dipbt.bundestag.de/dip21/btd/17/064/1706436.pdf, 2011.07.30 기준).
75	“ ‘브란덴부르크 노선’ 은 프로이센 전통의 재수용이다” 알렉산더 가우란트	2011년 7월 10일	브란덴부르크주, 알렉산더 가우란트.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 2011년 7월 10일 자.
76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내에 앙케이트 위원회 설치 제안	2010년 3월 9일	기민당, 자민당, 녹색연합의 원내교섭단체 의원들.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제5차 회기, 간행물 5/554. http://www.landtag.brandenburg.de/sixcms/media.php/5701/554.pdf
77	브란덴부르크 사회통일민주당 청산 관련 앙케이트 위원회(EK5/1) 사민당과 녹색연합 발의 확장 제안	2010년 3월 16일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사민당과 녹색연합 원내교섭단체.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http://www.landtag.brandenburg.de, 2011.06.26 기준).
78	“조직화된 망각” –브란덴부르크 앙케이트 위원회에 대해	2010년 4월 1일	브란덴부르크 – 숨겨진 동독 슈타지 연루 문제를 다루는 앙케이트 위원회.	슈테판 베르크/페터 벤지르스키, 2010년. 조직화된 망각. 슈피겔, 4/2010, 36–38 페이지.
79	앙케이트 위원회 2번째 회의 프로토콜	2010년 8월 30일	“역사 극복 및 사회통일민주당 독재 결과 청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주의 민주법치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앙케이트 위원회, 2010년 7월 9일 회의.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제5차 회기, P–EK 5/2. http://www.landtag.brandenburg.de/sixcms/media.php/5701/2.pdf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80	앙케이트 위원회 3번째 회의 프로토콜	2010년 9월 27일	“역사 극복 및 사회통일민주당 독재 결과 청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주의 민주법치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앙케이트 위원회, 2010년 8월 27일 회의.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5번째 선임기간, P–EK 5/3. http://www.landtag.brandenburg.de/sixcms/media.php/5701/3.15591804.pdf
81	앙케이트 위원회 4번째 회의 프로토콜	2010년 11월 29일	“역사 극복 및 사회통일민주당 독재 결과 청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주의 민주법치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앙케이트 위원회, 2010년 9월 24일 회의.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제5차 회기, P–EK 5/4. http://www.landtag.brandenburg.de/sixcms/media.php/5701/4.15596114.pdf
82	앙케이트 위원회 7번째 회의 의결 프로토콜	2011년 2월 23일	“역사 극복 및 사회통일민주당 독재 결과 청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주의 민주법치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앙케이트 위원회, 2011년 1월 21일 회의.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제5차 회기, P–EK 5/1–7,. http://www.landtag.brandenburg.de/sixcms/media.php/5701/Beschlussprotokoll%207.%20Sitzung%20EK%205_1%2021.01.2011%20inkl.%20Anlage.pdf
83	앙케이트 위원회 10번째 회의 프로토콜	2011년 6월 28일	“역사 극복 및 사회통일민주당 독재 결과 청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주의 민주법치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앙케이트 위원회, 2011년 5월 20일 회의.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제5차 회기, P–EK 5/10, http://www.landtag.brandenburg.de/sixcms/media.php/5701/Protokoll%2010.%20Sitzung%20EK%205_1_20.05.2011%20inkl.%20Anlagen.pdf
84	사회통일민주당 평가를 위한 브란덴부르크 앙케이트 위원회(EK 5/1) 인물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의견서(뤼디거/카텐후센)	2011년 6월 1일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기셀라 뤼디거, 한스 크리스티안 카텐후센.	브란덴부르크 의회기록시스템 (PARLDOK–BB, 2011.07.26).
85	“브란덴부르크–베를린 야당: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도 동독 슈타지와의 관련 여부를 검증해야 함”	2011년 7월 21일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야당(기민당, 자민당, 녹색당).	메쯔너, 토르스텐 2011. 야당: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도 동독 슈타지와의 관련 여부를 검증해야 함. 포츠담 새로운 뉴스, 2001년 7월 21일, 16 페이지.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86	브란덴부르크주지사 마티아스 플라첵에게 동독 슈타지 전문가 크리스티안 부스가 보낸 공개서한	2011년 7월 25일	크리스티안 부스가 마티아스 플라첵에게.	포츠담 새로운 뉴스, 2011년 7월 25일.
87	"브란덴부르크 정당들은 침묵 카르텔을 형성했다" 브란덴부르크 정당 및 사회통일민주당 독재에 관한 앙케이트 의견서에 대해	2011년 8월 1일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앙케이트 위원회, 마리오 니만, 크리스토프 부니케, 에어하르트 노이베르트.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 2011년 8월 1일, 14시 36분. URL-http://www.tagesspiegel.de/berlin/brandenburgs-parteien-bildeten-einschweigekartell/4450276.html (2011.08.02).
88	"구 동독은 모든 것을 만회했다" 브란덴부르크 정당 및 사회통일민주당 독재에 관한 앙케이트 의견서	2011년 8월 2일	브란덴부르크 정당과 과거 고찰.	메쯔거 토르스텐. 2011. 구 동독은 모든 것을 만회했다.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 2001년 8월 2일, http://www.tagesspiegel.de/berlin/die-ddr-hat-alle-eingeholt/4453480.html (2011.08.02).
89	브란덴부르크 정당의 인사 관리 영속성과 엘리트 이동 앙케이트 위원회 의견서	2011년 8월 19일	에어하르트 노이베르트, 마리오 니만, 크리스토프 부니케,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사회통일민주당 독재 청산 관련 앙케이트 위원회(EK 5/1: 앙케이트 위원회).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앙케이트 위원회.
90	"신원조회를 따질 시간은 이미 지났다." 볼프강 티어제, 동독 슈타지 기록에 대한 법원 판결에 관하여	2002년 3월 18일	볼프강 티어제.	베르그, 슈테판 2002 "신원조회를 따질 시간은 이미 지났다." 슈피겔지 12/2002, 92 페이지.
91	동독 슈타지 문서 특임관의 권한에 대한 연방총리의 조직적인 결정	2004년 12월 28일	연방총리, 문화 및 미디어 특임관,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BStU), 청산재단.	연방법률공보 2004년판 Part 1 76번.
92	동독 슈타지 문서 특임관에 관한 실케 슈토카르 폰 노이포른의 토론 기고문	2005년 1월 14일	실케 슈토카르 폰 노이포른, 녹색연합 내 연방의회 국내정책 대변인.	통일독일을 위한 독일 기록실 매거진 1/2005, 108-112 페이지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93	슈타지(Mfs)/구 동독 국가안전청(AfNS)을 위한 활동 또는 정치적 책임 문제에 대한 검증 원칙	2009년 10월 20일	독일연방의회, 선거조사위원회, 면책특권과 의원규칙(제1 위원회).	연방의회 (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01/stasi_richtlinien.pdf, 2011.07.03 기준).
94	연방의회 의원의 동독 슈타지 관련성 검증을 위한 실행협약	2009년 12월 3일	독일연방의회, 선거조사위원회, 면책특권과 의원규칙.	연방의회 (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01/absprache.pdf, 2011.07.03 기준).
95	구 동독 정치박해 피해자의 재활권 관련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4번째 법안(제4차 사회통일민주당–UnBerG)	2010년 10월 6일	독일연방의회 법위원회.	독일연방의회, 문서 및 정보시스템. (http://dipbt.bundestag.de/dip21/btd/17/032/1703233.pdf, 2011.07.27 기준).
96	동독 슈타지 문서를 위한 연방특임관의 10번째 활동 보고서(발췌본)	2011년 3월 1일	마리안네 비르틀러, 구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BStU).	http://www.bstu.bund.de/DE/Wissen/Publikationen/Publikationen/t%C3%A4tigkeitsbericht_zehnter.pdf
97	동독 슈타지 문서법(StUG) 개정을 위한 8번째 법안 초안	2011년 5월 24일	연방의회, 기민당/기사당 및 자민당 원내교섭단체.	연방의회, 발행물 17/5894 (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22/oeffentliche_Sitzungen/40_sitzung/index.html 2011.07.08).
98	동독 슈타지 문서법(StUG) 개정을 위한 8번째 법안 초안을 놓고 연방의회 심의	2011년 5월 26일	연방의회, 111회 회의.	연방의회 (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22/oeffentliche_Sitzungen/40_sitzung/index.html).
99	동독 슈타지 문서법(StUG) 개정을 위한 8번째 법안 초안 사민당과 녹색연합의 개정 제안	2011년 6월 21일	연방의회, 사민당과 녹색연합의 원내교섭단체.	연방의회, 위원회 발행물 17(22)59(신판) (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22/oeffentliche_Sitzungen/40_sitzung/index.html (2011.07.08)).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00	동독 슈타지 문서법에 대한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내무부의 입장	2011년 6월 22일	토마스 렌츠, 멕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주내무부 차관.	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22/oeffentliche_Sitzungen/40_sitzung/Stellungnahmen/Lenz.pdf
101	동독 슈타지 문서법에 대한 리하르트 슈뢰더 박사의 입장	2011년 6월 23일	리하르트 슈뢰더 박사, 구 동독 슈타지 문서 관리 특임관, 자문위원회장.	연방의회, 문화 및 미디어 위원회. 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22/oeffentliche_Sitzungen/40_sitzung/Stellungnahmen/Beirat_BstU.pdf
102	동독 슈타지 문서법에 대한 한스위르겐 가르트스카 박사의 입장	2011년 6월 24일	한스위르겐 가르트스카 박사, 베를린주 전임 정보보호 특임관(1989–2005).	연방의회, 문화 및 미디어 위원회, 위원회 발행물 17(22) 59i, 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22/oeffentliche_Sitzungen/40_sitzung/Stellungnahmen/Garstka.pdf
103	동독 슈타지 문서법에 대한 연방고등관청 특임관협회(VBOB)의 입장	2011년 6월 27일	연방고등관청 특임관협회(VBOB).	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22/oeffentliche_Sitzungen/40_sitzung/Stellungnahmen/VBOB.pdf
104	동독 슈타지 문서법에 대한 작센 추모지 재단의 입장	2011년 6월 27일	지그프리드 라이프리히, 작센 추모지 재단 대표.	연방의회, 문화 및 미디어 위원회, 위원회 간행물 17(22) 59c, 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22/oeffentliche_Sitzungen/40_sitzung/Stellungnahmen/Reiprich.pdf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05	동독 슈타지 문서법에 대한 울리케 포페의 입장	2011년 6월 27일	울리케 포페, 공산주의 독재의 결과 청산을 위한 브란덴부르크주 특임관.	연방의회, 문화 및 미디어 위원회, 위원회 발행물 17(22) 59j, 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22/oeffentliche_Sitzungen/40_sitzung/Stellungnahmen/Poppe.pdf
106	동독 슈타지 출신 직원 고용관계 소멸의 노동법적 가능성에 관한 의견서	2011년 7월 2일	연방정부, 연방문화미디어담당관(BKM)/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BStU), 요하네스 베버링.	문서관리국(BStU) (http://www.bstu.bund.de/DE/BundesbeauftragteUndBehoerde/Aktuelles/gutachten.pdf/, 2011.07.08 기준).
107	국회의원 검증을 위한 튜링겐 법	1998년 6월 26일	튜링겐주 의회.	튜링겐주 법안 및 규정 공보 GVBl 1998, 205페이지.
108	작센 안할트 의원법 개정을 위한 제11차 법안 초안	2007년 3월 16일	작센 안할트주 의회 기민당, 사민당, 자민당 원내교섭단체.	작센 안할트주 의회, 제5차 회기, 발행물 5/594, http://www.landtag.sachsen-anhalt.de/intra/landtag3/ltpapier/drs/5/d0594vbe_5.pdf.
109	바트 벨찌히시(市) 시의회 의원 및 시장에 대한 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의 결의	2011년 4월 4일	벨찌히시.	벨찌히시(http://www.stadt-belzig.de/instanz_2/belege/20_bk_2011_000008.pdf, 2011.06.20 기준).
110	구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BstU)의 문서처리 자문위원회에 대한 의사규칙	2010년 9월 6일	작센 스위스 지역구, 구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BStU).	작센 스위스-오스트에르츠게비르게 지역구(발행) 2010, URL-http://www.landratsamt-pirna.de/download/kreistag/ausfertigung_GO_BSTU-Beirat_06-09-2010.pdf(2011.07.12).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11	브란덴부르크시/지방연합-지방대표단체 구성원에 대한 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의 통지	2009년 3월 1일	브란덴부르크시/지방연합.	브란덴부르크시/지방연합(http://www.stgb-brandenburg.de/stasi_unterlagen_gesetz.html, 2011.07.07 기준).
112	구 동독 범죄와 관련된 서독 문서보관소의 문서, 동 베를린 정치 선전원들에 의해 요구	1989년 12월 20일	잘츠기터 주법무행정부 중앙조사처(ZESt), 한스 위르겐 그라제만.	슈피겔, 51호/1989.
113	연방주 법무행정청의 중앙조사처	2009년 6월 26일	고등검사 한스 위르겐 그라제만.	"독일 내 자유와 민주주의의 지역"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발행), 베른하르트 포겔, 멜라니 피펜슈나이더, 클라우스 요헨 아르놀트, 장크트 아우구스틴, 2009년 6월 29일.
114	"구 동독 비법치정권의 범죄에 대한 학술적 고찰" 니더작센주 의회의 결의	2008년 5월 20일	니더작센주 의회.	니더작센주 의회 발행물(www.landtag-niedersachsen.de, 2011.08.13 기준).
115	"중앙 증거 및 문서관리국의 과업 완수"	2008년	니더작센 검찰.	니더작센 검찰 (www.staatsanwaltschaften.niedersachsen.de, 2011.08.11 기준).
116	사통당-독재청산 현황	2013년 1월 16일		연방의회, 인쇄물 17/12115

문서 요약

문서요약(문서번호 1~116)

문서 번호 1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 당중앙문서보관소(Zentrales Parteiarchiv, ZPA)의 문서파기

1997년 1월 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하원

내용_

문서파기에 관한 보고서

1989년 11월 에리히 밀케(Erich Mielke)가 최초로 슈타지 문서를 파기할 것을 지시한 이후 슈타지가 작성한 문서가 폐기되기 시작하였다. 이 정보를 입수한 동독의 다양한 저항운동 단체들이 주민들에게 정부의 슈타지 문서 "은닉시도"를 막기 위한 감시그룹을 결성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 결과 여러 도시에서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아직 폐기되지 않은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슈타지의 폐기작업을 종결시켰다. 에리히 호네커와 귄터 샤보프스키의 사무실에 남아있던 자료들은 1990년 2월 말에 사통당 당중앙문서보관소(ZPA)로 이관되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Hrsg.) Materialien der Enquete-Kommission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ß der Deutschen Einheit" : (13. Wahlperiode des Deutschen Bundestages); acht Bände In 14 Teilbänden-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S. 1293-1295

문서 번호 2

슈타지 문서법(Stasi-Unterlagen-Gesetz, StUG)과 슈타지 문서관리청(BStU)

2009년

담당자 / 기관_ 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슈타지 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_

- 슈타지 문서관리청은 슈타지 문서법에 의거하여 명시적인 청산의 임무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청산의 임무로 인해 수백만 건의 개인 관련 문서에 대한 접근, 확인과 복권을 위한 노력 지원, 연구 및 미디어를 위한 문서 공개가 가능해졌으며, 슈타지 문서관리청 자체적으로 연구, 대외업무 및 교육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슈타지 문서관리청은 무기한 활동하도록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슈타지 문서관리청의 폐지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그 결정이 가져올 법적 결과, 청산정책 관련 결과를 검토하고, 폐지를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 다른 모든 정부문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방 문서보관법을 너무 이른 시기에 슈타지 문서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헌법적인 문제와 정보보호법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청산작업에 중요한 문서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
- 슈타지 문서와 관련하여 상이한 법 규정과 절차가 충돌할 수 있다.
-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보모음이 분산되게 된다.
- 여러 문서보관소로 분산될 경우 개인의 문서열람절차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 슈타지 문서관리청 연구원들이 문서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당한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연방의회가 제정한 슈타지 문서법의 엄격한 금지조건의 틀 안에서 학술적 목적의 연구를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 외부 연구자에게도 슈타지 문서관리국 연구원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종종 있지만 외부 연구자의 문서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 오히려 연구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다양한 많은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장기적으로 완전히 배제될 수도 있다.
- 슈타지 문서관리청 책임 하의 베를린에 있는 슈타지 본부였던 제1관에 국가안전부 연구·기록·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제1관이 핵심적 "범죄의 장소"였다는 역사적인 의미에도 부합할 것이다. 국가안전부 연구·기록·교육센터는 경우에 따라서 슈타지 문서관리청이 폐지된 후에도 존립할 수 있도록 구상해야 할 것이다.
- 슈타지 문서관리청의 교육프로그램은 사통당 독재청산을 위해 전국적, 지역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행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 연방주(州), 기초지자체, 교육담당기관이 독재청산과 관련하여 슈타지 문서관리청의 전

문지식 지원, 계속 교육, 교육자료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한, 슈타지 문서관리청은 청산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슈타지 문서관리청은 EU의 새로운 회원국이 된 동유럽 국가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바, 이들 국가들은 슈타지 문서관리청의 성공적인 업무를 좋은 사례로 인정하면서 유사한 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슈타지 문서관리청의 폐지는 매우 심각한 여파를 가져올 수도 있다.

출처_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98-105

문서 번호 3

슈타지 문서법 제32조-국가안전부 활동의 청산을 위한 슈타지 문서 사용에 관한 지침(2010년 2월 26일 기준)

담당자 / 기관_ 슈타지 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_

- 슈타지 문서법 제32조는 슈타지 활동 청산작업을 위한 슈타지 문서 사용에 관한 규정이다.
- 시대사적 인물, 정치인, 공직자의 문서는 그들의 동의 없이도 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인물들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접근권은 연구목적인 경우와 미디어목적인 경우 접근권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 모든 개인은 자신에 관한 슈타지 문서에 대한 열람 요청권이 있다.
- 실종자, 또는 사망자 관련 문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만이 특정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슈타지 문서관리청은 연구, 정치교육 관련 기관, 신문, 방송과 영화에서의 역사적·정치적 청산작업을 지원한다. 슈타지의 활동과 구 동독 내지 구 소련 점령지역의 통치 메커니즘과 관련하여서는 적절한 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주제 별로 문서를 제공한다.
- 슈타지 문서관리청은 공공기관, 또는 비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회적, 정치적 유명인사가 슈타지와 협력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있는지 알려준다.
- 위의 유명인사란 예컨대 각료, 주(州)의회와 연방하원 의원, 차관급, 판사, 스포츠분야 고위인사를 말한다.
- 슈타지 문서관리청은 특히 연금 문제, 미해결 재산 문제, 훈장 문제 등과 관련한 요청을 처리한다.
- 슈타지 문서관리청은 형사소추, 위험방어, 복권, 보상에 관해서도 특정목적과 관련된 고지를 해준다.

출처_ 슈타지 문서법(StUG)

문서 번호 4

슈타지 문서법 제33조-절차 관련 지침(2007년 3월 1일 기준)

담당자 / 기관_ 슈타지 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_

- 슈타지 문서관리청은 법에 명시된 임무에 따라 국가안전부의 활동, 구 동독 내지 구 소련 점령지역의 통치 메커니즘 및 나치 과거에 관한 연구, 미디어활동(신문, 방송과 영화) 및 정치교육 관련 기관의 역사적·정치적 청산작업을 지원한다.
- 슈타지 문서청은 특정한 법적 조건이 충족되면, 슈타지 문서 열람이나 복사본 반출을 허락한다.
- 문서의 사용 목적은 특정 주제로 한정되어야 하며, 문서 사용은 국가안전부의 활동, 구 동독 내지 구 소련 점령지역의 통치 메커니즘, 나치 과거에 관한 역사적·정치적 청산작업에 기여해야 한다.
- 그 밖에도 문서 사용자들은 연구결과나 미디어자료의 출간, 공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 이는 예를 들어 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기관에서 진행 중인 연구프로젝트 결과를 발간, 게재하는 것이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저서, 학술논문,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학교수업 자료와 정치교육 자료, 라디오 및 TV-프로그램, 신문·잡지 기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 슈타지 문서에 대한 접근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슈타지 문서관리국은 사용신청서를 연구 목적인가, 미디어 목적인가에 따라 구분한다.
- 정치교육 관련 기관의 사용 신청은 그 목적과 나중에 결과가 발표되는 형식에 따라 연구 목적 신청인지, 미디어 목적인지를 구분한다.
- 연구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 대학교, 학술기관, 연구소와 같은 확립된 연구기관 및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지명도가 있는 연구자들의 신청서는 특별한 검토 없이 허가한다.
- 일반인도 개인 자격으로 연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연구와 사용목적의 구상, 개요서, 또는 정확한 설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연구 계획의 진지성을 증명해야 한다.
- 신문, 방송 또는 영화를 위한 사용신청서는 관계된 개인, 편집국, 출판사, 제작사가 제출할 수 있다.

출처_ 슈타지 문서법(StUG)

문서 번호 5

슈타지 문서법 제32a조-통보 관련 지침(2007년 3월 1일 기준)

담당자 / 기관_ 슈타지 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_

- 슈타지 문서법 제32조 1항 1문 4호에 따라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관련된 사람에게 문서를 제공한다는 사실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그 문서에 대한 접근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슈타지 문서관리청은 슈타지 문서법 제32조 1항에 따라 허가 여부를 심의할 때 제기된 이의의 내용을 고려한다.
- 신청 허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부터 문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보호해야 할 이유가 중대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통보에 너무 큰 수고와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_ 슈타지 문서법(StUG)

문서 번호 6

슈타지 문서법 제34조-언론, 방송, 영화에서의 문서 사용 관련 지침(2007년 3월 1일 기준)

담당자 / 기관_ 슈타지 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_

- 신문, 방송, 영화, 이들의 협력사, 기자가 슈타지 문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슈타지 문서법 제32조와 제33조가 적용된다.
- 독일방송사에 의한 특정 인물관련 정보공개가 그 인물에 대한 기존과는 다른 설명을 낳을 경우, 다른 설명을 기존의 정보에 첨부하여 보관해야 한다.
- 해당 문서의 정보는 다른 설명과 함께 공개되어야만 한다.

출처_ 슈타지 문서법(StUG)

문서 번호 7

제3장 : 국가안전부 문서의 이용 제1절 당사자, 제3자, 국가안전부 직원, 특혜자의 권리

1993년

담당자 / 기관_ 슈타지 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_

슈타지 문서법 및 법집행을 위한 설명

제1절: 당사자, 제3자, 비밀경찰 직원과 특혜수혜자의 권리

- 제12조: 당사자, 제3자, 국가안전부의 직원, 열람권 수혜자를 위한 절차규정
- 제13조: 안내, 열람, 반출에 관한 당사자와 제3자의 권리
- 제14조: 당사자와 제3자에 관한 익명화된 신상정보와 그 해결
- 제15조: 안내, 열람, 반출에 관한 실종자 또는 사망자의 가족/가까운 친척의 권리
- 제16조: 안내, 열람, 반출에 관한 국가안전부 직원의 권리
- 제17조: 안내, 수혜자를 위한 열람, 반출에 관한 권리
- 제18조: 국가안전부에 넘겨진 법원과 검찰 문서에 대한 안내, 열람, 반출에 관한 권리

출처_ Geiger, Hansjörg/Klinghardt, Heinz. 1993. Stasi-Unterlagen-Gesetz mit Erläuterungen für die Praxis. Köln: Deutscher Gemeindeverlag, S. 62-84.

문서 번호 8

제3장 : 국가안전부 문서의 이용 제2절 공공기관 및 비공공기관의 국가안전부 문서 이용

1993년

담당자 / 기관_ 슈타지 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_

슈타지 문서법 및 법집행을 위한 설명

제2절: 공공기관 및 비공공기관의 국가안전부 문서 사용

- 제19조: 공공기관 및 비공공기관의 문서접근권, 절차규정
- 제20조: 공공기관 및 비공공기관의 당사자 또는 제3자에 관한 신상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문서 사용
- 제21조: 공공기관 및 비공공기관의 당사자 또는 제3자에 관한 신상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사용
- 제22조: 의회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문서 사용
- 제23조: 형사소추와 위험방어를 위한 문서 사용
- 제24조: 국가안전부에 넘겨진 법원과 검찰 문서 사용
- 제25조: 기밀정보업무를 위한 문서 사용
- 제26조: 업무지침과 조직도의 사용
- 제27조: 요청 없이 공공기관에 통지
- 제28조: 요청 없이 비공공기관에 통지
- 제29조: 사용목적 준수
- 제30조: 문서전달내용에 관한 통보
- 제31조: 관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슈타지 문서관리국 결정에 대한 법원의 검토

출처_ Geiger, Hansjörg/Klinghardt, Heinz. 1993. Stasi-Unterlagen-Gesetz mit Erläuterungen für die Praxis. Köln: Deutscher Gemeindeverlag, S. 84-131.

문서 번호 9

제3장 : 국가안전부 문서의 이용 제3절 정치적·역사적 청산을 위한 국가안전부 문서 이용 및 신문과 방송에 의한 국가안전부 문서 이용

1993년

담당자 / 기관_ 슈타지 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_

슈타지 문서법 및 법집행을 위한 설명

제3절: 정치적·역사적 청산을 위한 국가안전부 문서 사용 및 신문과 방송에 의한 국가안전부 문서 사용

- 제32조: 정치적·역사적 청산을 위한 문서 사용
- 제32a조: 통보
- 제33조: 절차
- 제34조: 신문, 방송, 영화에 의한 문서 사용

출처_ Geiger, Hansjörg/Klinghardt, Heinz. 1993. Stasi-Unterlagen-Gesetz mit Erläuterungen für die Praxis. Köln: Deutscher Gemeindeverlag, S. 134-143.

문서 번호 10

로젠홀츠 데이터

2003년 7월

담당자 / 기관_ 슈타지 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_

- 로젠홀츠 데이터는 국가안전부의 대외정보기관인 정찰총국(HVA)이 색인카드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국가안전부가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사한 것으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경로를 거쳐 미국 국가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에 전달되었다.
- 독일 연방정부의 오랜 노력 끝에 미국은 1999년 마이크로필름의 복사본을 CD에 담아 독일에 돌려주기 시작했다.
- 미국에서 입수한 로젠홀츠 데이터는 CD 총 381개, 파일 약 350,00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 동독 대외정보기관인 정찰총국(HVA) 직원들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로젠홀츠 데이터는 2003년 7월부터 과거청산작업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 로젠홀츠 데이터는 인물의 실명을 표시하고 있으며, 출생일, 출생지, 주소, 직업, 슈타지 식별번호와 같은 개인신상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 슈타지 문서관리국은 로젠홀츠 데이터를 다른 슈타지 문서와 마찬가지로 활용하며 검색할 수 있다.
- 그러한 작업을 통해 국가안전부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고 있다.
- 로젠홀츠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이 데이터의 성격과 신빙성에 관한 연구도 가능해졌다.
- 로젠홀트 데이터에 올라있는 사람들의 약 90%는 슈타지 문서법에서 말하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이다.
- 로젠홀츠 데이터는 3개의 색인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F16-색인, F22-색인, 통계색인이 있다.

출처_ Schwan, Heribert/Heindrichs, Helhard. 2005. Das Spinnennetz. Stasi-Agenten im Westen: Die geheimen Akten der Rosenholz-Datei. München: Ventura Publisher im Verlag, S. 55-63

http://www.bstu.bund.de/cln_012/nn_712830/DE/MfS-DDR-Geschichte/Aktenfunde/Rosenholz/rosenholz_node.html_nnn=true 2010년 6월 20일

문서 번호 11

슈타지 문서관리청(Stasi-Unterlagen Behörde) 조직도(2009년 3월 기준)

담당자 / 기관_ 슈타지 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_

슈타지 문서관리청의 조직도

출처_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92

문서 번호 12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에 대한 안내, 열람 및 반출 신청서

2009년 3월

담당자 / 기관_ 슈타지 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_

문서열람 신청서

출처_ http://www.bstu.bund.de/cln_012/nn_715154/DE/Akteneinsicht/Erlaeuterungen-fuer-Privatpersonen/Antragsformular/antragsformular__pdf,templateId=raw,property=publicationFile.pdf/antragsformular_pdf.pdf 2010년 6월 12일

문서 번호 13

신청서 및 요청서 접수 건(2009년 3월 기준)

담당자 / 기관_ 슈타지 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_

표 "신청서 및 요청서 접수 건"

출처_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131

문서 번호 14

신청서 및 요청서 처리(2009년 3월 기준)

담당자 / 기관_ 슈타지 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_

표 "신청서 및 요청서 처리"

출처_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132

문서 번호 15

징역형(刑)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요청서(2009년 3월 기준)

담당자 / 기관_ 슈타지 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_

표 "감금형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요청서"

출처_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137

문서 번호 16

슈타지 문서법(StUG) 제32조와 제34조에 의거한 신청서 접수와 처리(2009년 3월 기준)

담당자 / 기관_ 슈타지 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_

표 "슈타지 문서법(StUG) 제32조와 제34조에 의거한 신청서 접수와 처리"

출처_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138

문서 번호 17

신청자 유형-보고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2009년 3월 기준)

담당자 / 기관_ 슈타지 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_

표 "신청자 유형"

출처_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139

문서 번호 18

주민 설문조사의 통계 분석 및 이전 설문조사와의 비교

2009년 3월

담당자 / 기관_ 슈타지 문서관리청(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

내용_

표 "주민 설문조사의 통계 분석 및 이전 설문조사와의 비교"

출처_ Neunter Tätigkeitsbericht der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009, S. 134

문서 번호 19

1945년부터 1990년 독일통일까지의 연대기

1945–1990년

담당자 / 기관_ 연대기

내용_

1945년부터 1990년 독일통일까지의 연대기

출처_ Gieseke, Jens. 2000. Die DDR-Staatssicherheit, Schild und Schwert der Partei.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S. 104-117

문서 번호 20

법적기반–통일조약 제8조, 형법시행법(EGStGB) 제315조–제315c조, 형법(StGB) 제2조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정부,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연방하원

내용_

- 동독 불법행위 형사소추에 대한 법적 근거는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제8조, 형법시행법(EGStGB)에 신설된 제315조부터 제315c조, 그리고 형법전(StGB) 제2조이다.
- 통일조약 제8조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형법이 형법시행법(EGStGB) 제315조부터 315c조에 의거하여 구 동독지역에도 적용되었다. 따라서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동독에서 행하여졌던 범죄에 대해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단, 형법시행법(EGStGB) 제315조 1항에 의거하여 서독의 법이 동독의 법보다 보다 관대한 경우에만 서독 형법이 적용된다. 해당 범죄가 동독에서 처벌대상이 아니었거나 더 경한 형벌의 대상이라면, 동독의 형법이 계속 유효하다. 그래서 형법시행법(EGStGB) 제315조 1항은 범행 시점에서 유효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법(독일 헌법) 제103조 2항의 소급효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출처_ BGBl. 1990 II, S. 889. BGBl. I, S. 2288. BGBl. I, S. 3322.

문서 번호 21

시효 문제-주법무장관 회의의 결의사항

1991년 11월 5-6일

담당자 / 기관_ 주법무장관들

내용_

- 연방주의 법무장관들은 형사소추기관에 대하여 전 동독 지도부의 명령 또는 동의 하에 행해졌으며, 법률 규정을 무시하여 소추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펼 것이다.
- 나치의 범죄 시효와 관련하여 마련된 기준이 사통당의 불법행위를 형법적으로 판단하는데 반영될 수 있다.

출처_ 1991년 11월 5일, 6일 주법무장관 추계 회의 결의사항

문서 번호 22

SED(사통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효정지법(VerjährungsG)

1993년 3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하원, 바이체커(Weizsäcker) 연방대통령, 헬무트 콜(Helmut Kohl) 연방총리, 로이트호이서-슈나렌베르거(Leuchtheusser-Schnarrenberger) 연방법무장관

내용_

이 법에 의해 1949년 10월 11일부터 1990년 10월 2일까지 정치적인 이유에서 행해졌지만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통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효가 정지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3, Teil I

문서 번호 23

공소시효 소멸기간 연장법(2. VerjährungsG)

1993년 9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하원, 바이체커(Weizsäcker) 연방대통령, 헬무트 콜(Helmut Kohl) 연방총리, 로이트호이서-슈나렌베르거(Leuchtheusser-Schnarrenberger) 연방법무장관

내용_

- 1992년 12월 31일 이전 구 동독지역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한 시효는 형량 단계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이 경과한 이후의 시점에 만료된다.
- 1990년 10월 2일 이전 구 동독지역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한 시효는 형량 단계에 따라 1995년 12월 31일 경과한 이후의 시점에 만료된다.
- 동독의 법률에 따라 형이 정해지는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자체를 폐지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51, S. 1657

문서 번호 24

동독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주법무장관 회의의 결의사항

1991년 6월 4–6일

담당자 / 기관_ 주법무장관, 연방총리, 각 연방주 총리, 베를린시 법무장관

내용_

주법무장관들은 다음을 합의했다:

- 구 동독의 중앙집권적인 구조 때문에 베를린 시정부의 법무부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 것이 당연하다.
- 베를린에 "정권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립하는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 1991년 5월 17일 연방총리와 각 연방주 총리들과의 협의사항을 토대로 베를린주 법무부와 조율하여 정권범죄수사본부에 경험이 풍부한 수사인력을 추가 충원할 것이며 각 연방주 내무장관들에게 베를린 경찰의 업무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5개 신연방주(州)의 형사소추기관은 베를린 형사소추기관 및 연방검찰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구 연방주의 주법무장관들은 이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출처_ 1991년 제62차 주법무장관 회의 결의사항

문서 번호 25

장벽-국경 초병의 사살행위에 대한 첫 번째 판결

1992년 1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베를린 주법원

내용_

- 총격살인으로 피소된 K., H., Sch., Schm.의 행위는 일차적으로 범죄지와 범죄 시점에 유효했던 동독 형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그 이후에 동독 형법을 대체한 독일연방공화국의 형법에 따라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한다.
- 구 동독 기본법의 총기사용규정은 무효(nichtig)하므로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
- 유효한 사격명령이 없었으며, 총격수가 금지에 대해 착각할만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베를린 장벽에서의 총격살인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과 정의의 원칙에 현저하게 모순되므로, 병사들이 양심을 무마시키는 주입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 베를린주 법원의 견해이다.
- 베를린주 법원은 피고인 H에게 3년 6개월의 자유형을 선고한다.

출처_ JuristenZeitung(JZ). Jahrgang 1993. Tübingen: J.C.B. Mohr(Paul Siebeck), S. 691- 696

문서 번호 26

검찰 공소장(요약본)

1992년 11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새프겐(Schaefgen) 고등검사, 프란츠-헤르만 브뤼너(Franz-Hermann Brüner) 고등검찰청 정권범죄수사본부 고등검사, 헤르비히 그로스만(Herwig Großmann) 고등검사, 베른하르트 얀츠(Bernhard Jahntz) 정권범죄수사본부장, 베를린주 법원 배심제재판부

내용_

베를린주 고등검찰청은 1961년부터 1989년까지 서베를린으로 탈출 중 총살된 12명에게 베를린 장벽에서 사격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로(고의적 살인[故殺]) 구 동독 군(軍) 정책 지도부 6명을 고소한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다.

-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전 사통당 서기장, 국가평의회 의장, 국방위원회 위원장
- 에리히 밀케(Erich Mielke), 전 국가안전부장관, 사통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국방위원회 위원
- 빌리 슈토프(Willi Stoph), 전 사통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각료회의 의장, 국가평의회 부의장, 국방위원회 위원
- 하인츠 케슬러(Heinz Keßler), 전 사통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국방위원회 위원, 국방장관
- 프리츠 슈트렐레츠(Fritz Streletz), 전 국방위원회 서기
- 한스 알브레히트(Hans Albrecht), 전 사통당 줄주(洲)(Bezirk Suhl) 지도부 제1서기장

출처_ Peter Richter. 1993. Kurzer Prozeß: Honecker & Genossen-ein Staat vor Gericht? Berlin: Elefanten-Press, S. 145-155.

문서 번호 27

케슬러, 슈트렐레츠, 알브레히트의 헌법소원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사통당 정권의 정권범죄 가벌성

1996년 10월 24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내용_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 국방위원회 위원 3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 청구자들은 주법원 판결과 연방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며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비난하였다. 이들은 판결이 기본법 제103조 2항의 소급효 금지조항과 기본법 제25조의 국가지도부의 면책권 조항을 위배하는 판결이라 주장하였다.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시행법(EGBtGB) 제315조 1항과 형법(StGB) 제1조에 의거하여 동독법, 특히 동독국경법(DDR-GrenzG) 제27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모든 행위는 행위 시점에 이미 정당화되었다는 것이다. 그 밖에 이들은 국경 문제에 있어 소련의 영향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행위의 재량권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03조 2항에 의거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기본권에 충실한 민주적 입법자가 제정한 형법에 담겨 있는 특별한 신뢰의 토대를 통해 그 법치주의적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국가 권력자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면서 범죄적 불의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만들어 그것을 가벌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특별한 신뢰의 토대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한 경우, 기본법 제103조 2항에 근거한 엄격한 신뢰 보호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동독 정부 및 헌법상 기관의 고위인사이었던 헌법소원 청구자들에 대한 형사소추는 국제법의 일반적 규칙(면책권)에 위배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들의 면책권이 그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국가의 존립 기간보다 더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_ Beschlus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 den Verfassungsbeschwerden am 24. Oktober 1996

문서 번호 28

연방재판소의 상고심 판결-샤보프스키, 클라이버, 크렌츠

1999년 11월 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재판소(BGH)

내용_

- 연방재판소는 1997년 8월 25일 베를린주 법원 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로써 주법원의 판결이 유지되었다.

- 에곤 크렌츠(Egon Krenz)에게는 3명에 대한 경합적 살인, 기타 살인 1건으로 6년 6개월의 자유형이 선고 되었다.
- 귄터 샤보프스키(Günter Schabowski)에게는 3명에 대한 경합적 살인에 대해 3년의 자유형이 선고되었다.
- 귄터 클라이버(Günter Kleiber)에게는 3명에 대한 경합적 살인에 대해 3년의 자유형이 선고되었다.

출처_ Redaktion „Neue Justiz“ (Hrsg.). 2001. Der Politbüro-Prozeß: Eine Dokumentation. Baden-Baden: Nomos, S. 509- 539

문서 번호 29

인간 존엄성 침해로 인한 형사소송 중지-호네커 사건

1993년 1월 12일

담당자 / 기관_ 베를린주 헌법재판소

내용_

- 베를린주 헌법재판소는 베를린주 고등법원과 베를린주 지방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에 대해 진행되었던 형사소추 절차를 중단하였고, 체포영장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 베를린주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불치병으로 사망을 앞둔 81세의 헌법소원 청구인을 공판을 위해 감금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 존중의 법칙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출처_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1993년 1월 12일

문서 번호 30

사통당 정권과 관련한 1989년 가을 이후의 사법적 청산과 그 한계

담당자 / 기관_ 각 연방주 법무장관, 베른하르트 얀츠(Bernhard Jahntz) 정권범죄수사본부장 겸 제2 베를린주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내용_

- "정권범죄수사본부(Arbeitsgruppe Regierungskriminalität)"는 1990년 10월 3일 베를린주 고등검찰청(Berliner Staatsanwaltschaft beim Kammergericht)에 설치되었다.
- 동독 정권과 관련하여 형법적 고찰의 주 대상이 되었던 것은 소위 동독의 배신자에 대하여 사법적 형식의 절차 이전, 또는 그러한 절차와 관계없이 행한 국가안전부 소속 인물들의 행위, 대내외의 정치적 적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과거 내독 국경에서의 무력행위였다.
- 형사소추 업무는 각 연방주 검찰청 중점수사부의 수사관할권(구 동독 주정부 차원의 범죄 담당)과 베를린주 고등검찰청 및 연방검찰청(주로 첩보사건 관련 담당) 산하 정권범죄수사본부(후에는 제2 베를린주 지방검찰청으로 승격)의 수사관할권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 정권범죄수사본부(Arbeitsgruppe Regierungskriminalität)는 초기에 베를린주 검찰청 소속 검사 7인으로 구성되었다. 연방주법무장관 회의에서 정한 최대 60명까지의 추가 인력이 모두 채워졌던 것은 1992년 잠시였고, 그 외의 기간에는 정권범죄수사본부는 최대 정원수를 채우지 않았다.
- 수사를 위해 경찰에 정권·통일범죄 수사센터(ZERV: Zentrale Ermittlungsstelle für Regierungs- und Vereinigungskriminalität))가 설치되었다.
- 형사소추 과정의 장애 요인은 고령과 질병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소송무능력이었다.
- 베를린 형사소추기관에 접수된 약 23,000건 중 16,503건은 중급(中級)의 정권범죄(특히 슈타지 소속 인물에 의한 도핑, 법 왜곡행위, 무력)였다. 이 중 261건은 기소 처리되었다. 내독 국경지대에서의 무력 사용과 관련된 6,429건 중에서는 112건이 기소 처리되었다.

출처_ Bernhard Jahntz. Die Strafrechtliche Aufarbeitung des SED-Regimes seit dem Herbst '89 und ihre Grenzen. http://www.fes.de/magdeburg/pdf/d_27_10_5_3.pdf

문서 번호 31

동독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사실과 통계

담당자 / 기관_ 법무부, 정권범죄수사본부, 신연방주 검찰청의 중점수사부

내용_

- 형사소추에서는 다음의 범죄유형을 구분하였다:
- 내독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 선거 조작
- 법 왜곡
- 밀고
- 국가안전부의 범죄
- 체포자 학대
- 도핑
- 직권남용 및 부패
- (기타) 경제범죄
- 간첩활동
- 기타
- 2005년 모든 관련 수사와 재판 절차가 종결되었다. "형사사법과 동독 불법행위(Strafjustiz und DDR-Unrecht)"라는 연구프로젝트에 의하면 간첩사건소송 외에도 피의자 총 1,731명에 대한 1,201건의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 중 753명에게 벌금형, 또는 자유형이 선고되었다.

출처_ Klaus Marxen/ Gerhard Werle/ Petra Schäfter(Hrsg.). 2007. Die Strafverfolgung von DDR-Unrecht: Fakten und Zahlen. Berlin: Gutendruck.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문서 번호 32

사통당 정권 희생자 분류

담당자 / 기관_ “사통당 독재의 역사와 잔재 청산” 조사위원회

내용_

- 희생자 분류 항목(법익(法益, Rechtsgut)의 피해)
  - 생명(사형선고, 살해, 강압적인 의료치료 거부 등)
  - 신체와 건강(환경파괴, 도핑, 고의적인 심리적 가해 등)
  - 자유와 인간 존엄성
  - 소유물과 재산
  - 직업에서의 발전
- 희생자 개인의 복권, 보상, 고통 경감을 위한 입법 조치
  - 내독국경 희생자를 위한 수감자 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명령
  - 재산손실 희생자를 위한 재산법
  - 추방 이후 동독에 정착한 탈출자와 추방자를 위한 연방원호법(Bundesversorgungsgesetz)

출처_ Bericht der Enquete-Kommission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Drucksache 12/7820. S. 229-233.

문서 번호 33

복권법(Rehabilitierungsgesetz)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하원

내용_

- 독일연방공화국은 통일 이후 세 개의 복권법을 제정하였다.
- 형사복권법(StrRehaG) (신청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행정복권법(VwRehaG) (신청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직업복권법(BerRehaG) (신청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복권법 신청기간: 연방하원은 2007년 6월 13일 "제 3차 구 동독 정치적 박해 희생자 복권법 규정 개선에 관한 법(Drittes Gesetz zur Verbesserung rehabilitierungsrechtlicher Vorschriften für Opfer der politischen Verfolgung in der ehemaligen DDR)"을 결의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동독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감금된 이력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희생자는 월 250 유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세 개의 복권법에서 정의한 혜택의 신청기간은 "제 3차 희생자 복권법 규정 개선에 관한 법"에 의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그 외에도 형사복권법에 추가된 제17a조로써 소위 희생자 연금(Opferrente)의 지급 규정도 마련되었다.

출처_ http://de.wikipedia.org/wiki/Rehabilitation.

문서 번호 34

형사복권법(가입 지역(구 동독지역)에서 反법치적 형사소추를 당한 희생자의 복권과 보상에 관한 법) (Strafrechtliches Rehabilitierungsgesetz – StrRehaG)

1992년 10월 29일–최근 개정 2007년 12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하원

내용_

- 형사복권법은 1945년 5월 8일부터 1990년 10월 2일까지 가입 지역에서 내려진, 자유·법치주의 질서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형사재판 판결의 무효화를 가능하게 한다.
- 형사복권법은 형사소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려진 법원이나 관청의 결정(예컨대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통해 자의적으로 또는 정치적 박해를 위해 자유를 박탈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유박탈은 수감과 유사한 조건 하에서의 생활이나 강제노동과 동등한 것으로 본다.
- 신청서는 모든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사무처에서 조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신청자가 사회복지 차원의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고령이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신청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형사복권을 받으면 사회적 보상급여(특히 감금 기간에 대한 보상금, 감금으로 인하여 건강 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희생자 연금(Opferrente, 또는 Opferpension)과 원호금(Versorgungsleistung))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형사복권을 받으면 무효화된 과거 법원이나 관청의 해당 결정과 관련하여 압수되었던 재산 가치를 반환 받거나 그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당사자가 당시에 입은 피해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하여 연방원호법 적용 하에 원호금을 받을 수 있다.

출처_ 연방법무부

문서 번호 35

행정복권법(가입 지역(구 동독지역)에서의 反법치적 행정결정 무효화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권) (Verwaltungsrechtliches Rehabilitierungsgesetz-VwRehaG)

1994년 6월 23일–최근 개정 2009년 6월 2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하원

내용_

- 행정복권법은 동독 국가기관이 취한 법치주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 조치를 무효화하거나, 또는 행정 조치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됨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 조치가 건강 상의 피해, 재산가치의 손실, 직업상의 불이익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피해를 사회적 보상 조치를 통해 완화한다.
- 행정복권법은 특히 연방원호법, 재산법, 직업복권법과 연계되어 있다.
-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보상해야 할 피해가 없는 특정한 경우에는 복권국(復權局)이 동독 국가 기관이 행한 심각한 불법적 조치의 反법치성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反법치성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反법치적 조치가 정치적 박해를 목적으로 당사자의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 심각한 멸시와 피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 제1조, 또는 제1a조에 의한 신청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서면으로 담당 복권국에 제출해야 한다.

출처_ 연방법무부

문서 번호 36

직업복권법(가입 지역에서의 정치적 박해 희생자의 직업적 불이익 해소에 관한 법) (Berufliches Rehabilierungsgesetz-BerRehaG)

1994년 6월 23일–최근 개정 2007년 8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하원

내용_

- 이 법은 정치적 박해의 목적으로 행해진 직업 및 직업 관련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관련한 복권과 사회적 보상을 규정한다.
- 학생의 신분으로 박해를 당한 자도 복권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 보상급여의 종류는 제한되어 있다. 직업복권법의 중점 사항은 연금 관련 불이익의 해소이다.
- 직업복권법은 형사복권법 및 행정복권법과 연계되어 있다.

출처_ 연방법무부

문서 번호 37 희생자 연금(Opferrente) 신청서

담당자 / 기관_ 베를린주 보건복지청

출처_ www.berlin.de/lageso/versorgung/antraege/ . 베를린주 보건복지청.

문서 번호 38 행정복권법(VwRehaG)에 의거한 무효화, 또는 反법치성 확정 신청서/직업복권법(BerRehaG)에 의거한 직업적 복권 신청서

담당자 / 기관_ 베를린주 보건복지청

출처_ www.berlin.de/lageso/versorgung/antraege/ . 베를린주 보건복지청.

문서 번호 39 수감자지원법(HHG), 형사복권법(StrRehaG), 행정복권법(VwRehaG)에 의거한 상해 피해자 원호금(Beschädigtenversorgung) 신청서

담당자 / 기관_ 베를린주 보건복지청, 베를린 원호청

출처_ www.berlin.de/lageso/versorgung/antraege 베를린주 보건복지청, 베를린 원호청

문서 번호 40 앙케이트 위원회(Enquête-Kommission)

담당자 / 기관_ 연방하원

내용_

- 독일 연방의회는 의사규칙(Geschäftsordnung) 제56조에 의거하여 "광범위하고 중요한 복합적 사안에 대한 결정을 준비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 동안 사통당 독재정권의 역사와 잔재 청산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순차적으로 2개의 위원회가 있었다.
  - 제12대 연방의회의 조사위원회는 "사통당 독재의 역사와 잔재 청산"이라는 명칭으로 사통당 치하 구 동독의 권력구조와 의사결정 메커니즘, 책임의 문제, 법과 사법 및 경찰, 교회, 재야세력 활동, 1989년 가을의 평화혁명에 관해 연구하였고, "특별한 문제"로서 국가안전부와 "사통당 정권 희생자"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 그 후 제13대 연방의회 조사위원회는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사통당 독재 잔재 극복"이라는 주제 하에 사통당 독재정권 희생자, 공직의 엘리트 교체, 사법적 청산, 교육, 학술, 문화, 문서보관소, 독일 역사 상 두 번의 독재 및 그 희생자들에 대한 全독일적 추모 방식, 중앙·동부·동남 유럽에서의 전제적 독재 청산을 위한 국제협력 전망 등을 다뤘다.
- 구성: 연방의회 의원 및 외부 전문가

출처_ Weidenfeld, Werner und Korte, Karl-Rudolf(Hrsg.). 1999.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1949-1989-1999.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S. 330-342.

문서 번호 41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사통당 독재 잔재 극복"/조사위원회 중간보고서-"역사청산과 사통당 독재 결과 청산을 위한 독립적 공공 연방재단 설립"에 관한 중간보고

1997년 9월 25일

담당자 / 기관_ 조사위원회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사통당 독재 잔재 극복"

내용_

- 조사위원회는 관련 연방법을 제정하여 사통당 독재정권의 탄생, 역사, 결과의 종합적인 청산, 민주적 정치문화, 독일의 내적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 공영 연방재단을 설립할 것을 연방하원에 권고한다.
- 재단에 관한 세부사항

- 재단의 소재지
- 재원 조달
- 재단 조직
- 사업 분야

출처_ Materialien der Enquete-Kommission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ß der deutschen Einheit". S. 60-75.

문서 번호 42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설립에 관한 법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하원

내용_

- 법적 형식: 재단
- 재단의 목적
- 사통당 독재 청산 분야에서의 타 기관과의 협력, 독일 내 소련 점령지역과 동독지역에서의 독재정권 발생원인, 역사 및 결과에 대한 종합적 청산작업에 대한 기여 및 지원.
- 재단 자산
- 재단은 그 설립 목적(제2조 1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방예산법에 의한 연방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연간 보조금을 받는다. 재단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기타 수입은 재단의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 나아가 재단은 제3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독자적 법률행위(Rechtsgeschäft)를 할 수 있다.
- 정관
- 독재청산재단은 연방내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재단 이사회가 2/3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 정관을 채택한다.
- 재단 조직
- 재단이사회(Stiftungsrat)
- 임원회(Vorstand)
- 재단은 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자문위원회(Fachbeiräte)를 소집할 수 있다.
- 감독, 예산, 회계감사, 법률 구제, 관청 간 협조(Amtshilfe)
- 독재청산재단은 연방내무부의 법적 감독을 받는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8 Teil I Nr. 33.

문서 번호 43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정관

2000년 10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이사회

내용_

- 본 정관은 재단 이사회가 연방내무부와의 합의 하에 의결되었다.

- 재단 조직
- 업무규정
- 비용

출처_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활동보고서(Tätigkeitbericht der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1998-2001.

문서 번호 44

사통당 독재청산재단의 지원 원칙

2007년 1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내용_

- 독재청산재단은 사회단체, 민간 문서보관소, 사통당 독재 희생자단체들, 정치교육 기관, 학계의 독재청산 관련 프로젝트를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원한다.
- 법적 근거: 지원은 독재청산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개별적 프로젝트의 지출을 충족하기 위한 지원금으로서 연방예산법 제44조의 행정규정에 준하여 집행된다.
- 지원 대상
- 지원 조건
- 절차
- 지원금의 종류, 규모, 금액
- 이상의 지원 원칙은 독재청산재단의 기존 임시 지원 원칙을 대체하며 1997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출처_ http://bundesstiftung-aufarbeitung.de/downloads/pdf/2010/foerdergrundsaetze.pdf.

문서 번호 45

사통당 독재청산재단의 재정 조달

1998–2008년

담당자 / 기관_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내용_

- 독재청산재단의 예산은 대부분 연방예산에서 조달된다.
- 제3자에 의한 지원(예컨대 기부금이나 스폰서링)을 받을 수 있다.

출처_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활동보고서(Tätigkeitbericht der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1998-2008

문서 번호 46

사통당 독재청산재단의 구조와 사업 분야

1998–2008년

담당자 / 기관_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내용_

- 구조

– 재단이사회(Stiftungsrat): 재단 최고의 기구로, 5년마다 선출되며, 재단이사회에는 연방의회, 연방정부, 베를린주 대표자와 과거청산 분야에서 특별히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인사로 구성된다. 재단이사회 이사장은 마르쿠스 메켈(Markus Meckel) 연방의회 의원이다. 재단이사회는 재단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임원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 임원회(Vorstand): 임원회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며 재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대표는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이다.

– 세 개의 전문자문위원회(Fachbeiräte): 전문자문위원회는 이사회와 임원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 사무국(Geschäftsstelle): 사무국은 독재청산재단 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일한다.

– 국장: 안나 카민스키(Anna Kaminsky) 박사. 정규 직원.

– 재단 3대 사업 분야

1. 사회적 청산 I: 사통당 독재정권 희생자의 상담과 보호관리, 기념관.
2. 사회적 청산 II: 정치교육과 출판.
3. 사회적 청산 III: 학술 지원, 국제 협력, 독립 문서보관소 지원

출처_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활동보고서(Tätigkeitbericht der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1998–2001.

문서 번호 47

베를린-호헨쇤하우젠(Berlin-Hohenschönhausen) 기념재단

1998-2008년

담당자 / 기관_ 베를린-호헨쇤하우젠 기념재단

내용_

- 2000년 7월 "베를린-호헨쇤하우젠 기념관"이란 이름으로 베를린에 법적 능력이 있는 공영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
- 기구: 재단이사회(Stiftungsrat)와 자문위원회(Beirat)
- 재정: 베를린주와 독일연방공화국이 조달한다.
- 기념관: 1994년 국가안전부의 중앙구치소 자리에 기념관이 설립되었다. 2000년 7월 이래로 베를린-호헨쇤하우젠 기념재단은 독립 공영재단이다.

출처_ http://www.stiftung-hsh.de/index.php.

문서 번호 48

희생자단체

1998–2008년

담당자 / 기관_ 사통당 희생자와 희생자단체를 위한 상담소

출처_ http://bundesstiftung-aufarbeitung.de/service_wegweiser/beratungsangebote.php.

문서 번호 49

브란덴부르크 과거청산담당관법(BbgAufarbBG)

2009년 7월 7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내용_

이 법은 공산독재의 청산을 위한 브란덴부르크주 특임관(LAkD)의 지위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특임관(LAkD)의 임무:

소련 점령시절과 구 동독 시절에 박해 받은 사람들을 자문하고, 동독 슈타지 문서 열람시 동독 슈타지 문서법 38조에 의거하여 자문하며, 공개 진상규명, 공공행정 자문 및 검증절차 지원, 브란덴부르크 추모지 재단 및 희생자 협회와 협력하도록 한다.

주특임관(LAkD)은 6년에 한번 주의회에서 선출되며, 주의회 의장의 법적 감독을 받는다.

공직자들은 주특임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록물, 문서보관서 및 기타 정보수집물의 열람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 연방주의 규정체계(BRAVORS).

문서 번호 50

공산주의 독재의 결과 청산을 위한 브란덴부르크주 특임관(LAkD) 울리케 포프의 선거 추천

2009년 12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총리청, 정부대변인 게르린데 크라네르트.

내용_

브란덴부르크 내각의 결의 발표, 울리케 포프를 공산주의 독재의 결과 청산을 위한 브란덴부르크주 특임관으로 선출 추천.

울리케 포프는 1973년부터 구 동독 내 다양한 야당단체에 속해 있었다. 1983년 활동상의 이유로 몇 주일 동안 슈타지에 의해 구금되었다. 평화와 인권 이니셔티브의 창단멤버였으며, 1989/1990년 시민운동 "민주주의 지금" 대표로서 구 동독 중앙회의에 나섰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 총리청(http://www.stk.brandenburg.de 2011.06.14 기준).

문서 번호 51

브란덴부르크 청산특임관법의 개정을 위한 법

2010년 2월 17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내용_

모든 정당의 재청으로 과거청산특임관법이 개정되었다.

목적은 브란덴부르크주 의회에 업무 및 법적 감독자를 두고(주정부 정치교육 담당관 대신) 계속적인 법적 신분변화를 전제로 하여 공산독재 청산을 위한 특임관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청산특임관은 2년에 한 번 또는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과거청산특임관은 정보보호 및 문서열람권을 위한 특임관에 비견될만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기록문 "PARLDOK" (http://www.parldok.brandenburg.de/parladoku/w5/drs/ab_0400/457.pdf, 2011.06.20 기준).

문서 번호 52

브란덴부르크주 지방 대표단체 구성원 및 지방 선거공무원을 상대로 동독 슈타지에 대한 협력 여부를 검증하도록 권고

2010년 9월 15일

담당자 / 기관_ 공산주의 독재의 결과 청산을 위한 브란덴부르크주 특임관(LAkD).

내용_

주특임관은 동독 슈타지 연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청원하는 방법과 구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의 통지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방 대표단체는 구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BStU)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권리를 갖는다.

구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BStU)을 겨냥한 청원의 법적 전제조건은 지방 대표단체의 다수결 결의사항을 증명하거나, 혹은 검증받게 될 인물을 지명하는 것이다.

절차 방식에 대해 설명이 제공된다.

검증 결과는 우선 대표단체 비공개회의에서 통보되고, 그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 슈타지 직원이었거나, 비공식 협력자였다고 지명된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갖는다.

절차 마지막에 해당 대표단체는 가능한 결과 및 검증 결과의 발표방식에 대해 의결해야 한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주/주특임관(LAkD) (http://www.aufarbeitung.brandenburg.de, 2011.06.24 기준).

문서 번호 53

주특임관을 통한 기부금 위탁

2010년 11월 14일

담당자 / 기관_ 공산주의 독재의 결과 청산을 위한 브란덴부르크주 특임관(LAkD).

내용_

주특임관(LAkD)이 법적 임무의 범주 내에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서술하였다.

일반적인 목표는 과거 소련 점령지역/구 동독 내에서 부당한 경험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1945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의 과거사 청산,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정치역사 교육, 독일분단과 사회통일민주당 체제, 그리고 독재에 대한 저항을 잊지 않도록 그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된다.

주특임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중점사업을 정한다.

그 대상은 예를 들어 관련 행사 지원(발표회, 토론회, 워크숍, 학술회, 원탁회의 및 중재), 조사 및 연구 프로젝트 지원, 오늘날 브란덴부르크주 지역에서 공산주의 독재에 관한 출판사업 지원, 자체적 구제기관에 대한 강화 지원 등이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주/주특임관(LAkD) (http://www.aufarbeitung.brandenburg.de, 2011.06.24 기준).

문서 번호 54

“희생자들을 하나로 모으고, 희생자들의 고립된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져야 한다.”

(브란덴부르크주 특임관(LAkD)의 과업 및 실무에 대한 기고문)

2011년 3월 1일

담당자 / 기관_ 라이너 포트라츠(브란덴부르크주 문서보관서), 주특임관(LAkD).

내용_

이 기고문은 2009년 12월 17일 임명된 주특임관 울리케 포프의 과업과 실무에 대해 기술한다. 이 직위의 도입은 사통당 독재가 끝난 뒤 20년 간의 시간에 대해서 고찰이 불충분했으며, 희생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전제 하에 시작된 것이다.

청산특임관은 동독 슈타지의 협력자들을 다룰 때 지방단체와 행정단체에 자문할 임무가 있다. 또한 연구 프로젝트와 연구서를 창안해야 한다. 청산특임관은 여론, 연구 및 행정 업무 사이를 조율하는 일종의 매개체 기능을 한다.

최근의 임무를 예로 들자면 베를린 장벽 설치 50주년 기념행사 및 구 동독 아동 및 청소년 기숙시설 수용과 관련된 것이었다.

출처_ 브란데부르크주 문서보관서(브란덴부르크주 문서보관서 보고서와 통지문, 28/2011, 발행 브란덴부르크주 문서보관서. 포츠담 2011).

문서 번호 55

제11차 국회의원법 개정법(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

녹색연합 초안

2009년 10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녹색연합.

내용_

원내교섭단체 녹색연합은 슈타지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의회 의원들에 대한 검증 규정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법의 초안을 마련했다.

그 이유로는 전 독일 차원에서, 특히 브란덴부르크주에서의 슈타지 과거청산의 현실성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이에 관련된 주의회 의원들의 영향력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요구되었다. 특별 검증위원회는(작센주에 설치된 것과 동일)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 의회 기록시스템(PARLDOK-BB).

문서 번호 56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의원 검증법(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

기민당 초안

2009년 12월 2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기민당 원내교섭단체.

내용_

의원법 변경을 위해 제11차 법안 개정에 관한 토론이 계속되는 동안, 기민당 원내교섭단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슈타지 관련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제시한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검증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의혹이 제기될 때 해당 의원의 동의 없이 시행될 수 있다.

주의회 대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검증을 평가하고, 당해 의원이 주의회에 소속될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특히 검증을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8조). 브란덴부르크 헌법재판소 법률 또한 이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 의회기록 시스템(PARLDOK-BB).

문서 번호 57

제11차 의원법 개정법(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
브란덴부르크주 최고위원회-공개청문회
2010년 1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최고위원회 A1, 몇몇 전문가.

내용_

몇몇 전문가들과의 공개 질의에서 상기 법초안에 대해 상세하게 의논한 최고위원회의 2번째 회의(Part 1) 프로토콜. 이 논의의 기초가 된 질의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쟁점을 다룬다.

-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을 위한 브란덴부르크주 의회의 기준.
- "가톨릭 주교위원회" 및 당시 문서 상태의 평가(슈타지 검증에 대해 1990/1991).
- 새롭게 설치될 평가위원회의 특화된 임무 규정, 권리 규정, 그 구성에 관한 사항 등.
- 의석 인정이 가능한 경우(긍정적 검증 결과의 경우)에 대한 헌법적 평가.
- 의석 인정을 위한 절차 및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법 개정.
- 한편으로 사민당, 좌파, 녹색연합, 다른 한편으로는 기민당이 제출한 법 초안 평가.
- 검증 기한의 연장.
- 과거 슈타지 협력 사실이 있는 해당인 혹은 그러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해당인의 경우에 있어 계속적인 주의회 참여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 정당과 협회 내에서 동독 슈타지에 대한 공조 여부 및 소속 여부에 대한 판단.
- 슈타지 소속이 입증된 경우 피선거권 보장에 대한 평가.

출처_ 브란덴부르크 의회 기록시스템(PARLDOK-BB).

문서 번호 58

제11차 의원법 개정법(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최고위원회-의결제안 및 보고서

2010년 1월 19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최고위원회 A1.

내용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는 슈타지 활동과 관련하여 의원에 대한 검증 규정을 확대하기 위해 상기 법을 권고한다.

본 보고서는 동 법안의 발전 과정을 서술한다. 녹색연합이 2009년 10월 21일 제출한 법 초안에 기초하여, 주의회는 최고위원회 A1으로 법안을 넘겼다. 기민당 원내교섭단체는 2009년 12월 2일 자체 법 초안을 제출했다. 2010년 1월 13일 공개 질의에서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동 작업된 법 초안은(첨부) 2010년 1월 19일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2010년 1월 21일 의회의 승인을 거쳐 모든 정당이 이에 합의했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 의회기록시스템(PARLDOK-BB).

문서 번호 59

제11차 의원법 개정법(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

브란덴부르크주

2010년 1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내용_

이 법은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의원법 33조(의원 검증 규정)를 보충한다.
의원들은 슈타지 활동에 연루되었는지 그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특히 정직원 신분이었는지, 비공식 협력자였는지 여부를 포함).
검증을 위해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BStU)의 협조가 요청된다.
주의회에는 검증 대상인 해당 의원의 슈타지 협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독립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주 법공보 및 규정공보, 21년차, 3번.

문서 번호 60

브란덴부르크주 의원 검증에 대한 논쟁

1991년 11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유스트 의원(사민당), 디스텔 박사(기민당), 푹스(자민당), 슈만 교수(민주사회당/좌파), 노케(녹색연합), 주지사 슈톨페 박사(사민당).

내용_

- 사민당 유스트 의원은 흑백논리의 사고방식에 대해 경고한다. 과거에 대한 공동의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비공식 협력자는 간부도 아니었고 밀고자도 아니었다. 이를 법적인 잣대로 공론화하게 되면, 누군가는 판사 역할을 해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피고인 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정작 우두머리는 처벌받지 않는데 비해 경미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심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비르틀러 의원(사민당)의 견해에 따르면 브란덴부르크주 의회는 의식적으로 다른 주의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있다. 과거사 검증의 최고 목표는 결국 유권자의 신뢰를 확인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 기민당 의원 디스텔 박사는 의원에 대한 과거사 검증에 찬성한다. 그는 선거 바로 직전에 여론을 겨냥한 비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사 청산을 마녀사냥 또는 종교재판에 비교했던 작가 슈테판 하임을 거론했다. 현재의 죄인들과는 달리 당시 마녀들에게는 변론 기회가 제공되기까지 했었다. 대부분의 구 동독인들은 정당하게 행동했으며, 그들 중 하나라는 사실에 여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 자민당 의원 푹스는 평범한 개별 시민에게 성급하게 슈타지 연루 혐의가 있다고 선포한 후에 이들을 "과거의 인물"이라고 치부하는 행위는 무책임하다고 여긴다.
- 민주사회당/좌파 의원 슈만 교수는 당의 모든 의원들이 과거 슈타지 또는 국가안보부 정직원/비공식 협력자 연루 여부 검증 절차에 주저함 없이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 Bündnis 90의 의원 노케는 흑백 이분법 논리에 대해서 경고한 사람은 그 최종 혼합물이 결국 회색톤 밖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검증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면, 결국 의석을 확보한 정치인들은 이러한 요구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구 동독에 희생자만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가해자들 중 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 주지사 슈톨페(사민당)가 이끄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의원 검증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제 1차 회기, 제30차 회의, 총회 프로토콜 2,230~2,245 페이지.

문서 번호 61

브란덴부르크주 의회-주지사 만프레드 슈톨페의 동독 슈타지 공조에 대한 조사위원회 1/3 최종보고서

1994년 5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주지사 만프레드 슈톨페.

내용_

1992년 2월 12일 브란덴부르크주 의회는 주지사 만프레드 슈톨페의 슈타지 비공식 협력자 활동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의회 조사위원회 1/3을 설치한다. 1994년 4월 29일 제53차 회의에서 조사위원회는 최종보고서(문서 발췌)를 가결했다.

조사 대상기간은 약 30년이며, 이 기간 동안 만프레드 슈톨페는 구 동독 개신교 업무를 맡았고, 그 중 수년 간 정부와의 협상에서 법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다.

만프레드 슈톨페는 60년대 중반부터 1989년까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슈타지와 접촉했음이 밝혀졌다. 그는 비공식 협력자인 "서기관"이었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사실이나 문서는 없었다. 슈타지와 정보를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교회 업무상 협상의 범주일 뿐 제3자를 해친 것은 아니라고 평가되었다.

슈톨페가 어떤 식으로, 또 왜 슈타지의 공로상을 받았는지는 최종적으로 밝혀낼 수 없었다. 공동 모의적인 성격의 수여라고는 볼 수 없다.

슈톨페가 서독 정치인들과 대화를 계속했던 점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슈타지와의 "상업적 공조" 영역에 대한 슈톨페의 접촉과 관련해서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런 형태의 접촉은 교회업무 범주에서만 이루어졌다.

출국 희망자들에 대한 토지판매와 같은 제3자의 피해 사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만프레드 슈톨페가 슈타지 협력 과정에서 야당 단체와 인물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방해했다는 비난은 입증이 불가능하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 의회 기록집(http://www.parldok.brandenburg.de/parladoku//w1/drs/ab_3000/3009.pdf, 2011.08.11 기준).

문서 번호 62

브란덴부르크주 의회-주지사 만프레드 슈톨페의 동독 슈타지 공조에 대한 조사위원회 1/3 최종보고서

녹색연합의 소수의견

1994년 5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주지사 만프레드 슈톨페.

내용_

조사위원회 다수결로 승인된 만프레드 슈톨페의 슈타지 활동 관련 조사위원회의 결산보고서에 대해 녹색연합은 소수의견으로 맞섰다(첨부자료-결산보고서).

보고서에는 특히 방법적인 절차, 조사원칙 또는 질의범주, 문서화된 자료, 증인 신뢰성과 관련하여 커다란 허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슈톨페의 자기진술은 과대평가되고, 반면 슈타지 문서 관련 연방 특임관의 결론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녹색연합은 특히 다음 요소와 관련하여 다른 평가를 내렸다.

- 슈톨페에 의한 슈타지와의 협상 또는 정보교환은 교회 측의 요구나 교회의 사전 인지 없이 자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슈톨페가 자신의 동독 슈타지 접촉을 합법화하기 위해 도입한 "3기둥이론"은 자문단에 의해 반박 당했다.(이 이론에 따르면 구 동독 정부, 사회통일민주당 지도부 또는 슈타지와의 접촉은 모두 동일한 결정주체로 귀결된다. 이때 슈타지를 통한 접촉경로는 정치적으로 합법적인 것이다.)
- 슈톨페는 제3자가 있을 때에만 교회 및 시민의 관심사를 대표했다. 개별 대화에서 그는 자주 교회 지도부나 야당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었다.
- 슈톨페와 슈타지 사이에 문서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협력 형태는 비공식 협력자인 "서기관"의 기능에 대한 모종의 합의를 가리킨다.
- 슈톨페의 발언과 달리 그는 슈타지의 공로상을 수여받았다.
- 서독 정치인 또는 야당인사에 대한 정보전달 및 그에 상응되는 영향력 행사는 (굳이 보고서를 참조하지 않더라도) 슈타지와의 접촉을 통해 보장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 의회 기록집(http://www.parldok.brandenburg.de/parladoku//w1/drs/ab_3000/3009.pdf, 2011.08.11 기준).

문서 번호 63

슈톨페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결의제안

1994년 6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조사위원회 1/3, 볼프강 비르틀러, 페터 미하엘 디스텔, 지그프리드 리츠만, 미하엘 슈만, 롤프 베트슈테트.

내용_

의원 5인은 만프레드 슈톨페의 동독 슈타지 협력 관련 조사위원회 1/3의 보고서에 대한 반응으로 다음의 결의 신청을 냈다.

1. 동서독의 내부적인 통합 문제는 양쪽 독일에서 공동으로 함께 고찰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2. 각 인물의 과거 경력에 대한 검증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다루어야 한다.
3. 속단과 기본법 침해는 관련 있는 사람들이 자기책임과 잘못을 오히려 고백하기 어렵게 만든다.
4. 슈톨페 케이스는 상기 세 가지 조건의 필요성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모든 경우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작업은 법치 국가적인 기반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6. 개별적인 경우에 대한 검증은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협력을 하게 된 동기, 형태, 기간 및 기타 고려할만한 요소 등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7. 이러한 기본 원칙은 특히 모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한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발행물 1/3098.

문서 번호 64

“만프레드 슈톨페의 인민소유 경영체제” 브란덴부르크의 연방주개발회사(LEG)에 연루

2001년 8월 1일

담당자 / 기관_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조사위원회 LEG.

내용_

포츠담주 의회의 조사위원회는 연방주개발회사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브란덴부르크주의 시 건설, 주거 및 교통 분야에 아무런 수익성도 없이 써버렸는가에 대한 질문 해명을 그 임무로 한다.

지금까지의 실무 추진 방식 및 실행되었던 사업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출처_ 베르그 슈테판, 2001년, 만프레드 슈톨페의 인민소유 경영체제. 슈피겔 32/2001. 42~43 페이지.

문서 번호 65

"앙케이트 위원회 감정서: 슈톨페는 동독 슈타지와의 접촉을 이유로 의석을 잃어야만 했었다"

2011년 6월 12일

담당자 / 기관_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내용_

앙케이트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주교위원회는 수많은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의원들을 너무 관대하게 대했다. 그들은 동독 슈타지 연루 사실 때문에 의석을 박탈당해야 옳았다.
특히 사안이 중대했던 케이스와 앙케이트 위원회의 작업 진행 방식에 대한 설명이 뒤따른다.
사민당과 좌파는 민주적인 새로운 시작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원회의 활동을 반대했다.

출처_ 알렉산더 프뢸리히, 2011년. 앙케이트 위원회 감정서. 슈톨페는 동독 슈타지와의 접촉을 이유로 의석을 잃어야만 했었다. 포츠담 최신 뉴스 2011.06.12.

문서 번호 66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토지 문제 및 공공 발주 비정규성에 대한 조사위원회 1/5의 중간보고서

1994년 6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의회 조사위원회 1/5, 시 개발부, 주거교통부(MSWV), 요헨 볼프 장관, 시 건설을 위한 주개발협회, 브란덴부르크주 주거와 교통(LEG), 부동산 업자 악셀 힐퍼트.

내용_

의회 조사위원회 1/5는 1993년 9월 29일 설치되어 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다(그 후 위원회는 해체됨). 전임 주거교통부장관 요헨 볼프(사민당)와 해당 부처의 몇몇 직원들, 토지 문제와 공공 발주의 비정규성 관련 LEG와 몇몇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볼프 장관은 악셀 힐퍼트(구 동독 시절 "상업적 조정"의 골동품 매입자이자, 슈타지의 비공식 협력자)를 통해 그로스 그리니케라는 유령회사 명의로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싸게 토지를 매입한 혐의가 있었다. 악셀 힐퍼트는 그 대가로 제부르크지역 건축 부지를 넘겨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LEG는 제부르크지역 개발계획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 증거 입수와 조사가 이어졌으나 시간 부족으로 완료되지는 못했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 의회 기록집(http://www.parldok.brandenburg.de/parladoku//w1/drs/ab_3000/3012.pdf, 2011.08.02 기준).

문서 번호 67

"슈빌로프 호수의 공중누각 주인"-악셀 힐퍼트

2011년 6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악셀 힐퍼트.

내용_

5성급 리조트 슈빌로프 호수의 경영인이자, 공동소유자인 악셀 힐퍼트가 체포되었다. 포츠담 검찰은 1년 넘게 보조금 사기 혐의로 그를 조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힐퍼트 개인의 배경에 대해 서술한다. 그는 부동산 업자, 호텔 소유자, 기업 컨설턴트이자, 쿠바군 명예대령, 구 동독시절 예술품 및 골동품 거래업자, 과거 동독 슈타지 협력자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슈빌로프 호수의 리조트 시설을 방문했다. 일례로 2007년에는 G8 재정장관 회담이 이곳에서 열렸고, 2008년에는 사민당이 연방전당대회를 개최했다.

악셀 힐퍼트는 구 동독과 쿠바 간에 조인트 벤처를 창립하고, 주로 서독 사업가들의 도움을 받아 관광 및 골동품 거래를 지원했다.

힐퍼트는 1979~1989년 사이에 비공식 협력자인 "모니카"로서 동독 슈타지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결정적으로 그는 구 동독 외화 조달조직이었던 "상업적 공조" 소속이었다.

출처_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 2011년 6월 11일 자.

문서 번호 68

"슈빌로프 호수의 조용한 전원경치"
악셀 힐퍼트, 브란덴부르크 시골뜨기에 대한 혐의

2011년 6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악셀 힐퍼트.

내용_

5성급 리조트 슈빌로프 호수의 경영인이자 공동소유자인 악셀 힐퍼트가 체포되었다. 힐퍼트는 초과 지원금(9백만 유로)을 받았다고 한다. 힐퍼트는 특히 예술품 및 골동품 구매와 관련하여 구 동독 측 책임자이자, 쿠바 문제에 관한 조정관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정치계 및 경제계와 얽혀있었기 때문에 정부 측(예: 전임 경제장관)과 투자은행의 공모가 의심된다.

출처_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 2011년 6월 13일 자.

문서 번호 69

"브란덴부르크에서 동독 슈타지 적발. 주의회 부의장 사임"

게르린데 슈토브라바와 레나테 아돌프

2009년 11월 30일

담당자 / 기관_ 게르린데 슈토브라바, 레나테 아돌프.

내용_

연방특임관 비르틀러가 2명의 의원이 동독 슈타지와의 과거사에 대해 침묵했다는 문건을 수집한 후, 슈토브라바는 부의장직을 사임했으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젊은 여성으로서 해외 첩보에 관여했던 레나테 아돌프는 의원직도 사임했다.

출처_ 슈피겔 온라인, 2009년 11월 30일, 15시 59분. URL-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664299,00.html(2011.08.02).

문서 번호 70

동독 슈타지 공조에 대한 게르린데 슈토브라바의 성명

2009년 12월 1일

담당자 / 기관_ 게르린데 슈토브라바,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내용_

BStU(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슈토브라바는 슈타지 비공식 협력자였음을 부인하고, 해당 관청에 의무 성명을 제출하지 않았다.

슈토브라바의 동독 슈타지 연루설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위원회가 슈토브라바를 "경계 케이스"로 분류했을 때다. 슈토브라바는 이에 검증 서류를 제출했다.

슈토브라바는 어떤 식으로 비공식 협력자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물론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슈타지 다른 협력자들과의 공조는 시인했다.

또한 그녀는 구 동독시절 정치적 이력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부의장직을 제안 받았을 때 원내교섭단체에 비공식 협력자인 "마리사"로 등록된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이 같은 정보는 주의회 홍보자료에 실렸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출처_ 게르린데 슈토브라바 홈페이지, URL-http://www.gerlindestobrawa.de/fileadmin/lcmskarinniederstrasser/Gerlinde_Stobrawa/pdf/biographie/bstu/Erklaerung_Gerlinde_Stobrawa.pdf(2011.08.02).

문서 번호 71

"새로운 동독 슈타지 스캔들, 포츠담 좌파 압박"-미하엘 루트하르트

2009년 12월 2일

담당자 / 기관_ 미하엘 루트하르트, 브란덴부르크 사민당-민주사회당 연정.

내용_

브란덴부르크의 한 TV잡지 조사에 따르면 주의회 의원 미하엘 루트하르트는 슈타지 실무단체에서 군복무를 했다.

브란덴부르크 좌파의 동독 슈타지 연루 사실이 거듭 적발됨에 따라 기민당은 주지사 플라첵(사민당)에게 민주사회당과의 연정을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_ 슈피겔 온라인, 2009년 12월 2일, 14시 07분. URL-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664776,00.html(2001.08.10).

문서 번호 72

“플라첵, 사회통일민주당 유산과 화해할 것을 촉구”

2009년 10월 31일

담당자 / 기관_ 마티아스 플라첵.

내용_

브란덴부르크 주지사 플라첵은 슈피겔 에세이에서 전 사민당 대표 쿠르트 슈마허의 무장 국가사회주의 정당군(Waffen-SS)과 관련한 화해 법안이 과거 통합 및 청산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케이스임을 예로 들었다.

좌파와 협력하기 위해 기민당과의 연정을 파기한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신호였다고 서술했다.

출처_ 슈피겔 온라인 2009년 10월 31일, 15시32분. URL-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658493,00.html(2011.08.06).

문서 번호 73

"좌파 대표 토마스 노르트는 자신이 동독 슈타지 간부였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회로부터 검증 절차를 거친 유일한 간부였다."

2011년 3월 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의원 토마스 노르트.

내용_

이 기사는 브란덴부르크 좌파의 주대표이자 직선 연방의회의원인 토마스 노르트 케이스에 대해 서술한다. 토마스 노르트에 대한 검증은 기민/기사당의 요청으로 동독 슈타지 협력과 관련된 제1차 연방의회 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1990년 이후 자신의 협력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브란덴부르크 의원들의 동독 슈타지 적발 건 때문에 이 케이스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출처_ 베를리너 차이퉁, 2011년 3월 30일 자.

문서 번호 74

연방의회 의원 토마스 노르트의 동독 슈타지 검증 과정 보고서

2011년 7월 5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의회, 선거조사위원회, 면책특권 및 국회법(제1 위원회).

내용_

제1위원회는 연방의회 의원 토마스 노르트(브란덴부르크 좌파의 주 대표)의 동독 슈타지 협력 관련 검증 절차를 상세하게 보고했다.

기민당/기사당 원내교섭단체는 2011년 2월 25일 검증을 요청했다. 이는 노르트가 20년 넘게 동독 슈타지의 비공개 협력활동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BStU)에 의한 검증을 진행하고, 연방의회 발행물을 통해 이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했으며, 이 같은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Part A에는 절차의 기본원칙이 밝혀져 있다(의원법 44c조에 따른 조사).

Part B는 구체적인 절차 단계에 대해 서술한다.

Part C는 노르트가 비공개 협력자로 활동했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들이 나열되어 있다(인터넷 사이트, 언론기사).

Part D는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BStU)이 전달한 토마스 노르트 의원 관련 문서에 대해 설명한다. 이 Part는 각각 2, 3 페이지 분량의 두 가지 조사 결과서와 각각 34, 64 페이지 분량의 복사본 2부로 구성된다. 관련 시기는 1978~1989년이다.

Part E는 토마스 노르트 본인의 입장표명과 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에 대한 청문회 내용이 기재된다.

Part F에서 위원회는 노르트의 비공개 협력활동이 증명되었고, 이 보고서가 관련인에게 위험하고, 해로운 영향(입증 불가능)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출처_ 독일연방의회 기록 및 정보시스템(http://dipbt.bundestag.de/dip21/btd/17/064/1706436.pdf, 2011.07.30 기준).

문서 번호 75

"'브란덴부르크 노선'은 프로이센 전통의 재수용이다"

알렉산더 가우란트

2011년 7월 10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알렉산더 가우란트.

내용_

알렉산더 가우란트는 본 기사에서 브란덴부르크주의 성격과 정치적인 "브란덴부르크 노선"의 역사적 발전 상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내륙이고, 매장된 지하자원도 거의 없으며, 척박한 농지만 있을 뿐이다. 원래부터 가난한 주였으나 역사적으로 그 영향력은 컸다.

1415년 브란덴부르크주는 독일황제에 의해 호헨졸렌 왕조로 넘어갔다. 그 결과 현명한 정치를 통해 브란덴부르크주를 유럽 권력구조에 자리 잡게 한 위대한 인물들의 지배가 이어졌다. 1701년부터 브란덴부르크 제후는 브란덴부르크를 주로 삼는 프로이센의 왕이 되었다.

1989년 이후 소위 "브란덴부르크 노선" 안에서의 신중한 정치가 부활했다. 이는 구 브란덴부르크 전통으로의 회귀를 말한다. 구 동독의 붕괴는 결과적으로 가능한 부드럽게, 즉 동독 슈타지 성명에서와 같이 극단적인 결단성 없이 완수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를 지배하는 정당으로서 사민당 정부의 영속성과 주지사 슈톨페의 면책특권은 위대한 인물과 광범위한 통합을 강조하는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역사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러나 브란덴부르크주는 점차 인구에서나 경제적으로 그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브란덴부르크 노선"은 더 이상 실질적으로 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 정체성을 선동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출처_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 2011년 7월 10일 자.

문서 번호 76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내에 앙케이트 위원회 설치 제안

2010년 3월 9일

담당자 / 기관_ 기민당, 자민당, 녹색연합의 원내교섭단체 의원들.

내용_

-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야당의원들은 “역사 청산과 사회통일민주당 독재 결과 극복 및 브란덴부르크주의 민주법치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 사회통일민주당 독재 이후 20년의 시간을 고찰해 보고, 다른 연방주들과 상호 비교해 보아야 한다. 주 의회와 지방단체는 어떻게 과거를 청산하였는가? 연루 문제는 어떻게 검증했는가? 주민들의 신뢰는 강해졌는가? 특히 교육 정책과 스포츠 부문에서 어떤 역사적 사실이 부각되었는가? 차별 받은 사람/박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동반자 관계에 있는 다른 연방주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집단농업경제는 어떻게 다루었는가?
- 위원회는 7인의 주의회 의원과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사민당과 좌파가 각각 2명씩의 의원과 전문가를, 다른 원내교섭단체들이 각각 1명씩을 임명한다. 위원회는 약 2년간 활동하고(행정법안, 전문감정서, 이해관계 대표와 증인 청문회), 주의회 대표부의 지원을 받으며, 공개 보고서를 작성한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제5차 회기, 간행물 5/554. http://www.landtag.brandenburg.de/sixcms/media.php/5701/554.pdf

문서 번호 77

브란덴부르크 사회통일민주당 청산 관련 앙케이트 위원회(EK 5/1)

사민당과 녹색연합 발의 확장 제안

2010년 3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사민당과 녹색연합 원내교섭단체.

내용_

사민당과 녹색연합은 앙케이트 위원회에게 브란덴부르크주의 통일 전환과정 진행과 지금까지의 결과 조사를 위임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살펴보아야 한다.

-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제발전 방식
- 정치문화의 민주적 견고화
- 사회통일민주당 독재와 관련하여 내부 통합과 과거청산 사이의 긴장 관계
- 자산구조의 변화
-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영향력 있는 구 연방주 출신 행정고위관료들의 활동

이러한 신청을 한 이유로는 브란덴부르크주 재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시대적 동시성의 딜레마"가 강조되었다. 즉, 이제 막 자리 잡힌 사회구조, 기관 및 조직이라 할지라도 변화에 대한 거대한 압력이 있었으므로, 초반부터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해야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구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건립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때문에 그럴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http://www.landtag.brandenburg.de, 2011.06.26 기준).

문서 번호 78

“조직화된 망각”-브란덴부르크 앙케이트 위원회에 대해

2010년 4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숨겨진 동독 슈타지 연루 문제를 다루는 앙케이트 위원회.

내용_

구 동독 과거사를 투명하게 다루어야한다는 귄터 플라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991년 동독 슈타지 조사 자료는 이전과 다름없이 비공개로 남아있다. 최소한 5명의 주의회 의원들이 혐의가 있다고 한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정당 간부들은 혐의가 있는 당원들과 연대 결속했다. 연방주 공무원에게 슈타지 재직 기간을 인정해주는 법안이 공포되었다.

출처_ 슈테판 베르크/페터 벤지르스키, 2010년. 조직화된 망각. 슈피겔, 4/2010, 36-38 페이지.

문서 번호 79

앙케이트 위원회 2번째 회의 프로토콜

2010년 8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역사 극복 및 사회통일민주당 독재 결과 청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주의 민주법치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앙케이트 위원회, 2010년 7월 9일 회의.

내용_

- 다른 모든 위원회 회의와 마찬가지로 공개로 열림.
- 위원회는 일곱 가지 중점 테마에 대해 합의함. 통일 전환과정의 특성, 진행 과정 및 그 결과, 역사적 의미 및 일반적 고찰, 사회통일민주당 정권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속적인 인정, 고위직 가운데 자리를 계속 보전하는 인물 및 교체되는 인물을 상대로 한 인물 적합성 평가, 교육-교사(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 브란덴부르크 통일 전환과정에서 자산의 운용, 미디어 환경 및 미디어 다양성.
- 다음 회의까지 질의와 절차 제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증인과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어떤 주제와 질의에 대해 어떤 소견서를 위임할 필요가 있는가?
- 2010년 10월 회의에서 첫 번째 중점 주제에 대해 내용적인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 표본에 따라 구조화되어야 한다. 동기부여 발표서, 소견서, 증인, 토론 등.
- 위원회에 보낸 서한은 모든 위원회 멤버와 공산주의 독재 결과 청산을 위한 브란덴부르크주 특임관에게 공개해야 한다.
- 위원회는 선전용 인쇄물과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업과제와 구성원을 소개한다. 매년 열리는 브란덴부르크의 날에 대표 참석.

출처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제5차 회기, P-EK 5/2. http://www.landtag.brandenburg.de/sixcms/media.php/5701/2.pdf

문서 번호 80

앙케이트 위원회 3번째 회의 프로토콜

2010년 9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역사 극복 및 사회통일민주당 독재 결과 청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주의 민주법치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앙케이트 위원회, 2010년 8월 27일 회의.

내용_

- 다른 모든 위원회 회의와 마찬가지로 공개로 열림.
- 다소 비포괄적인 소견서는 3천 유로, 포괄적인 소견서는 5천 유로. 전문가 제안서는 학술 관련 이력(제안자의 전문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을 첨부해야 함. 공산주의 독재 결과 청산을 위한 브란덴부르크주 특임관과 위원회 구성원은 전문가로 위임 받을 수 없음.
- 위원회 발표자는 위원회 대표의 동의에 따라 선행 작업(특히 조사와 기존 데이터 자료 조합)을 위임 받을 수 있음. 발표자는 여러 주정부의 공고와 과거사 청산 관련 이니셔티브에 대한 개관을 만들어야 함. 또한 브란덴부르크 주민들이 갖고 있는 구 동독에 대한 이미지 및 민주주의 이해와 관련된 일반데이터 자료를 취합하고, 여론조사기관에 상응하는 질의를 하는 한편, 이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문의해야 함. 설문조사 비용은 만 유로 단위여야 함.

출처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5번째 선임기간, P-EK 5/3. http://www.landtag.brandenburg.de/sixcms/media.php/5701/3.15591804.pdf

문서 번호 81

앙케이트 위원회 4번째 회의 프로토콜

2010년 11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역사 극복 및 사회통일민주당 독재 결과 청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주의 민주법치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앙케이트 위원회, 2010년 9월 24일 회의.

내용_

- 다른 모든 위원회 회의와 마찬가지로 공개로 열림.
- 위원회 멤버는 구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BStU)의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관해 질문을 받음. 위원회 멤버가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BStU)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위원회 대표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함.
- 2010년 감정서에 지출된 비용은 12만 5천 유로, 2011년 지출된 비용은 35만 유로, 2012년 지출된 비용은 12만 5천 유로임.
- 다음 감정서에는 각각 5천 유로가 지급됨. "야당과 반발의 가치보호 및 브란덴부르크주 내의 부조리 인정", "브란덴부르크주가 과거 정치적으로 박해 받은 자와 다른 주에 비해 차별 받은 자를 대하는 방법", "주의회, 주정부 및 주행정부의 인사 관리 영속성과 엘리트 이동", "미디어 보고 작성 내용과 형식", 및 첫 번째 브란덴부르크주 의회(1990-1994) 의원들에 대한 세 가지 소견서. 브란덴부르크주 지방 심사 및 "인사와 제도의 과도기"를 다룬 두 가지 소견서에는 각각 3천 유로의 비용이 지불됨. "변호사 영역의 인사 관리 영속성과 엘리트 이동"에 관한 한 가지 소견서는 중단됨.
- 다음 주제에 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함. "공공기관, 사회조직 및 정치적 책임자들이 과거 정치적으로 박해 받은 자와 차별 받은 자를 대하는 방법" 및 "야당과 반발의 가치보호 및 브란덴부르크주 내의 부조리 인정"
- 주제 Ⅴ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네 가지의 소견서 주제가 의결됨. 자산변형(개관), 브란덴부르크의 농업역사, 브란덴부르크 농업의 구조와 발전, 1989년 이후 브란덴부르크주 농업의 자산변형.
- 위원회는 브란덴부르크주 문서보관서(BLHA)에 첫 번째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자료 열람을 요청함. 브란덴부르크주 문서보관서(BLHA)는 동독 슈타지 문서법과 연방 문서보관서를 이유로 이를 거절함.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BStU)은 권한을 강화하고 문서 열람을 거절함. 주(州) 문서보관서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음. 보호기간이 끝난 후에, 경우에 따라 익명화와 신뢰성이 전제로 되었다면 문서열람은 가능했을 것임. 관계자가 승인하면 때때로 보호기간은 단축될 수 있음. 위원회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에 지원을 요청함. 좌파와 사민당 위원회 멤버는 위원회가 과거를 향해서 갈 수는 없다는 생각임.

출처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제5차 회기, P-EK 5/4. http://www.landtag.brandenburg.de/sixcms/media.php/5701/4.15596114.pdf

문서 번호 82

앙케이트 위원회 7번째 회의 의결 프로토콜

2011년 2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역사 극복 및 사회통일민주당 독재 결과 청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주의 민주법치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앙케이트 위원회, 2011년 1월 21일 회의.

내용_

- 다른 모든 위원회 회의와 마찬가지로 공개로 열림.
- 구 동독의 학설 이론, 연구, 교육에 대한 소견서 및 브란덴부르크 기관들의 역사 인식에 관한 문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
- “스포츠” 관련 소견서를 발주해야 함.
- 브란덴부르크 문화, 경제정책의 핵심적 결정사항, 1989/1990년 이전의 농업사, 1989/1990년 이후의 농업사, 비교 관찰 및 브란덴부르크 농업정책의 핵심적 결정사항에 관한 소견서에는 각각 5천 유로가 지불됨. 브란덴부르크 농업경제 중 자산변형에 관한 소견서에는 3천 유로가 지급됨.
- 브란덴부르크 농업사, 1989년 이후 자산변형 및 “신탁관리” 관련 청문회 대상이 정해짐. 브란덴부르크주지사(1990-2002) 만프레드 슈톨페도 청문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 받음.
-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농업 경제발전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1989년 이후 농업생산조합(LPG)의 변화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 받음.

출처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제5차 회기, P-EK 5/1-7, http://www.landtag.brandenburg.de/sixcms/media.php/5701/Beschlussprotokoll%207.%20Sitzung%20EK%205_1%2021.01.2011%20inkl.%20Anlage.pdf

문서 번호 83

앙케이트 위원회 10번째 회의 프로토콜

2011년 6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역사 극복 및 사회통일민주당 독재 결과 청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주의 민주법치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앙케이트 위원회, 2011년 5월 20일 회의.

내용_

- 다른 모든 위원회 회의와 마찬가지로 공개로 열림. 이 회의는 브란덴부르크 학교 문제를 다룸.
- 고등학교 여교사, 독일역사교사협회 산하 브란덴부르크 주협회 대표, 정치교육을 위한 독일협회 산하 브란덴부르크 주협회 제1대표 및 교육학 교수가 청문회에 참석함.
- 베를린에 소재한 포르사 유한회사(Forsa GmbH)는 브란덴부르크 시민들의 구 동독 인식에 대한 설문을 위임 받음.
- 위원회 문건은 앞으로 서버에 저장될 뿐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서도 전송이 됨.
- 주의회 원내교섭단체의 일원이 위원회를 위한 소견서를 작성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왜냐하면 예를 들어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를 위한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임.
- 브란덴부르크 초등학교에서는 구 동독의 역사, 평화혁명 및 통일과정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다루어지지 않음. 그러나 자유선택적 내용이거나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서는 가능함.
- 브란덴부르크주 학교에서는 지역적인 사건에 부합하는 교외 학습장소 방문이 자유선택적임. 이는 관련 장소들이 브란덴부르크주 전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해 불가능함.
- 소풍계획이 있더라도, 그를 위한 자금이 없는 경우가 있음. 소풍은 학생의 부모/가족에 의해 재정 지원될 수 없음.

출처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제5차 회기, P-EK 5/10, http://www.landtag.brandenburg.de/sixcms/media.php/5701/Protokoll%2010.%20Sitzung%20EK%205_1_20.05.2011%20inkl.%20Anlagen.pdf

문서 번호 84

사회통일민주당 평가를 위한 브란덴부르크 앙케이트 위원회(EK 5/1) 인물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의견서(뤼디거/카텐후센)

2011년 6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기셀라 뤼디거, 한스 크리스티안 카텐후센.

내용_

"역사 극복 및 사회통일민주당 독재 결과 청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주의 민주법치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앙케이트 위원회(EK 5/1)의 위임을 받은 의견서.

주행정부에는 1990년 이후 중앙에서 규정한 동독 슈타지 평가 절차가 없었다. 평가는 관할 소관이었다. 예를 들어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MBJS)가 세부규정을 마련한 반면, 총리청과 내무부에서는 어떤 발의도 없었다. 새롭게 입수할 수 있었던 동독 슈타지 문서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주행정부 안에서 평가 받은 인물들 가운데 6.6%가 혐의가 있었고, 이들 중 34.1%가 해고되었다. 의견서는 법적, 조직적인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수 있을 때 새롭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회통일민주당 간부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했는지 혹은 계속적인 고용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는 신빙성 있는 공식 통계가 없다. 주행정부에는 구 연방주 공무원들이 고위직을 주로 차지하는 "엘리트 혼합"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주정부와 주의회 구성원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 동독 슈타지 협력과 관련된 해고를 의아하게 생각한다(다수의 개별 케이스 제시). 1990/1991년 첫 번째 판결에서 동독 슈타지 문서 해명은 아직 불완전했다(문서집 제시). 특히 "중앙관청 성명"(HVA) 부분의 많은 색인카드가 폐기되거나 조작되었다. 관재인들은 동독 슈타지 혐의가 있는 자들과 개별면담을 하고, 많은 경우 문서집 내용에 반하는 의심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냈다. 의회 내 공식성명 혹은 담화는 없었다.

제 1차 회기에 대한(1990-1994) 평가를 위해 "명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의원 100명 가운데 14명의 동독 슈타지 협력 사실을 밝혀냈으나, 결산 보고서 상에서는 2명(주지사 만프레드 슈톨페 건 포함)을 싣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5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제2차 회기부터 제4차 회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활동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평가 담당자들은 제2차부터 제4차까지의 회기 동안 각각 12건, 8건 및 10건의 동독 슈타지 협력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제5차 회기인 2009년부터는 정기적 검증 절차가 정식으로 도입되었다(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음).

모든 신연방주에서는 주의회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결과는 부분적으로 익명화되었다. 제1차 회기 이후 평가 연기는 브란덴부르크주에서만 발생했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 의회기록시스템(PARLDOK-BB, 2011.07.26).

문서 번호 85

“브란덴부르크-베를린 야당: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도 동독 슈타지와의 관련 여부를 검증해야 함”

2011년 7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야당(기민당, 자민당, 녹색당).

내용_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판사 약 800명에 대해서 구 동독 슈타지와의 협력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압력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 브란덴부르크 경찰이 동독 슈타지 연루 여부를 조사 받았으니, 이제 판사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시민정신으로 행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분야 신뢰성에 이바지한다.
지금까지는 관청대표에게만 이러한 검증이 가능했다.

출처_ 메쯔너, 토르스텐 2011. 야당: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도 동독 슈타지와의 관련 여부를 검증해야 함. 포츠담 새로운 뉴스, 2001년 7월 21일, 16 페이지.

문서 번호 86

브란덴부르크주지사 마티아스 플라첵에게 동독 슈타지 전문가 크리스티안 부스가 보낸 공개서한

2011년 7월 25일

담당자 / 기관_ 크리스티안 부스가 마티아스 플라첵에게.

내용_

부스는 당시 작업의 목적을 브란덴부르크주를 "작은 구 동독" 이미지에서 탈피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화를 방해하는 주범은 "정신적인 장애물"이다. 이는 구 동독 과거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당들의 책임이다.

특히 브란덴부르크 변형 주제에 관한 연구관련 작업이 불충분했던 데에는 주교위원회의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주정부는 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처_ 포츠담 새로운 뉴스, 2011년 7월 25일.

문서 번호 87

“브란덴부르크 정당들은 침묵 카르텔을 형성했다”

브란덴부르크 정당 및 사회통일민주당 독재에 관한 앙케이트 의견서에 대해

2011년 8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앙케이트 위원회, 마리오 니만, 크리스토프 부니케, 에어하르트 노이베르트.

내용_

역사학자 마리오 니만, 크리스토프 부니케 및 에어하르트 노이베르트는 동독 슈타지 검증 실무에 관한 의견서에서, 사민당과 민주사회당 이외의 야당 간부급 인사들도 동독 슈타지 협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확인한다.

사민당/민주사회당과는 달리 기민당은 사회통일민주당 독재 시절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완전히 배제했다.

출처_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 2011년 8월 1일, 14시 36분. URL-http://www.tagesspiegel.de/berlin/brandenburgs-parteien-bildeten-einschweigekartell/4450276.html (2011.08.02).

문서 번호 88

“구 동독은 모든 것을 만회했다”

브란덴부르크 정당 및 사회통일민주당 독재에 관한 앙케이트 의견서

2011년 8월 2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정당과 과거 고찰.

내용_

만프레드 슈톨페의 과거를 둘러싼 다툼 때문에 브란덴부르크 사민당은 지금까지 사회통일민주당 독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브란덴부르크 기민당과 자민당 역시 지금까지 사회통일민주당 독재 시절의 연합정당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불충분한 토론을 했을 뿐이다.

자신의 과거사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 좌파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의견서는 밝혔다.

녹색연합 역시 태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 정책에 대한 청산은 전혀 하지 않았다.

출처_ 메쯔거 토르스텐. 2011. 구 동독은 모든 것을 만회했다.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 2001년 8월 2일, http://www.tagesspiegel.de/berlin/die-ddr-hat-alle-eingeholt/4453480.html (2011.08.02).

문서 번호 89

브란덴부르크 정당의 인사 관리 영속성과 엘리트 이동

앙케이트 위원회 의견서

2011년 8월 19일

담당자 / 기관_ 에어하르트 노이베르트, 마리오 니만, 크리스토프 부니케,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사회통일민주당 독재 청산 관련 앙케이트 위원회(EK 5/1: 앙케이트 위원회).

내용_

노이베르트, 니만, 부니케는 각 정당 및 해당 정당이 과거사 청산과 슈타지와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 의견서를 앙케이트 위원회에 전달했다.

모든 입법 회기 동안 사회통일민주당 간부 출신 또는 동독 슈타지 과거를 가진 민주사회당/좌파 의원들이 재직했고, 이들 중 일부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당은 해당 주제를 상당히 개방적으로 다루는 편이다. 동독 슈타지 협력 여부에 대한 검증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예외 없이 개별 조사 사안의 형태로 진행된다. 민주사회당/좌파는 변혁기에 어떤 서독 정당과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통일민주당으로부터의 분리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낮았다.

기민당과 자민당은 구 동독 연합정당의 후신으로 나섰다. 변혁 이후에 두 정당은 정치적 일상사에서 "브란덴부르크 노선"을 지지했고, 많은 간부급 정치인들이 사회통일민주당과의 과거 공조에도 불구하고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제2차 회기부터 비로소 브란덴부르크 기민당은 그와 거리를 두고, 2009년 신연방주에서는 최초로 연합정당 과거가 있는 당원이 한 명도 없는 정당이 되었다. 정당 지도부는 대부분 서독정치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구 동독에서 1989년 10월 7일 비로소 사민당으로 창당됐다. 야당운동 또는 교회모임(만프레드 슈톨페 포함)의 많은 사람들과 저명한 사회통일민주당 당원들이 가입했다. 1990년 9월 26일 사회통일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서쪽의 사회민주주의와 연계하기 위해 사민당으로 통합했다. 동독 슈타지 문제는 특히 슈톨페 케이스로 말미암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며, 이는 사민당 내부에서도 큰 지지를 받았다. 1994년에는 절대다수표를 획득한다. 동독 슈타지 검증은 취소됐다.

"Bündnis 90"는 1990년 다양한 구 동독 시민운동으로부터 나왔다. 여기에는 사회통일민주당 희생자뿐만 아니라 사회통일민주당 당원들도 포괄되어 있었다. 1992년에는 서독의 녹색당과 연합했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독 슈타지 연루 여부 검증, 특히 면직에 대한 입장은 상반적이었다. 마리안네 비르틀러나 귄터 노케 같은 저명한 Bündnis 정치가들은 슈톨페의 해고에 반대하면서도 지속적인 검증을 계속 진행했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앙케이트 위원회.

문서 번호 90

“신원조회를 따질 시간은 이미 지났다.”

볼프강 티어제, 동독 슈타지 기록에 대한 법원 판결에 관하여

2002년 3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볼프강 티어제.

내용_

티어제는 슈테판 베르그와의 인터뷰에서 헬무트 콜의 동독 슈타지 문서 운용에 대한 연방 행정법원의 판결이 개인의 권리보다 해명 청구를 우선시 해온 지금까지의 관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독일 사회는 물론이고 동독 슈타지 피해자들까지도 통일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드디어 구 동독 시절 동독 슈타지 간부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출처_ 베르그, 슈테판 2002 “신원조회를 따질 시간은 이미 지났다.” 슈피겔지 12/2002, 92 페이지.

문서 번호 91

동독 슈타지 문서 특임관의 권한에 대한 연방총리의 조직적인 결정

2004년 12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총리, 문화 및 미디어 특임관,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BStU), 청산재단.

내용_

동독 슈타지 문서 특임관(BStU) 및 사회통일민주당 독재 청산재단의 권한은 연방내무부에서 연방정부의 문화 및 미디어 특임관에게로 이양된다.

출처_ 연방법률공보 2004년 판 Part 1 76번.

문서 번호 92

동독 슈타지 문서 특임관에 관한 실케 슈토카르 폰 노이포른의 토론 기고문

2005년 1월 14일

담당자 / 기관_ 실케 슈토카르 폰 노이포른, 녹색연합 내 연방의회 국내정책 대변인.

내용_

- 연방총리는 200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을 연방내무부 관할이 아닌 총리청 내 문화부 업무영역에 편입시키겠다고 결정했다. 동독 슈타지 문서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과 연방내무부 권한이 더 이상 중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연방총리의 이 같은 조치는 위법이며, 앞으로도 적절한 과거청산이 가능하리라 계속 희망해도 될지 의문이다.
- 이 같은 편입 조치는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은 연방정부가 아닌 연방의회에게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나 문서관리국 특임관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전혀 주지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은 연방고등관청으로 구성되기는 했지만, 다른 연방관청들보다 그 위상이 독립적이다.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의 법적 위상은 연방 정보보호특임관의 경우를 참고한 것이다. 지금까지 2인의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은 연방의회에 의해 선출되었다.
-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이 해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렇게 되면 기록 문서들은 코블렌츠에 소재한 연방문서보관서로 옮겨진다. 그곳에서는 해당인의 문서와 구 동독 슈타지 협력자의 문서가 서로 구분되지 않을 것이며, 조사 해당인의 사망 후 30년이라는 금지기간이 설정될 것이다.
-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모델이다. 점점 더 많은 외국의 방문객들이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을 견학하고 있다.
- 개별 연방주마다 실제 운용방식이 극도로 다르기 때문에, 기록 문서들을 연방주 자치영역으로 이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_ 통일독일을 위한 독일 기록실 매거진 1/2005, 108-112 페이지

문서 번호 93

슈타지(Mfs)/구 동독 국가안전청(AfNS)을 위한 활동 또는 정치적 책임 문제에 대한 검증 원칙

2009년 10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의회, 선거조사위원회, 면책특권과 의원규칙(제1 위원회).

내용_

의원법 제44c조에 의하면 검증 원칙은 제17차 회기(2009년 이후) 의원들에게 양도된다.

- 제1위원회는 의원 검증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44c조에 의거하여 3분의2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진다.
- 문서 열람은 위원회 소속 위원과 조사대상이 되는 해당 의원들에게만 허용된다.
- 연방의회 의장은 연방특임관에게 자료 및 문서열람으로 밝혀낸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한다.
- 연방의회 구성원에 대한 제1위원회의 확인 사항은 근본적인 이유가 제시된 경우에 한해 연방의회 발행물로 공개된다. 요청이 있으면 관련 구성원의 해명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도 있다.

출처_ 연방의회(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01/stasi_richtlinien.pdf, 2011.07.03 기준).

문서 번호 94

연방의회 의원의 동독 슈타지 관련성 검증을 위한 실행 협약

2009년 12월 3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의회, 선거조사위원회, 면책특권과 의원규칙.

내용_

연방의회 위원회는 상기 협약 내용에 의원법 제44c조에 의거한 동독 슈타지 관련성 검증 절차를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 위원회 소속 위원은 누구나 연방의회 의원에 대한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거론된 혐의 기준이 있는지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개별 케이스 조사는 모든 원내교섭단체가 대표를 파견하는 보고서 작성회에 의해 행해진다.
- 해당 의원은 보고서 작성회의 심문을 받고, 위원회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문서상으로 본인의 입장 표명을 제출할 수 있다.
- 조사는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출처_ 연방의회(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01/absprache.pdf, 2011.07.03 기준).

문서 번호 95

구 동독 정치박해 피해자의 재활권 관련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4번째 법안(제4차 사회통일민주당-UnBerG)

2010년 10월 6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의회 법위원회.

내용_

법위원회의 이 같은 법적 권고는 과거 소련점령지역(SBZ)/구 동독 피해자에 대한 월 보상금 산출 근거, 소득조사 및 지불절차를 밝히는 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의 수용이 고려될 수 있고, 반면 죄가 무거운 형사사범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담당 의원의 상술 보고서).

이런 의미에서 형법상 재활법(StrRehaG), 행정법상 재활법(VwRehaG), 직업적 재활법(Ber-RehaG) 및 연방중앙등록법(BZRG)이 개정될 것이다.

형법상 재활법, 행정법상 재활법, 직업적 재활법의 경우 재활 관련 제안서 제출기한이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연방중앙등록법의 경우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구 동독 형사법적 문서보존 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출처_ 독일연방의회, 문서 및 정보시스템(http://dipbt.bundestag.de/dip21/btd/17/032/1703233.pdf, 2011.07.27 기준).

문서 번호 96

동독 슈타지 문서를 위한 연방특임관의 10번째 활동 보고서(발췌본)

2011년 3월 1일

담당자 / 기관_ 마리안네 비르틀러, 구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BStU).

내용_

- 과거 구 동독 시스템을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했다. 그들은 연방독일 정치계 또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경력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적지 않은 구 동독 슈타지 협력자들이 과거 자신들의 활동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독일 국민들의 구 동독 관련 지식 부족과 구 동독 경시현상 및 구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결핍이 유감스럽다.
- 브란덴부르크주 의회가 설치한 앙케이트 위원회와 함께 과거청산이 시작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에야 비로소 브란덴부르크의 수많은 지역사회에서 과거 동독 슈타지 활동을 했던 협력자들이 적발되었다. 이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초기 청산작업이 다른 주들의 작업에 미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 질의와 토론을 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희생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심리적인 망각 대신 과거를 기억하기, 변명 대신 해명, 침묵 대신 대화). 1990년대 앙케이트 위원회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 독재 청산시 발견된 잘못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170만 명 이상이 문서열람을 신청했다.
- 문서열람을 위한 새로운 신청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서관리국의 협력자수는 감소했다. 매 재정년도 당 문서관리국에 지급되는 세금지출은 약 1억 유로에 이른다. 그 중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부분은 인건비이다.
- 독일에서 사회통일민주당을 금지한다고 언급된 적은 없다. 통일협약에는 동독 슈타지 문서 공개나 공공서비스 부문의 철저한 혁신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다. 단지 동독 슈타지 협력자에 대해서만 특별고용 해지권이 있었다. 규모가 작은 블록 정당들은 부분적으로 통합되었다.
- 동독 슈타지 전산 데이터들은 폐기되었다. 이는 모든 데이터가 지면 형태로만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과오를 범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파기된 전자 문서를 재복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수동으로 약 1백만 건의 공보가 재생되었다. 아날로그 오디오 정보들은 웨이브랩(WaveLab) 형태로 디지털화되었다.
- 문서관리국은 동독 슈타지에 관한 안내서를 펴냈다. 지금까지 계획된 28권 가운데 24권이 만들어졌다. 문서관리국은 동독 슈타지 사전도 제작했다.
- 문서관리국은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도 몇몇 참관단이 다녀간 바 있다.

출처_ http://www.bstu.bund.de/DE/Wissen/Publikationen/Publikationen/t%C3%A4tigkeitsbericht_zehnter.pdf

문서 번호 97

동독 슈타지 문서법(StUG) 개정을 위한 8번째 법안 초안

2011년 5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기민당/기사당 및 자민당 원내교섭단체.

내용_

기민당/기사당 및 자민당 정부원내교섭단체의 법 초안에 의하면 문서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 검증 대상 인물의 범위를 확대(예를 들어 공공서비스 분야 지도부)
- 가능한 검증 기간을 2019년 12월 21일까지 연장
- 동독 슈타지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 확대(예를 들어 친인척 범위까지)
- 요금규정의 특화

이 같은 개정 신청은 지속적으로 문서 열람을 위한 신청 건수가 많아지고 있고(2009년-1,020,658건), 특히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의원 및 공직자들의 동독 슈타지 연루 사실이 적발된 것에 근거한다.

검증이 가능한 인물들에 대한 범위 확대는 "실용적인 필요성"이 제기될 때 이루어져야 하며, 과거 구 동독 슈타지 협력 여부에 대한 검증은 임의적인 것이 아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

출처_ 연방의회, 발행물 17/5894(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22/oeffentliche_Sitzungen/40_sitzung/index.html 2011.07.08).

문서 번호 98

동독 슈타지 문서법(StUG) 개정을 위한 8번째 법안 초안을 놓고 연방의회 심의

2011년 5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111회 회의.

내용_

베아트릭스 필립(기민당/기사당)은 문서법 개정에 대한 근거로 2009년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선출된 주의회 의원 88명 중 7명(전원 좌파 소속)에게서 동독 슈타지 과거를 확인한 일명 '슈타지 논란'을 예로 들었다. 브란데부르크 법무분야 13명의 판사와 152명의 관계자 및 경찰 쪽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이너 도이치만(자민당)은 활동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공식 동독 슈타지 협력자의 수가 3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코 반더비츠(기민당/기사당)는 2011년 5월 13일, 여성단체 호네에크(기존의 여성 교도소) 설립 20주년 기념 축하행사에서 "범죄자들이 우리들 중에 있기" 때문에 동독 슈타지의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밝혀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볼프강 티어제(사민당)는 기본적으로 문서법의 개정은 지지하지만, 이유 없는 검증 범위의 확대(예를 들어 독일철도 관계자들에 대한 검증)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 평화적인 의미에서 20년 이상이 지났으면 이제 집행유예와 시효소멸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루크레치아 요킴센(좌파)은 동독 슈타지 협력 여부를 판단할 때, 비차별화와 전횡이 난무한다고 항의했다. 그녀는 2006년 이후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법안의 개정을 반대한다.

볼프강 비란트(녹색연합)는 검증 기한의 연장은 환영하지만, 이유 없는 심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_ 연방의회(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22/oeffentliche_Sitzungen/40_sitzung/index.html).

문서 번호 99

동독 슈타지 문서법(StUG) 개정을 위한 8번째 법안 초안
사민당과 녹색연합의 개정 제안

2011년 6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사민당과 녹색연합의 원내교섭단체.

내용_

사민당과 녹색연합은 문서법 개정을 위해 기민당/기사당 및 자민당의 법안초안 수정을 촉구한다. 동독 슈타지 협력에 대한 조사는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독일의 사회적 평화는 곧 위협받게 될 것이다.

출처_ 연방의회, 위원회 발행물 17(22)59(신판)(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22/oeffentliche_Sitzungen/40_sitzung/index.html (2011.07.08)).

문서 번호 100

동독 슈타지 문서법에 대한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내무부의 입장

2011년 6월 22일

담당자 / 기관_ 토마스 렌츠,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주내무부 차관.

내용_

기민당/기사당 및 자민당은 연방의회에 동독 슈타지 문서법 개정을 위한 8번째 초안을 제출했다(연방의회 발행물 17/5894). 이에 대해 주차관은 연방의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 법안 초안에 제안된 개정은 필요하다. 사회통일민주당의 위법행위를 청산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문서 열람은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문서열람 신청 건수는 변함없이 많은 편이다. 이와 관련된 기한은 연장되어야 한다.
- 문서보관서는 구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만큼 조사할 능력이 없다.
- 명예시장일지라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호봉 A13 및 E13 이상의 공직자들만이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슈타지, 구 동독 또는 소련 점령지역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조사대상이 된다. 아직도 동독 슈타지 피해자들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그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 동독 슈타지 문서법에는 법조인이나 경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다. 이 두 가지 직업군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보편적인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평등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 청소년 피해자 규정 재도입은 옳다. 동독 슈타지 협력자가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18세 이전의 활동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없다.

출처_ 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22/oeffentliche_Sitzungen/40_sitzung/Stellungnahmen/Lenz.pdf

문서 번호 101

동독 슈타지 문서법에 대한 리하르트 슈뢰더 박사의 입장

2011년 6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리하르트 슈뢰더 박사, 구 동독 슈타지 문서 관리 특임관, 자문위원회장.

내용_

기민당/기사당 및 자민당 원내교섭단체는 연방의회에 동독 슈타지 문서법 개정을 위한 8번째 법안 초안을 제출했다(연방의회 발행물 17/5894). 이에 대해 리하르트 슈뢰더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자문위원회는 제안된 검증 가능성의 확대와 개인, 연구 미디어의 접근 가능성 개선 계획을 환영한다.
- 법무영역 및 경찰영역에 있어 호봉 A13/E13 이상 협력자뿐만 아니라 A9/E9 이상의 협력자들도 검증을 받을 수 있다.
- 검증 기한은 8년 연장되어야 한다.
- "적법한 특별사유"가 있는 가까운 친척의 문서접근권(법 15조) 확대 및 침묵할 의무(39조 4항)는 보다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출처_ 연방의회, 문화 및 미디어 위원회(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22/oeffentliche_Sitzungen/40_sitzung/Stellungnahmen/Beirat_BstU.pdf)

문서 번호 102

동독 슈타지 문서법에 대한 한스위르겐 가르트스카 박사의 입장

2011년 6월 24일

담당자 / 기관_ 한스위르겐 가르트스카 박사, 베를린주 전임 정보보호 특임관(1989-2005).

내용_

기민당/기사당 및 자민당 원내교섭단체는 연방의회에 동독 슈타지 문서법 개정을 위한 8번째 법안 초안을 제출했다(연방의회 발행물 17/5894). 이에 대해 한스위르겐 가르트스카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청산 작업은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동요는 감지되지 않는다. 현재 동독 슈타지 문서법은 충분하고 적절하다. 단순한 소속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결코 이 법안의 목표는 아니다.
- 검증 기간의 연장이 과연 일정 기간 내에 인간의 과오 교화라는 법치국가적 사명과 일치하는 일인가? 살인이나 국가적 범죄를 제외하고 보통 공소시효의 최대 기간은 20년이다. 조금이라도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추적 받아서는 안 된다. 속죄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법치국가는 상처에 대한 보상을 종용한다. 단순한 망각이나 용서가 아닌 "과오를 진정으로 성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난 과오에 매달리는 것이 법치국가원칙보다 우선이란 말인가?
- 그렇지만 검증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 여군을 포함한 호봉 A13/E13 이상의 공직자 검증은 법적으로 명확하다. 그러나 호봉 A13/E13 이하인 직원들에게도 막대한 책임이 있다. 여군들에게 이같은 검증은 중요하지 않다.
- 공공기업 피고용인들에 대한 검증은 2006년 개정에서 제외되었다. 재도입은 부정적이며 법치국가적 관점에서도 다분히 회의적이다.
- "법조인"이라는 직업분류에 법안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복합적이다. 이 분류는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 사법 관리인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 "실질적인 근거"(형사소송법 152조 Ⅱ에 의하면 "충분한 실질적 근거") 제시는 국가적 차원의 수사 진행에 있어 법치국가적 전제요건이다. 근거는 미디어 보고서 또는 개별 인물의 진술 등이 될 수 있다.

출처_ 연방의회, 문화 및 미디어 위원회, 위원회 발행물 17(22) 59i, 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22/oeffentliche_Sitzungen/40_sitzung/Stellungnahmen/Garstka.pdf

문서 번호 103

동독 슈타지 문서법에 대한 연방고등관청 특임관협회(VBOB)의 입장

2011년 6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고등관청 특임관협회(VBOB).

내용_

기민당/기사당 및 자민당 원내교섭단체는 연방의회에 동독 슈타지 문서법 개정을 위한 8번째 법안의 초안을 제출했다(연방의회 발행물 17/5894). 이에 대해 연방고등관청 특임관협회(VBOB)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구 동독이 사라진 후 20년 이상 동독 슈타지 문서법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독일의 재통합에 기여했다. 지난 20년간 국민 의식은 성숙해졌고, 독일 전역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는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초기의 법률 또한 이에 합당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 본 초안을 근거로 검증 가능성(기간 및 대상인물 범위)은 확대된다고 한다. 연방고등관청 특임관협회(VBOB)는 이 같은 사실의 적합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다.
- 이전에는 15년이 지난 과오에 대해 더 이상 탓하지 않는다는 재사회화 개념이 있었다. 시행일은 2006년 12월 29일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 상기 초안으로 "동독 슈타지 희생자"라는 새로운 희생자 카테고리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법안 카테고리에는 관련인, 우대인, 슈타지 협력자 및 제3자만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보보호 실무에서 동독 슈타지 희생자는 관련인의 일부였다. 이제 새 카테고리가 도입되면, 신청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관해서도 언급되어야 한다.
- 초안에 따르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호봉이 A13/EG13 이상인 공직자는 검증 대상이 된다. 유효법에 의하면 1990년 2월 슈타지가 소멸될 당시 이미 18세 이상이었던 협력자들만이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 대상인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경찰 및 법무 분야에 있어서는 호봉이 낮은 인물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 튜링겐과 작센, 작센 안할트주는 공공분야를 포괄적으로 검증했다. 하지만 브란덴부르크주의 검증 과정은 훨씬 더 허술했다. 가장 허술했던 주는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이다. 베를린주는 중간 수준이었다. 어떤 관청들은 꼼꼼한 검증을 받았지만, 다른 특정 관청들은 제한적인 검증을 받았다. 직원들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 검증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평가 활동의 범위를 동독 슈타지 문제로만 제한하게 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사회통일민주당의 역할 또한 반드시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 상기 초안에 얼마나 더 많은 인력과 자금이 필요한지 정확히 전망하지는 못했다.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 신청인들의 대기시간도 더 길어질 것이다.
- 실종자 가족 혹은 사망자 가족의 경우 더 이상 문서 열람을 위해 자신이 가족으로서 정당한 열람 권리가 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출처_ 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22/oeffentliche_Sitzungen/40_sitzung/Stellungnahmen/VBOB.pdf

문서 번호 104

동독 슈타지 문서법에 대한 작센 추모지 재단의 입장

2011년 6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지그프리드 라이프리히, 작센 추모지 재단 대표.

내용_

기민당/기사당 및 자민당 원내교섭단체는 연방의회에 동독 슈타지 문서법 개정을 위한 8번째 법안의 초안을 제출했다(연방의회 발행물 17/5894). 이에 대해 작센 추모지 재단대표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기본적으로 상기 초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검증 연장(2011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에 대해서는 찬성하며, 이는 옳은 조치이다. 일차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보다 나은 대우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 많은 사람들이 문서열람 신청건수를 늘리는 일을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이를 마무리 지으려 했다. 그러나 혐의가 없는 새로운 세대가 구 세대에게 어두운 유산에 대해 토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어떤 기준에 따라 수량화를 진행해야 하는가? 희생자 수, 박해기간 또는 박해의 악랄함 정도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 추모지들도 자체 역사를 연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직접적이고 투명하게 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호봉 E13/A13 이상인 검증 대상 공직자 범위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 슈타지 심문인은 원칙적으로 법학학사 학위 소지자들이며, 이후에 문제없이 변호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 예상되는 초과 비용은 비례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직무행위로 인해 비용이 인상될 때, 당사자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구 동독의 부당함에 대한 허점 많은 청산 작업이 국가사회주의의 부당함에 대한 청산 작업과 유사한 결과를 낳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진실은 아플 때도 있지만 자유를 얻게 해준다.
- 약혼자에게도 사망자 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사망자 문서 보호기간 단축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청소년 속죄 규정의 부활은 합리적이다
- 미디어 신청시 관련인은 계획된 정보공개에 대한 사실을 전달받아야 한다.

출처_ 연방의회, 문화 및 미디어 위원회, 위원회 간행물 17(22) 59c, 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22/oeffentliche_Sitzungen/40_sitzung/Stellungnahmen/Reiprich.pdf

문서 번호 105

동독 슈타지 문서법에 대한 울리케 포페의 입장

2011년 6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울리케 포페, 공산주의 독재의 결과 청산을 위한 브란덴부르크주 특임관.

내용_

기민당/기사당 및 자민당 원내교섭단체는 연방의회에 동독 슈타지 문서법 개정을 위한 8번째 법안의 초안을 제출했다(연방의회 발행물 17/5894). 이에 대해 울리케 포페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의 동독 슈타지 문서법 규정은 불충분하다. 상기 초안은 근본적으로 구 동독 슈타지 문서에 대해 보다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 문서열람 신청건수가 많다는 사실은 구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의 존속을 정당화한다.
- 법무 및 경찰 분야 종사자들은 호봉 A09/E09 이상이라면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활청, 원호청, 노동청의 고위인력 또는 공무원들과 직업판사와 군인들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추가 비용은 정당하다. 인구통계학상 변화로 인해 검증 가능한 피고용인의 숫자는 점차 감소할 것이다.
- 의혹이 있는 경우에만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면(사민당과 녹색연합의 초안), 해당 감독관청은 결국 언론의 의혹 제기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다. 이는 드물지 않게 정당 정치적인 권력 다툼과 결부될 수밖에 없고, 결국 시민들의 염증을 부추겨 상황 종결을 원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 친인척 또한 신청을 하면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 주특임관이 특권을 부여 받은 연구기관들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출처_ 연방의회, 문화 및 미디어 위원회, 위원회 발행물 17(22) 59j, 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22/oeffentliche_Sitzungen/40_sitzung/Stellungnahmen/Poppe.pdf

문서 번호 106

동독 슈타지 출신 직원 고용관계 소멸의 노동법적 가능성에 관한 의견서

2011년 7월 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문화미디어담당관(BKM)/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BStU), 요하네스 베버링.

내용_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의 문의를 받아 법학교수인 요하네스 베버링이 구 동독 슈타지 출신인 피고용인에 대한 해고 가능성 및 입법적인 차원에서의 기타 선택사항을 평가한다.

그의 결론은 동독 슈타지 출신 직원을 고용인 입장에서 해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슈타지 협력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계속 고용해온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고용을 중단시키기가 더욱 어렵다. 또한 본인의 협력 사실을 숨기는 것도 해고가 아닌 강력한 정직 요청의 근거가 될 뿐이다.

베버링은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이 동독 슈타지 혐의가 있는 직원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계약서에 나와 있는 특별해고 가능성을 제때에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압박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혐의가 있는 직원을 다른 공직분야로 이직시키는 조치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입법적인 차원에서 이에 따른 특별해고규정 공포는 합헌적이지 않다. 반면 혐의 있는 직원의 문서관리국 고용은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동독 슈타지 문서법(StUG)에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_ 문서관리국(BStU) (http://www.bstu.bund.de/DE/BundesbeauftragteUndBehoerde/Aktuelles/gutachten.pdf/, 2011.07.08 기준).

문서 번호 107

국회의원 검증을 위한 튜링겐 법

1998년 6월 26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의회.

내용_

이 법안은 튜링겐주 의회 의원들의 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을 규정한다.
예전 검증과는 별도로 의원들은 자발적인 동의 없이 검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주의회 대표회에서 위원회가 설치된다.
검증 절차가 기술된다.
검증 결과 주의회 의원의 동독 슈타지 협력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의원의 의석은 박탈된다고 주의회에서 의결한다.

출처_ 튜링겐주 법안 및 규정 공보 GVBI 1998, 205 페이지.

문서 번호 108

작센 안할트 의원법 개정을 위한 제11차 법안 초안

2007년 3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안할트주 의회 기민당, 사민당, 자민당 원내교섭단체.

내용_

- 작센 안할트주 의회 기민당, 사민당, 자민당 원내교섭단체들은 작센 안할트 의원법 개정을 위한 제11차 법안 초안을 제출했다. 자문위원회는 주의회에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다(투표결과 9:3:0).
- 의결될 법안에 따르면 자체 신청 또는 구체적인 혐의 증거에 따라 과거 동독 슈타지 활동 여부와 관련해서 주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검증 절차 개시가 가능하다. 위원회 설치도 예상된다.

출처_ 작센 안할트주 의회, 제5차 회기, 발행물 5/594, http://www.landtag.sachsen-anhalt.de/intra/landtag3/ltpapier/drs/5/d0594vbe_5.pdf.

문서 번호 109

바트 벨찌히시(市) 시의회 의원 및 시장에 대한 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의 결의

2011년 4월 4일

담당자 / 기관_ 벨찌히시.

내용_

바트 벨찌히시 시의회 총회는 의결안 291-27/11에서 시의회 소속 모든 의원과 시장에 대해 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을 진행할 것을 의결한다.

해당 시의원이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 검증이 진행된다. 보고 및 평가를 위해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시의회 총회는 의결을 통해 결과 및 해당 결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출처_ 벨찌히시(http://www.stadt-belzig.de/instanz_2/belege/20_bk_2011_000008.pdf, 2011.06.20 기준).

문서 번호 110

구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BstU)의 문서처리 자문위원회에 대한 의사규칙

2010년 9월 6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스위스 지역구, 구 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BStU).

내용_

의사규칙에 따라 본 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의해 선출되며, 명예직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존속된다. 본 조직의 목표는 동독 슈타지 협력 관련 지방의회의 검증 및 평가시 지역구 행정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담당 과업은 다음과 같다.

- 비르틀러 관청의 문서관리국 문서 요청, 정리 및 심사.
- 지방의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
- 지방의회에 제출할 의결권고서 작성.

다음에는 자문위원회의 작업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출처_ 작센 스위스-오스트에르츠게비르게 지역구(발행) 2010, URL - http://www.land-ratsamt-pirna.de/download/kreistag/ausfertigung_GO_BSTU-Beirat_06-09-2010.pdf(2011.07.12).

문서 번호 111

브란덴부르크시/지방연합-지방대표단체 구성원에 대한 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의 통지

2009년 3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시/지방연합.

내용_

지방대표단체 구성원에 대한 동독 슈타지 검증과 관련하여 브란덴부르크시/지방연합은 해당 절차 원칙을 통지한다.

동독 슈타지 문서법 제7차 개정법안(2006년 12월 29일 자)에 따르면, 고위직 인사에 대한 검증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지방대표단체 구성원의 경우 검증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해당 지자체 정책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 이때 지방자치제도의 보편적인 요구 및 다수결 원칙이 유효하다.

두 가지 형태의 검증 방식이 존재한다.

한 가지는 모든 구성원에 대한 의무적인 검증(본인 동의 없음)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선택적인(자발적인) 검증이다.

회의 기록은 문서관리국에 전달되고, 문서관리국은 이에 대한 심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통보한다.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 가능한 정치적 결론을 사전에 확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개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한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시/지방연합(http://www.stgb-brandenburg.de/stasi_unterlagen_gesetz.html, 2011.07.07 기준).

문서 번호 112

구 동독 범죄와 관련된 서독 문서보관소의 문서, 동 베를린 정치 선전원들에 의해 요구

1989년 12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잘츠기터 주법무행정부 중앙조사처(ZESt), 한스 위르겐 그라제만.

내용_

동독 민권운동가들은 1961년부터 중앙조사처에 수집된 구 동독의 부조리에 관한 문서를 보존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 문서들이 구 동독의 과거 극복에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구 동독 측에서는 상기 조사처를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사민당이 집권한 주들은 재정지원을 중단했고, 기민당이 이끄는 주들은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지금은 기민당도 이 기관이 필요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
검사 그라제만은 변혁 이후 새로운 정보의 홍수에 대해 보고했다.

출처_ 슈피겔, 51호/1989.

문서 번호 113

연방주 법무행정청의 중앙조사처

2009년 6월 26일

담당자 / 기관_ 고등검사 한스 위르겐 그라제만.

내용_

중앙조사처(ZESt) 전임 부대표인 한스 위르겐 그라제만이 이 기관에 대한 개관을 제시한다.
중앙조사처는 1961년 11월 15일 빌리 브란트가 창안하여 법무장관회의를 거쳐 설치되었다.
이 기관은 조직적으로는 브라운슈바이크 검찰청 소속이었으나, 전략상으로는 연방법원 산하에 있었다.
중앙조사처가 맡은 임무는 예를 들어 국경 살인, 정치적으로 부당한 판결, 형집행 파행과 같은 구 동독 측의 부당한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지키는 일이었다.
주 정보원은 3만 4천 명에 달하는 보석석방자들이었다. 중앙조사처는 4만 건 가량의 자료를 수집했다.
중앙조사처는 구 동독 정부에 의해 주권 개입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폐지 요구가 잇따랐다.
1988/1989년 사민당이 집권한 연방주에서는 중앙조사처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했다.

출처_ "독일 내 자유와 민주주의의 지역"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발행), 베른하르트 포겔, 멜라니 피펜슈나이더, 클라우스 요헨 아르놀트, 장크트 아우구스틴, 2009년 6월 29일.

문서 번호 114

“구 동독 비법치정권의 범죄에 대한 학술적 고찰” 니더작센주 주의회의 결의

2008년 5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니더작센주 주의회.

내용_

니더작센주 주의회는 구 동독 독재 관련 문서들을 학술적, 역사적으로 고찰할 것을 결의한다. 왜냐하면 과거 동독 슈타지 협력자와 “좌파” 정당의 지도부 정치인들이 여전히 관련 문건들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잘츠기터주 법행정부 중앙 증거 및 문서관리국(과거 중앙조사처, ZESt)”은 구 동독의 부조리를 밝히는 데 본질적으로 기여했다. 관련 문서들은 검찰청으로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학술적인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의회는 주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 연방차원에서 중앙조사처 문건의 광범위한 고찰 작업을 착수할 것.
- 구 동독 역사를 특히 학교수업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
- 학생들에게 구 동독의 부조리가 행해진 역사적인 장소를 안내할 것.

주정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 중앙조사처 문서는 코블렌츠에 소재한 연방문서보관서로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학술적 고찰 작업이 이루어질 것임.
- 법무장관회의에서 고찰 결정을 다룰 예정.
- 학술적 고찰이라는 주제는 문화장관회의에서 다룰 예정.

출처_ 니더작센주 주의회 발행물 (www.landtag-niedersachsen.de, 2011.08.13 기준).

문서 번호 115

"중앙 증거 및 문서관리국의 과업 완수"

2008년

담당자 / 기관_ 니더작센 검찰.

내용_

니더작센주 검찰은 중앙 증거 및 문서관리국(과거 중앙조사처)이 2008년 업무를 종결했다고 공지했다.

1990년 10월 통일 후, 관련 문서들은 형사소추와 판사의 판결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형사법적 고찰이 종결된 후, 4만 2천여 건의 문서가 코블렌츠에 소재한 연방문서보관소로 옮겨졌다.

출처_ 니더작센 검찰(www.staatsanwaltschaften.niedersachsen.de, 2011.08.11 기준).

문서
번호 116

사통당-독재청산 현황

2013년 1월 16일

출처_ 연방의회, 인쇄물 17/12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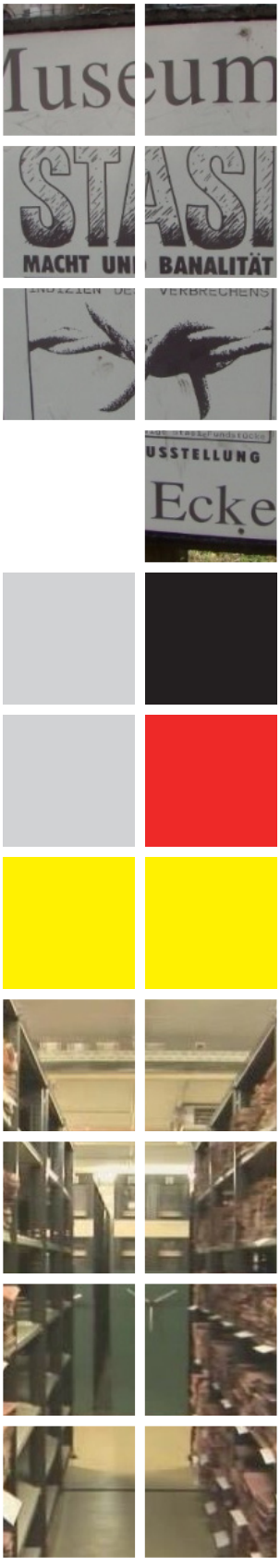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250000-000108-01

통일부